

항공교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2018. 12



•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범위	3
1. 시간적 범위	3
2. 공간적 범위	3
3. 내용적 범위	3
제3절 연구 추진체계	4
1. 연구방법론	4
2. 연구추진체계	5
3. 기대효과	5
제2장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실태	9
제1절 항공교통에서의 공공성과 이동권	9
1. 항공교통의 특성 및 공공성	9
2. 이동권 보장의 의미	11
3. 도서지역 항공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	13
제2절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관련 실태조사	14
1. 국적항공사 교통약자 서비스 제공 현황 조사	14
2. 외국적항공사 교통약자 서비스 제공 현황	31
3. 우리나라 공항의 교통약자 서비스 제공 현황	96
제3절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문제점 분석	102
1. 기존 법률의 검토를 통한 시사점	102
2.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 서비스의 문제점 분석	103
제4절 울릉, 흑산 등 주요 도서 지역의 항공교통 서비스 여건 조사	109
1. 울릉도 교통 서비스 현황	109
2. 흑산도 교통 서비스 현황	113
제3장 해외 교통약자 서비스 기준 및 사례 분석	119
제1절 해외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기준	119
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119
2.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121

3. 미국	122
4. EU	128
제2절 도서 및 오지 지역 항공 교통 서비스 사례	132
1. 유럽	132
2. 남미(에콰도르)	137
3. 일본	139



● 표목차

<표 2-1> 대한항공의 장애 승객 유형에 따른 좌석 배정 원칙	18
<표 2-2> 국적 항공사의 서비스 현황 조사표	30
<표 2-3>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별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 및 운영시간	98
<표 2-4>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별 안내데스크 위치·운영시간 및 안내직원 규모	98
<표 2-5> 한국공항공사 운영 전국 공항의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 현황 1	100
<표 2-6> 한국공항공사 운영 전국 공항의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 현황 2	101
<표 2-7> 한국공항공사 운영 전국 공항의 안내데스크 운영 인력 현황	101
<표 2-8> 울릉도 해운 교통 현황	111
<표 2-9> 울릉 항로 수송 인원(2017년)	112
<표 2-10> 흑산도와 홍도 해운 교통 현황	115
<표 2-11> 목포-홍도(가거도) 항로 운송객 변화	115
<표 3-1> EU 체약국 내 공항운영자가 제공해야 하는 교통약자 지원 업무	130
<표 3-2> EU 공항의 여객당 교통약자 승객 지원 서비스 부과 비용	131
<표 3-3> 유럽 의회 규정 2408/92의 관련 조항	133
<표 3-4> 영국 Loganair의 PSO 운영	136
<표 3-5> 에콰도르의 PSO 서비스	138
<표 3-6> 일본 이도 진흥법 조항	140
<표 3-7> 일본 리시리 섬 교통 체계	142
<표 3-8> 낙도 항공 교통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정책	143

● 그림목차

<그림 1-1>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어려움 사례	2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5
<그림 2-1> 항공기내 복도측 팔걸이 미고정 좌석 예	18
<그림 2-2> 항공기내 벌크 좌석 예	18
<그림 2-3> 인천공항 대기공간 내 교통약자 배려석	97
<그림 2-4>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전 브리핑 카드	108
<그림 2-5> 울릉도와 주요 도시간 거리	110
<그림 2-6> 울릉도 관광객 수 추이	112
<그림 2-7> 흑산도, 홍도 지역 선박 운항 정보	114
<그림 3-1> 유럽 국가별 PSO 노선 수	134



항공교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 추진체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2018년을 기준 국내 항공여객은 1억 1,753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항공 여객수는 매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 일본·동남아·유럽 등 국제선 노선 다변화와 내외국인 여행 수요 등으로 2017년 대비 7.5% 증가를 기록하였음.
- ❖ 특히, 국적 LCC의 여객 운송 분담률은 공급확대와 노선 다변화로 인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 국제선 운항에 있어 국적항공사의 여객 운송 분담률은 2018년 기준 68.5%로 기록 되었으며, 국적 FSC가 39.3%, 국적 LCC가 29.2%를 분담하고 있음.
- ❖ 이처럼 항공운송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항공교통운송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 항공운송분야는 유상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항공운송사업자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항공노선, 공항시설, 공항, 관제서비스 등 공공재를 이용하게 되므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도 볼 수 있음.
- ❖ 현재 국내에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법규는 교통관련 여객 시설의 규격 등 시설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 ICAO는 2013년 장애인 승객의 항공여행을 위한 매뉴얼(Doc 9984)을 제정하여 보급하였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도 장애인 승객의 항공 여행 시 차별 금지 및 지원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에게 따르도록 하고 있음.
- ❖ 국내에서는 단체 장애인 승객의 항공여행 예약거부,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 미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음.



<그림 1-1>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어려움 사례

- ❖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항공운송은 일반인 뿐 아니라 장애인 등을 포함한 이용자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 이는 항공교통의 공공성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의 인정여부와 관련되는 문제이며, 나아가 항공산업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관한 내용으로도 연결되는 문제임.
-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 나은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 도서지역 및 오지 주민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도서지역 항공교통서비스 기준을 제시함.

제2절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헌 및 각종 통계 등 기초 자료는 연구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 수행 기간 내 가능한 최신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음.

2. 공간적 범위

- ❖ 본 연구는 국적항공사 및 외국적 항공사가 제공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 서비스 및 해외 주요 선진국의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기준을 검토하여 국내 항공교통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선정하였음.
- ❖ 해외 오지 및 도서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항공 서비스 및 관련 정책을 조사하여 국내 오지 및 도서 지역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선정하였음.

3. 내용적 범위

-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1)항공교통의 공공성 및 이동권 정의, 2)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현황과 문제점 분석, 3)해외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기준 및 사례 분석, 4)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기준 제시로 나눌 수 있으며 내용별 세부 범위는 다음 <표 1-1>과 같음.

<표 1-1> 연구의 내용적 범위

주요내용	세부내용
· 항공교통의 공공성 및 이동권 정의	· 공항시설 및 항공사 측면에서 공공성 검토 · 기존의 법적 문제점 도출, 보완사항 도출 · 도서 지역에서의 이동 여건 수준 검토
·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현황과 문제점 분석	· 항공사별 서비스 제공 관련 실태조사 · 이용자 관점에서의 문제점 분석 · 울릉, 흑산 등 주요 도서 지역의 항공교통서비스 여건 조사
· 해외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기준 및 사례 분석	· 미국, EU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기준 등 사례분석 · 선진국의 도서 지역 노선 운영과 지원 사례분석
·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기준 제시	·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기준 제시 · 도서지역의 항공교통서비스 기준 제시

제3절 연구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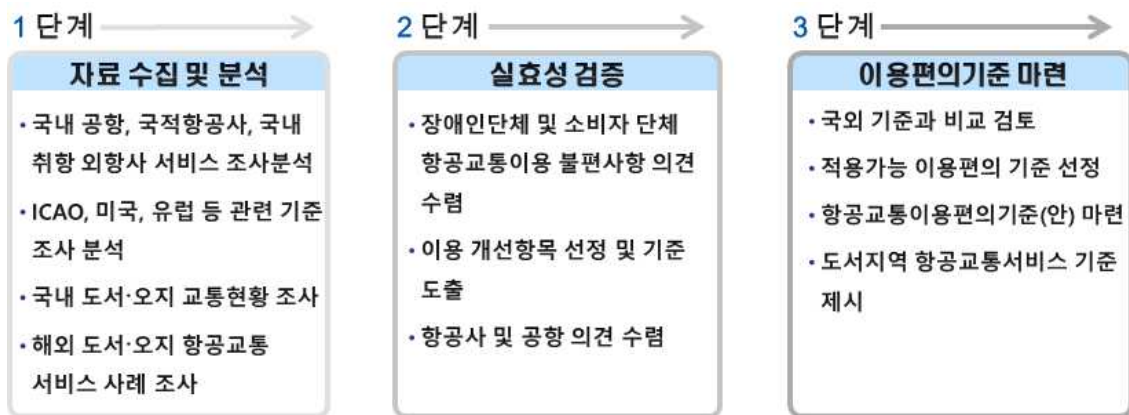
1. 연구방법론

- ❖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관련된 국내 법령 및 ICAO, 해외 선진국의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이용 서비스 제공 기준 검토함.
- ❖ 국적 항공사 및 국내 공항,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적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현황 조사함.
- ❖ 장애인 단체, 소비자 단체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이용자 측면의 항공교통 이용 개선 사항 의견 수렴함.

- ❖ 국적항공사, 외국적 항공사 및 국내 공항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공자 측면의 서비스 제공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함.
- ❖ 울릉도, 흑산도 등 국내 도서 및 오지 지역의 교통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해외 도서 및 오지지역 항공교통서비스 사례를 분석함.
- ❖ 현황 조사 및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항공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함.

2. 연구추진체계

- ❖ 연구의 추진체계는 크게 1)자료 수집 및 분석, 2) 실효성 검증, 3) 이용편의기준 마련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추진 사항은 아래 <그림 1-2>과 같음.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3. 기대효과

- ❖ 항공 산업계의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실태조사와 해외 선진국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준조사를 통해 보다 나은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함.
- ❖ 해외 도서 및 오지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항공 교통 서비스 및 관련 정책을 조사하여 국내 도서 및 오지 지역에 도입 가능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함.



제2장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 서비스 실태 조사

제1절 항공교통에서의 공공성과 이동권

제2절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관련 실태

제3절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문제점 분석

제4절 주요 도서 지역의 항공교통 서비스 여건 조사

제2장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실태

제1절 항공교통에서의 공공성과 이동권

1. 항공교통의 특성 및 공공성

- ❖ 항공교통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육상교통을 비롯한 다른 교통 분야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 ▶ 안전 및 보안의 중시 : 항공교통은 일반 교통 분야와 비교할 때 잠재 위험성이 높으므로(예 : 미국 9/11 사건 당시 항공기가 도심 테러용도로 사용) 항공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각종 절차와 규정이 복잡함.
 - ▶ 높은 정시성 요구 : 항공교통이 다른 교통 분야에 비해 경쟁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한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임에 따라 신속한 운항을 위한 정시성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음.
 - ▶ 쾌적한 환경 추구 : 항공교통은 육상 및 해상 교통과 비교할 때 높은 운임이 지급되므로, 그에 걸맞게 쾌적한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음.
 - ▶ 수요에 따른 탄력적 가격운영 : 항공교통에서는 운송계약 체결시기, 이행시기 등에 따라 동일한 운송구간에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차이가 있음.
 - ▶ 서비스 내용의 차별성 : 과거 대형항공사(Full Service Carrier, FSC)는 획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오늘날 등장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는 이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음.

- ❖ 일반적인 운송인을 지칭하는 Carrier는 Public/Common Carrier로서, 자가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특정 소수에게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Contract/Private Carrier에 대응되는 개념임.¹⁾
- ❖ 즉, 국가 및 기타 공공 단체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받아 일반 대중들에게 개방되어 희망자 누구든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면 공중운송인(Common Carrier)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 공공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정의될 수 있음.
 - ▶ 공식성(official) : 개인이 지배하는 사적 영역이 아닌 공공장소나 공로(公路)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
 - ▶ 공통성(common) : 개인이나 소수 특정인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공개성(open) : 개인이나 소수 특정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
- ❖ 따라서 항공운송은 국가로부터 사업면허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공공의 장소에서, 구성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누구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개방되어 있는 점에서 항공교통의 공공성은 인정됨.
- ❖ 그러나 공공재의 인정요소는 다음과 같기 때문에 항공교통이 공공재(Public Goods)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free-rider)도 소비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함.
 - ▶ 비경쟁적(non-rival) : 제3자의 소비행위 추가참여로 기존 소비자의 편익감소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예 : 등대설치)
- ❖ 특히 공항시설의 경우,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자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타인의 추가 이용으로 기존 이용자의 공항시설이용이 제한받지 않음.

1) https://en.wikipedia.org/wiki/Common_carrier

- ▶ 더욱이 우리나라는 공항공사가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시설은 공공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 그러나 항공운송 분야는 유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한정된 좌석이 모두 판매되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점에서 완벽한 공공재라고 볼 수 없음.
 - ▶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운송 분야는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 항공사가 운영하므로 공공재의 성격을 갖지 아니함.
- ❖ 다만, 항공운송은 다른 산업과 달리 공공재인 항공노선, 운수권, 공항시설, 구역, 관제 등을 이용하게 되므로, 사기업이 운영하지만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²⁾
- ❖ 또한 항공교통의 공공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확인됨.
 - ▶ 항공운송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노동자의 파업권이 제한됨.
 - ▶ 최근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항공사의 공공성 제고 노력을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음.

2. 이동권 보장의 의의

- ❖ 그 동안의 산업화 사회에서 교통서비스는 ‘대중교통’으로 지칭되면서 대규모 수송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최근에는 공공성 강화와 질적 서비스의 향상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
 - ▶ 교통은 단순히 이동수단이라는 개념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배치·개발하고,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임.

2) 후술하는 미국 Air Carrier Access Act (ACAA)의 제정에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v. Paralyzed Veterans of America (PVA)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개인 사기업체인 항공사라 하더라도 국가의 관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항공사는 정부와 같은 공공성을 가지면서 장애인 차별금지를 실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 ▶ 따라서, 기존의 교통시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최근에는 그 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임.
- ❖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말하는 이동권은 현행 헌법에 명시적·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 다만,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제10조), 평등권(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등에서 이동권을 간접적으로 규정한다고 볼 수 있음.
 - ▶ 이러한 헌법규정은 하위 법률에 그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권리를 보장하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로 의의를 가짐.
- ❖ 비록 우리나라 헌법상 명문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³⁾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전제 중의 하나가 바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공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임.
 - ▶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항공교통 분야에서도 보장될 필요가 있음.
- ❖ 교통약자들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제약이 존재함.
 - ▶ 장애인은 독립적인 보행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비롯한 보조도구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음.
 - ▶ 고령자는 보행이 불편하고 지각활동이 느리며 높은 곳을 오르거나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시력이나 청력이 저하되어 공공장소에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음.
- ❖ 따라서 항공교통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비나 기구의 설치, 높은 수준의 관심과 배려 등 지원이 필요함.
- ❖ 근대 사법의 대원칙인 '계약체결 자유의 원칙'에 따른다면, 항공사업자는 이와 같은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교통약자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음.

3) 독일 헌법 제11조는 이동(Movement)에 대한 독립된 조항을 마련하여 이동권을 명시하고 있음.

- ❖ 그러나 항공교통의 공공성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계약자유의 원칙은 수정될 필요 있으며, 그 방법론으로 법률이나 행정명령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행할 필요가 있음.
- ❖ 더욱이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및 국적항공사에 장애인 승객의 항공기 탑승 및 하기에 필요한 승강설비 등 필요한 물적,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였음.⁴⁾
 - ▶ 국토교통부는 항공기에 탑승교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 각 항공사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는지 지도·감독하도록 권고함.
 - ▶ 또한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단서나 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는지 지도·감독하도록 함.
 - ▶ 공항공사와 항공사는 탑승교를 설치할 수 없는 공항에 대체 승강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직원교육과 인적서비스 제공, 편의제공에 대한 사전 요청 시스템 마련 등을 권고하였음.
- ❖ 이러한 배경에서 항공교통의 공공성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범규범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3. 도서지역 항공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

-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항공 이동권과 함께 도서지역 주민들의 항공 이동권도 보장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 도서지역과 육지를 연결하는 이동수단이 선박 여객선 밖에 없을 경우 지역 주민의 이동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됨.
 - ▶ 울릉도의 경우 동해의 특성상 가을부터 겨울까지 파고가 높아 여객선 결항이 연간 100여 일에 달함.
- ❖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긴급구조 소방헬기나 해양경찰 헬기경비정

4) 국가인권위원회,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2016.10.06.)

을 이용하여 긴급히 인근의 육지로 이송해 치료를 해야 하나, 야간에는 헬기 이송이 어려움.

▶ 최근 8년간 울릉도의 응급환자 이송 현황을 보면 1,376건, 1,793명에 달하며 연간 224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선박을 이용하여 인근 육지로 이동 후 다른 지역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소요가 불가피함.

▶ 울릉도나 흑산도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7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임.

❖ 따라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교통 도입이 필요하며, 도서지역의 공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50인승 규모의 소형 항공기로 운항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2절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관련 실태조사

1. 국적항공사 교통약자 서비스 제공 현황 조사

❖ 본 조사에서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운송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총 9개의 국적항공사 중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총 8개의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서울)의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해 조사함.

❖ 조사 방법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정보와, 장애인 단체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적으로 제공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별 항공사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2018.11 기준)를 수행하였고, 회신을 준 6개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 대해서만 정리하였음.

가. 대한항공

- ❖ 대한항공은 홈페이지에서 교통약자 승객을 여행에 어려움이 있는 승객,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Unaccompanied Minor, UM), 시각/청각 장애인 및 몸이 불편한 승객, 임산부, 유아동반 승객 등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대한항공 홈페이지는 2015.7.1.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⁵⁾을 획득 하였으나 조사 시점(2018년 11월)에 유효한 웹접근성 품질 인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되었으며, 모바일앱의 경우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지 않음.
- ❖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번호나 전용 상담 문자는 운영하지 않음.

1) 여행에 어려움이 있는 승객

- ❖ 혼자 여행하는 만 70세 이상 승객, 만 7세 미만의 유/소아 2명 이상을 동반한 1인 승객, 타 항공사 연결편 승객 중 언어 소통 문제가 있는 승객(한국 출발에 한함)을 대상으로 함.
- ❖ 서비스 이용 요금은 무료이며 항공사 서비스센터, 발권지점, 여행사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 도착지 체류 주소 및 마중가족의 이름 및 연락처, 도움이 필요한 장소와 신청 사유를 제시해야 함.
- ❖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출국장에서 항공기 탑승까지, 목적지 공항에서는 도착 대합실 또는 마중객의 대기장소까지, 연결편 이용시 해당 항공사의 탑승수속 카운터 또는 탑승구 까지 안내 서비스 제공함.

2)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Unaccompanied Minor, UM)

5)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접근성 표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8년 2월 21일 법개정에 따라 오는 2019년 2월 22일부터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인증이 추가되었음. 웹접근성품질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년임.

- ❖ 만 5세 이상부터 국제선은 만 11세 이하, 국내선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출국에서 기내, 도착지 공항까지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출발 24시간 전까지 서비스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 승객의 배웅/마중객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제공해야 함.
- ❖ 서비스 이용 요금은 국내선의 경우 성인 정상 운임을 적용하며, 국제선의 경우 항공사에서 정한 성인운임에 구간당 추가요금을 더해 부과함.

3) 시각/청각 장애인 및 몸이 불편한 승객

- ❖ 의료용 침대(Stretcher)이용 승객, 정신장애로 승무원의 안전지시를 이해하거나 응답할 수 없는 승객, 심각한 이동장애로 비상 탈출이 불가능한 승객, 심각한 시청각 동시장애로 승무원의 안전브리핑 전달이 불가하며 비상 탈출이 불가능한 승객은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함.
- ❖ 시각/청각 장애인은 전담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요금 없이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탑승할 수 있음.
- ❖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의 경우 휠체어를 제공하고 탑승 수속부터 탑승, 도착 후 터미널 내 입국장까지 직원이 이동에 도움을 제공하며 사전 신청 또는 당일 공항에서 신청이 가능함.
- ❖ 항공기내에는 기내용 휠체어가 탑재되어 있으며 서비스센터 또는 여행사를 통해 기내휠체어 사용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음.
- ❖ 본인 소유의 휠체어 또는 보행 보조기구는 무료운송을 제공하고 있으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승객은 출발지 탑승구까지 휠체어를 사용하고 도착지 탑승구부터 본인의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음.
- ❖ 운송이 가능한 이동보조장비의 크기와 배터리 형태(습식, 건식, 리튬 등) 등에 따른 제한사항이 안내되어 있음.
 - ▶ 배터리 분리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전동휠체어의 경우 예약 시 전동휠체어의 사이즈, 배터리 종류 및 용량에 대해 사전에 통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승객

또는 동반인이 직접 배터리를 탈/부착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탈/부착 방식에 대해 설명이 가능해야 함.

- ▶ 교통약자의 이동보조장비에 대한 운송 지연/분실/파손에 대해서는 일반 수하물과 동일 규정을 적용함.
- ❖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위해서는 의료용침대(Stretcher)와 의료용 산소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내에서 승객 소유의 보조호흡장비 사용이 가능함.
- ❖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승객, 정상좌석을 사용할 수 없거나 항공사에서 제시한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한 질병 또는 질환이 있는 승객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항공운송을 위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 ❖ 의료용침대 이용은 국제선은 출발 72시간(타항공사 연결편이 포함된 경우 출발 7일 전), 국내선은 출발 48시간 전에 사전예약 필요함.
- ❖ 장애승객의 보조동물의 경우 별도의 운송용기 보관이 필요 없으며 기내 동반이 가능하지만 추가 좌석을 점유할 수 없으며 운송 서약서 작성은 필요 없으나 국가별로 검역 증명서 등의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 감성, 정서적 보조 동물(Emotional Support Animal)은 미국 출/도착편의 경우에만 기내 반입이 허용되며 출발 예정일 1년 이내에 발급된 전문의 소견서 지참 필요함.
- ❖ 장애인승객의 경우 예약시 사전 좌석 배정을 요청하는 경우 미국 CFR 기준을 적용하여,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좌석을 배정하고 있음.
 - ① 화장실 위치 기준으로 전방 또는 후방으로부터 2~4열에 배치
 - ② 화장실 인근으로 배정하되 화장실 DOOR 바로 옆은 지양
 - ③ 비상 탈출구 인근 배치를 지양하되 탑승 후 멀리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정
 - ④ 화장실 인접한 복도 좌석

<표 2-1> 대한항공의 장애 승객 유형에 따른 좌석 배정 원칙

장애 승객 유형	좌석
휠체어 이용 승객	복도측 팔걸이 미 고정 좌석
다리 장애, 보조동물 동반 승객	복도측 벌크(Bulkhead) 좌석 또는 Legroom 좌석
장애 승객 동반자	장애 승객 인접 좌석

자료: 대한항공 제공



<그림 2-1> 항공기내 복도측 팔걸이 미고정 좌석 예

자료: <https://www.jal.co.jp/en/jalpri/equipment/plane.html>



<그림 2-2> 항공기내 벌크 좌석 예

자료: <https://thepointsguy.com/2017/07/where-to-sit-norwegian-737-max-8/>

4) 임산부 승객

- ❖ 32주~36주 이상 임신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건강상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37주 이상(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의 임신부는 탑승 불가능함.
- ❖ 국내 공항에서 도움이 필요한 승객 카운터를 이용하여 우선 탑승 가능함.

5) 유아동반 승객

- ❖ 생후 7일 이상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국내선은 무료이며, 국제선은 성인 정상운임의 10% 이고 보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 가능함.
- ❖ 유아의 허용 수하물은 항공사에서 제시한 규격 이내의 접이식 유모차와 카시트 (또는 요람) 각 1개와 국제선의 경우 10kg 미만 수하물 1개 허용함.
- ❖ 국제선에 한해 기내에서 유아용 요람과 유아용 시트, 유/소아용 벨트, 유아용 기내식을 사전 신청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센터 또는 항공권 예약처를 통해 신청 가능함.

나. 아시아나항공

- ❖ 아시아나항공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노약자 및 유소아 2인 이상 동반 승객,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장애인, 의료도움이 필요한 승객, 임산부, 유아동반 승객 등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는 조사 시점(2018년 11월)에 유효한 웹접근성 품질 인증 및 모바일앱 접근성 품질 인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되었음.
- ❖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번호나 전용 상담 문자는 운영하지 않음.

1) 노약자 및 유소아 2인 이상 동반 승객

- ❖ 혼자 여행하는 만 70세 이상 승객, 만 7세 미만의 유소아 2명 이상을 동반한 1

인 승객을 대상으로 함.

- ❖ 여행 출발 7일 전 까지 예약센터를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 공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비스 장소와 신청 사유를 제공해야 함.
- ❖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출국장에서 항공기 탑승까지, 목적지 공항에서는 도착 대합실 또는 마중객의 대기장소까지, 연결편 이용시 해당 항공사의 탑승수속 카운터 또는 탑승구 까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내에서는 목적지 공항의 입국 서류 작성 보조 서비스 제공함.

2)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Unaccompanied Minor, UM)

- ❖ 만 5세 이상 부터 국제선은 만 12세 미만, 국내선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출국에서 기내, 도착지 공항까지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출발 24시간 전까지 예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 승객의 배웅/마중객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제공해야 함.
- ❖ 서비스 이용 요금은 국내선의 경우 성인 정상 운임을 적용하며, 국제선의 경우 항공사에서 정한 성인운임에 구간당 추가요금을 더해 부과함.

3) 장애인

- ❖ 시청각 장애인은 탑승수속에서 입국수속까지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요금 없이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탑승할 수 있음.
- ❖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 공인된 기관의 인증서를 소지, 목줄을 착용하고, 목적지 또는 경유지 검역절차 기준에 부합하고, 비행중에는 승객의 발 아래 위치해야 함.
- ❖ 비동반 시각장애승객의 경우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고, 제3자의 도움 없이 식사 및 개인 용무가 가능해야 하며 출·도착지 공항에서 승객을 지원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어야 함.
- ❖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의 경우 휠체어를 제공하며 탑승 수속부터

탑승, 도착 후 마중객이 있는 곳 까지 직원이 이동에 도움 제공함.

- ❖ 본인 휠체어를 사용하는 승객은 출발지 탑승구까지 휠체어를 사용하고 도착지 탑승구부터 본인의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내 이동을 위한 기내용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음.
- ❖ 운송이 가능한 이동보조장비의 크기와 배터리 형태 등에 따른 제한사항이 안내되어 있음.
 - ▶ 배터리 분리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전동휠체어의 경우 예약 시 전동휠체어의 사이즈, 배터리 종류, 용량 및 탈착 여부에 대해 사전 통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승객 요청 시 도움 제공함.
 - ▶ 교통약자의 이동보조장비에 대한 운송 지연 시 대여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분실 및 파손에 대해서는 일반 수하물과 동일 규정을 적용함.
- ❖ 장애인승객의 경우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좌석을 배정함.
 - ① 승/하기(Boarding And Deboarding)가 편리한 곳에 배정
 - 휠체어 승객이나 팔걸이를 넘어가기 어려운 승객은 이동식 팔걸이 좌석 배정
 - 다리를 접을 수 없는 승객은 벌크좌석 또는 일반석 보다 간격이 넓은 좌석 배정
 - ② 비상구 열(Emergency Exit Row) 배정 금지
 - ③ 좌석 여유가 많을 경우, 옆자리 블록(Block) 가능
 - ④ 보호자가 있을 경우 예약단계부터 옆자리로 좌석 배정

4) 의료도움이 필요한 승객

- ❖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위해서는 의료용침대(Stretcher)와 의료용 산소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내에서 승객 소유의 휴대용 산소 발생기 및 보조호흡장비 사용이 가능함.
- ❖ 항공사에서 제시한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한 질병 또는 질환이 있는 승객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항공운송을 위한 의사 소견서를 출발 2일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비행 중 산소공급을 요하거나 의료용 침대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1주

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 ❖ 질환을 가진 고령의 승객, 특정 물질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는 승객, 당뇨질환 고객, 체내 의료장비 삽입고객의 경우 비행 전 필요한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함.

5) 임산부 승객

- ❖ 32주~37주의 미만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건강상태 서약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37주 이상(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이 불가함.
- ❖ 혼자 여행하는 임산부 승객에 한해 전 국제선 노선에서 항공기 우선탑승, 도착 지 위탁 수하물 우선 하기 서비스 제공함.

6) 유아동반 승객

- ❖ 생후 7일 이상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국내선은 무료, 국제선은 성인 정상운임의 10% 이고 보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 가능함.
- ❖ 유아의 허용 수하물은 접이식 유모차와 카시트, 운반용 요람 중 1개가 가능하며 국내선 10kg, 미주구간 23kg, 미주 외 구간 10kg의 수하물 기준 적용함.
- ❖ 국제선에 한해 기내에서 유아용 요람과 유아용 시트, 유아용 기내식을 사전 신청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항공사가 제시하는 시점 이전까지 예약센터를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함.

다. 제주항공

- ❖ 제주항공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유아동반 승객,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 임산부 등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제주항공 홈페이지는 조사 시점(2018년 11월)에는 유효한 웹접근성 품질 인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2018.1.3 만료) 모바일앱 접근성 품질 인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되었음.
- ❖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번호나 전용 상담 문자는 운영하지 않음.
- ❖ 국내선 생후 7일 이상, 국제선 생후 14일 이상의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국내선은 무료이며 국제선은 성인 정상운임의 10%를 부과하며 보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 가능함.
 - ▶ 연결된 ABC/DEF 구역당 1명의 유아 승객만 탑승이 가능하며 유아 요람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 ❖ 만 5세 이상 부터 국제선은 만 12세 미만, 국내선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UM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출발 24시간 전까지 예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어린이 승객의 배웅/마중객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제공해야 함.
 - ▶ UM서비스 이용 요금은 국내선의 경우 편도 구간당 25,000KRW(25USD), 국제선의 경우 편도 구간당 100,000KRW(100USD)의 서비스 운임을 추가로 부과함.
- ❖ 보행이 불편한 승객의 공항 출발 및 도착시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예약 시점에 서비스 신청 가능함.
- ❖ 32주~37주의 미만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37주 이상(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함.
- ❖ 운송이 가능한 이동보조장비의 배터리(리튬배터리) 운송 제한사항이 안내되어 있음.
 - ▶ 배터리 분리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전동휠체어의 경우 배터리 형태(건식/습식/개방형/밀폐형/리튬 등), 용량, 분리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분리를 위한 키트를 구비하고 있어 승객 요청 시 탈/부착에 도움 제공함.
 - ▶ 교통약자의 이동보조장비에 대해서는 일반 수하물과 동일 규정을 적용함.

라. 에어부산

- ❖ 에어부산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노약자, 장애인 및 유소아 2인 이상 동반 승객,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임산부 및 유아동반 승객,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승객 등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에어부산 홈페이지는 조사 시점(2018년 11월)에 유효한 웹접근성 품질 인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되었으나(2018.6.27 만료), 모바일웹의 경우 유효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모바일앱에 대해서도 유효한 접근성 품질 인증을 획득함.
- ❖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번호나 전용 상담 문자는 운영하지 않음.
- ❖ 혼자 여행하는 만 70세 이상 노약자, 장애 3등급 이상 장애인, 7세 미만의 유/소아 2명 이상을 동반한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담당 직원이 출국장에서 항공기 탑승까지, 목적지 공항에서는 도착 대합실 또는 마중객의 대기장소까지 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함.
 - ▶ 해당 서비스는 여행 출발 전 예약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가 신청 사유를 제공해야 함.
- ❖ 만 5세 이상 부터 국제선은 만 11세 이하, 국내선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U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당일 공항에서 신청하거나 여행출발 7일전 예약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시 어린이 승객의 배웅/마중객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공해야 함.
 - ▶ 서비스 이용 요금은 국내선의 경우 소아운임을 적용하며 국제선의 경우 성인운임 적용함.
- ❖ 32주~37주의 미만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37주 이상(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능함.

- ❖ 국내선은 생후 7일 이상, 국제선은 생후 14일 이상의 유아만 탑승 가능하며 보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이 가능하고, 국내선 이용 요금은 무료이며, 국제선은 노선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음.
- ❖ 항공사에서 제시한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한 질병 또는 질환이 있는 승객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항공운송을 위한 의사 소견서를 출발 2일전까지 제출 필요함.
- ❖ 운송이 가능한 이동보조장비의 배터리 운송 제한사항이 안내되어 있음.
 - ▶ 배터리 분리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전동휠체어의 경우 승객 요청 시 탈/부착에 도움 제공함.
 - ▶ 교통약자의 이동보조장비에 대해서는 일반 수하물과 동일 규정을 적용함.

마. 이스타항공

- ❖ 이스타항공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임산부, 유아동반승객,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승객 등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이스타항공 홈페이지는 조사 시점(2018년 11월)에 유효한 웹접근성 품질 인증 및 모바일앱 접근성 품질 인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되었음.
- ❖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번호나 전용 상담 문자는 운영하지 않음.
- ❖ 32주~36주의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 및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37주 이상(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함.
- ❖ 국내선은 생후 7일 이상, 국제선은 생후 14일 이상의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보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 가능하며,
 - ▶ 한 열당 1명의 유아 승객만 탑승이 가능하며 유아 요람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 ❖ 공항에서 출발 및 도착 시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예약 시점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 휠체어 이용 승객은 이동시간을 감안하여 탑승수속시 카운터에 일찍 도착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 ❖ 항공사에서 제시한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한 질병 또는 질환이 있는 승객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항공운송을 위한 의사 소견서를 출발 2일전까지 제출 필요함.
- ❖ 전동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 운송을 위해서는 물질성분표(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증빙을 요구하고 있으며, 증빙이 없는 경우 배터리 종류 및 용량을 증빙할 수 있는 대체 서류가 필요함.

바. 티웨이항공

- ❖ 티웨이항공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임산부, 유아동반승객, 휠체어 및 도움이 필요한 승객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티웨이항공 홈페이지는 조사 시점(2018년 11월)에 유효한 웹접근성 품질 인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바일앱 접근성 품질 인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되었음.
- ❖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번호나 전용 상담 문자는 운영하지 않음.
- ❖ 32주~37주 미만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37주 이상(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함.
- ❖ 국내선은 생후 7일 이상, 국제선은 생후 14일 이상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보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하며, 유아의 국제선 운임은 노선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음.
- ❖ 유모차의 형태에 따라 유모차를 기내 반입 또는 위탁 수하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에 따라 유아용 안전 의자의 사용 가능함.

- ❖ 보행이 불편한 승객에 대해 무료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 휠체어를 출발 공항의 탑승구까지, 도착 공항의 탑승구에서부터 본인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고, 전동 휠체어의 경우 고객센터로 사전 문의가 필요 함.
- ❖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 예약시점에 요청 시 출발 및 도착 공항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공항에서 입국 수속까지 안내하는 서비스 제공함.
- ❖ 전동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 운송을 위해서는 출발 최소 24시간 전까지 물질성분표(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및 설명서 등의 증빙을 요구하고 있음.
 - ▶ 배터리 분리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전동휠체어의 경우 승객 요청 시 탈/부착에 도움 제공함.
 - ▶ 교통약자의 이동보조장비에 대해서는 일반 수하물과 동일 규정을 적용함.

사. 장애아

- ❖ 장애아는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유아동반승객, 임산부, 몸이 불편한 승객, 보조 호흡장치 사용 승객 등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유아는 생후 7일 이상 만 2세 미만의 승객으로 보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하며, 국내선은 무료, 국제선은 성인 정상 운임의 10%를 부과하고 있음.
- ❖ 32주~36주의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 및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37주 이상(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능함.
- ❖ 보행이 불편한 승객의 경우 공항 출·도착시 무료로 휠체어를 대여하고 있으며, 온라인, 고객센터, 출발지 공항에서 해당 서비스의 신청 가능함.
- ❖ 본인 휠체어를 출발 공항의 탑승구까지, 도착 공항의 탑승구에서부터 본인 휠

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며, 전동휠체어의 경우 고객센터로 사전 문의 요청함.

- ❖ 휠체어 서비스 이용 승객은 출발 전 항공사가 요청하는 시간까지 일찍 수속할 것을 요청함.
- ❖ 승객 소유의 보조호흡장비 사용 예정 승객은 출발 48시간 전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예약 해야 하며, 휴대용 산소발생기 사용 승객은 예약시 의사 소견서 제출이 필요함.

아. 에어서울

- ❖ 에어서울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임산부, 유아동반승객,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안내견 동반 시각 장애인 승객 등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유아는 생후 7일 이상만 2세 미만의 승객으로 보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하며(유아 요람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성인 정상 운임의 10%를 부과하고 있음.
- ❖ 만 5세 이상 부터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출국에서 도착까지 UM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며, 여행출발 24시간 전까지 예약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 하고 출/도착지에서 어린이를 인수할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제공이 필요함.
- ❖ 32주~36주 미만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와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36주 이상 임산부는 보호자 동반을 조건과 의료서비스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함.
- ❖ 거동이 불편한 승객의 경우 공항 출·도착시 휠체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탑승수속, 출국수속 및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함.
- ❖ 본인 휠체어를 출발 공항의 탑승구까지, 도착 공항의 탑승구에서부터 본인 휠

- 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며, 전동휠체어의 경우 예약 시 사전
통보 요청함.
- ❖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 추가요금 없이 동반 탑승이 가능하며 공인된 기관의
인증서를 소지, 목줄을 착용하고, 목적지 또는 경유지 검역절차 기준에 부합하
고, 비행중에는 승객의 발 아래 위치해야 함.
 - ❖ 시각장애인은 탑승수속에서 입국수속까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함.

<표 2-2> 국적 항공사의 서비스 현황 조사표

항공사	혼자 여행하는 고령자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승객	휠체어 서비스	시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안내견	임산부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승객
대한항공	○	○	○	○	○	○	○	○
아시아나항공	○	○	○	○	○	○	○	○
제주항공		○		○				
에어부산	○	○	○	○	○			
이스타항공				○				
티웨이항공				○	○			
진에어				○				△
에어서울		○		○	○	○		

2. 외국적항공사 교통약자 서비스 제공 현황

- ❖ 다음은 국내에 취항하고 있는 외국적항공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조사한 내용임.
- ❖ 조사 방법은 항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중 일부를 국적별로 구분하여 정리함.
- ❖ 일부 외국적 항공사들은 교통약자(장애인)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장비에 대해서 사진 등을 게시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전자파일 형태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항공사도 있었음.

가. 미국 국적 항공사

- ❖ 우리나라를 취항하는 미국 국적의 항공사 중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에어캐나다, 유나이티드 항공, 하와이안 항공에서 교통약자승객(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승객,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정리하였음.

1) 델타항공		
장애 인	거동이 불편한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도착부터 터미널, 보안검색대, 탑승구까지 도움 · 통로용 휠체어, 기내 휠체어 제공 · 개인 휠체어 서비스를 위한 휠체어 취급 양식 제공 · 이동식 통로 측 팔걸이가 있는 좌석 배정 · 기내 휠체어 사용, 기내 휴대 품목 적재 및 회수, 기내식의 개별 음식 확인 및 패키지 개봉 등 도움 가능
	시각장애	승객 요청 시 탑승, 하기 또는 환승 지원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 승객 요청 시 탑승, 하기 또는 환승 지원
	언어 및 의사소통 관련 장애 승객	장애인 서비스 요청 양식에 표시된 선호 지원 방식대로 지원
	휠체어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유형의 개인 휠체어 운송 가능 · 전동휠체어 체크인시 최소 48시간 이전 전화 필요 · 터미널, 보안 검색대 및 탑승구까지 도움 · 통로용 및 기내 휠체어 이용 시 사전에 신청필요 · 휠체어 분해가 필요한 경우 조립/분해 지침서와 배터리 종류 정보를 휠체어에 부착 또는 휠체어 취급 양식 작성 요청 · 항공기 치수 사전 확인 요청 · 연방 위험물 처리 절차 준수
	안내견 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건강 양식 또는 면역 접종 기록을 소지하고 여행 · 출발 48시간 전까지 보조 동물에 관한 서류 제출 요구 · 동물의 크기는 승객 좌석이 차지하는 공간을 넘어서는 안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서비스 예약 가능 · 승무원은 다음 서비스 제공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 보조 - 화장실 사용 - 승객 운반 - 의료 서비스 · 의료기기 전원 공급 불가(배터리 소지 요망) · 48시간 전 통보 시 POC(휴대용 산소발생기) 사용 허용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8개월 이후 여행하는 경우 의사 확인 요망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비동반 어린이 서비스 요금은 편도 \$150의 수수료 (5-14세 어린이가 혼자 여행하는 경우 필수, 15-17세 어린이는 선택) · 보호자는 보안 검색대를 지나 탑승구까지 동행 가능 · 델타 스카이 존, 어린이 전용 라운지 이용 가능 	
영유아 동반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팔에 안거나 FAA 인증한 여행용 하네스에 앉힐 경우 무료 탑승(미국 및 캐나다 내 모든 항공편) · 국제선 항공편은 성인 요금의 10% 	

2) 아메리칸 항공		
장애인	시각 장애	· 요청 시 공항 예약 지원 및 무료 휠체어나 도우미, 길 안내
	청각 장애	· 승무원에게 요청 시 항공편 관련 중요 변경 사항 안내 · 안내 동영상에 자막 제공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 고정식 팔걸이 설치된 좌석에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안내 동물과 동반 여행하는 경우, 다리가 고정되어 있거나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추가 여유 공간이 필요한 경우 특별 좌석 배정 · 특별 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탑승구에서 조기 탑승 요청 가능 · 승객의 몸이 팔걸이 가장 바깥 모서리를 2.5cm(1인치) 이상 벗어나고 좌석 벨트 연장선이 필요한 경우 추가 좌석 필요 - 전화로 예약 시 같은 요금으로 좌석 2개 배정 - 사전에 추가 좌석을 예약하지 않은 경우, 공항 직원에게 붙어 있는 좌석 2개가 남아 있는지 확인 요청 - 상위 클래스 좌석 배정 요금 차액은 본인 부담 - 원래 예약한 항공편에서 여유 좌석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원래 좌석과 동일한 요금에 다른 항공편 좌석을 구입 가능
	휠체어 이용	· 기내 여유 공간에 접이식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음(머리 위 수납공간이나 좌석 밑에도 보관 가능) · 접을 수 없는 이동보조장치는 발권 카운터나 출발 탑승구에서 수하물 위탁 가능 · 최소 48시간 전에 사전 고지하여 항공사의 승인 필요
	안내견	· 모든 필수 서류를 갖추고 탑승 48시간 이전에 허가서 무료 동반 기내 탑승 가능 · 보호자 발아래, 좌석 아래 또는 무릎 위에 앉힐 수 있어야 함(2세 이하 어린이보다 작은 동물은 무릎 위에 앉힐 수 있음) · 안전 규정에 따라 비상구 측 좌석은 배정되지 않음 · 안내 동물이 허용 공간에 맞지 않는 경우 적합한 항공권을 재 예약하거나, 동물을 위한 티켓 구매 또는 위탁 운송을 해야 할 수 있음
	기타	FAA 승인된 POC의 사용만 허가되며 출발 최소 48시간 전에 예약 센터에 고지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 어린이 승객에 대해 성인 요금을 지불할 때 미동반 어린이 서비스 제공(5세~15세 사이 어린이) - 전문 요원이 전용 체크인 데스크에서부터 기내 승무원에게 인도할 때까지 동행, 우선 탑승, 비동반 어린이 라운지 이용
영유아 동반 승객		· 생후 2일 이상 7일 미만 유아 동반 여행 시 탑승 전에 담당 의사가 탑승객 의료 양식을 작성(특별 지원 담당자가 담당 의사에게 해당 양식을 직접 전송) · 모든 와이드 바디 항공기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 설치 · 승용차용으로 승인된 대부분의 카시트 사용 가능 (단, 출구열 좌석이나 출구열의 양쪽 옆 좌석에서는 사용 불가하며 아동이 앉을 좌석을 별도 구입하거나 옆 좌석이 승객이 없는 빈 좌석이어야 함)

<p>임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객 1인당 1개의 유모차와 1개의 카시트 무료 위탁 가능 · 출산 예정일이 탑승일로부터 4주 이내인 경우 반드시 항공기 여행에 적합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 · 국내선 항공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 시간이 5시간 미만인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출산일 기준 7일 이내(전과 후 모두)에는 탑승이 원칙적으로 불가. * 임신 기간 중에 항공기 여행을 꼭 해야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의사의 동의와 특별지원 담당자의 승인 필요 - 담당 의사가 탑승 전에 탑승객 의료 양식을 작성(특별지원 담당자가 담당 의사에게 해당 양식을 직접 전송) · 국제선 또는 대양 횡단 항공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지원 담당자의 승인 필요 - 출산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4주 이내인 경우(48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았고 비행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담당 의사 확인서 필요) - 출산 전 7일 또는 출산 후 7일 동안(담당 의사가 탑승객 의료 양식을 작성)
------------	---

<p>3) 에어캐나다</p>		
<p>장애인</p>	<p>시각 및 청각 장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와 U.S. 사이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예약은 출발 48시간 전, 체크인 60분 전에 하기를 권장 - 대형 점자 인쇄 안전 카드를 제공 - 기내 오디오 셀렉션 템플릿 보유 · 모든 노선 이용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한 청각 및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동반이 원칙이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자 하는 승객은 사전에 고지 및 의료 승인이 필요 - 점자대형 인쇄 안전 카드를 제공 - 기내 오디오 셀렉션 템플릿 보유
	<p>거동이 불편한 장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와 U.S. 사이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로 기내 수하물 또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 가능 - 기타 이동 보조기구(지팡이, 목발 등)나 배터리 구동 의료 기구 또한 무료 운송 - 60 석 미만의 항공기 (예 : Bombardier Dash 8-300, Dash 8-100 또는 CRJ100 / 200 또는 Beechcraft 1900D)에서 전동 휠체어로 여행하는 경우 여행 전 48시간 전에 예약센터에 연락하고 체크인 시간보다 적어도 60분 전에 도착하는 것을 권장 - 모든 에어캐나다 항공기가 기내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지원 데스크에 문의 · 모든 노선 이용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로 기내 수하물 또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 가능 - 기타 이동 보조기구(지팡이, 목발 등)나 배터리 구동 의료 기구

		<p>또한 무료 운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터리 구동식 이동 보조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출발하기 최소 48 시간(특정 목적지의 경우 72시간) 전까지 서비스를 요청하고 체크인 시간보다 적어도 60분 전에 도착하는 것을 권장 - 모든 에어캐나다 항공기가 기내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 지원국에 문의 권장 						
	<p>보호자 동반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와 U.S. 사이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적 장애로 안전 지침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 경우 - 매우 심각한 이동성 장애가 있거나 청력 및 시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비상 사태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의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구 열 좌석을 배정받지 못함 - 캐나다 내 노선만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자의 비행기 운임비 무료 2. 예약 방법: 장애인 본인의 비행기 표를 온라인으로 예약한 뒤 에어 캐나다 의료 지원국에 연락하여 보호자 좌석 예약 - 국제선 이용 승객의 경우 에어 캐나다 비행 양식을 프린트하여 해당 관련 절차에 따라 보호자 좌석 예약 						
	<p>안내견</p>	<p>8 시간 이상 걸리는 항공편 구간을 여행하는 경우 여행 48시간 전에 에어 캐나다에 무료로 서비스를 예약하고 탑승 수속 시간보다 1시간 먼저 탑승</p>						
	<p>기타</p>	<p>최소 48 시간 전 사전 통지 시 개인 산소 농축기(POCS) 사용 가능 (배터리는 비행 시간의 1.5배만큼 충분히 충전되어 있어야 함)</p>						
	<p>혼자 여행하는 어린이</p>	<p><보호자 비동반 소아 서비스></p> <table border="1" data-bbox="553 1292 1356 1563"> <tr> <td data-bbox="553 1292 878 1448">8세 미만</td> <td data-bbox="878 1292 1356 1448">서비스 불가 (8세 미만의 어린이는 여행 시 16세 이상의 승객 동반이 필수)</td> </tr> <tr> <td data-bbox="553 1448 878 1506">8세~11세</td> <td data-bbox="878 1448 1356 1506">서비스 신청 의무</td> </tr> <tr> <td data-bbox="553 1506 878 1563">12세~17세</td> <td data-bbox="878 1506 1356 1563">서비스 가능</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혼자 여행할 예정임을 에어 캐나다 예약 센터나 여행사에 문의 · 선택한 요금에 상관없이 편도 당 어린이 1 인당 \$ 100 - \$ 118.00가 CAD 나 USD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 	8세 미만	서비스 불가 (8세 미만의 어린이는 여행 시 16세 이상의 승객 동반이 필수)	8세~11세	서비스 신청 의무	12세~17세	서비스 가능
8세 미만	서비스 불가 (8세 미만의 어린이는 여행 시 16세 이상의 승객 동반이 필수)							
8세~11세	서비스 신청 의무							
12세~17세	서비스 가능							
	<p>영유아 동반 승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 미만의 어린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패밀리 체크인 가능 · 6세 미만의 어린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조기 탑승 가능 · 12세 미만의 어린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요청 시 패밀리 시트 제공 · 온라인 항공편 예약 시 자녀와 함께 여행할 것임을 알리고 항공권 발권 후 48시간 이내에 본인과 자녀의 좌석을 가까운 곳에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상의 이유로 영아를 무릎으로 올려놓지 않고 어린이 보호 장치를 사용할 것을 권장, 유아(만 2세 이상)의 경우는 선택 사항임 · 성인 한 명 당 영유아 한 명 동반 허용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만 2세까지</th> <th>만 2세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캐나다 내</td> <td>성인 무릎에 앉힐 경우: 무료 자율 좌석: 성인 요금</td> <td>자율 좌석: 성인 요금</td> </tr> <tr> <td>캐나다/미국</td> <td>성인 무릎에 앉힐 경우: 세금만 적용 자율 좌석: 성인 요금</td> <td>자율 좌석: 성인 요금</td> </tr> <tr> <td>그 외</td> <td>성인 무릎에 앉힐 경우: 성인 요금의 10% 본인 좌석: 어린이 요금</td> <td>본인 좌석: 어린이 요금</td> </tr> </tbody> </table>		만 2세까지	만 2세 이상	캐나다 내	성인 무릎에 앉힐 경우: 무료 자율 좌석: 성인 요금	자율 좌석: 성인 요금	캐나다/미국	성인 무릎에 앉힐 경우: 세금만 적용 자율 좌석: 성인 요금	자율 좌석: 성인 요금	그 외	성인 무릎에 앉힐 경우: 성인 요금의 10% 본인 좌석: 어린이 요금	본인 좌석: 어린이 요금
		만 2세까지	만 2세 이상											
	캐나다 내	성인 무릎에 앉힐 경우: 무료 자율 좌석: 성인 요금	자율 좌석: 성인 요금											
캐나다/미국	성인 무릎에 앉힐 경우: 세금만 적용 자율 좌석: 성인 요금	자율 좌석: 성인 요금												
그 외	성인 무릎에 앉힐 경우: 성인 요금의 10% 본인 좌석: 어린이 요금	본인 좌석: 어린이 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기 침대는 에어캐나다 예약 센터에서 예약하며 선착순으로 배정 · 어린이 한 명 당 유모차 1대 무료 운송 														
임산부	정상 임신 및 과거 조기 진통 이력이 없는 경우 임신 36주차 임부까지 탑승 가능													

4) 유나이티드 항공		
장애인	시각 및 청각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구 위치 및 비상구 이용 상황 및 비상 시 고객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에 대해 개인별 안전 브리핑 실시 · 의료 서비스, 화장실 이용 또는 실제 식사 지원 불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석 이상을 갖춘 모든 항공기에 기내 휠체어 보유 및 제공 · 탑승교가 구비되지 않은 일부 국내 및 국제 공항에서 탑승 및 하차 지원을 위해 PAL(Passenger Assist Lift), 기계식 리프트, 램프 또는 항공사 직원이 직접 미는 스테어체어(Stair Chair) 제공 · 여행사 또는 항공사 예약 센터를 통해 미리 요청
	안내견 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편 출발 최소 48시간 전에 필요 양식 제출 · 출구 열 좌석 배정 금지 · 애완동물 입국에 대한 제한 사항은 국가별로 다르므로 출발 최소 4주 전에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내에서 POC를 사용할 고객은 출발 48시간 전까지 기기명을 포함하여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시간 여유 분량의 배터리 여유분을 소지할 것을 권장 · 전자/기계식 인공호흡기 또는 CPAP 장치를 가지고 탑승하는 고객은 최소 48시간 전에 미리 신고
<p>혼자 여행하는 어린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세~14세 어린이는 보호자 비동반 소아 서비스 이용 의무 · 체크인 및 공항 수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공항에 도착 필요 · 비동반 소아 서비스는 유나이티드 또는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가 운항하는 직항 항공편만 가능 · 보호자 비동반 소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도마다 USD 150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
<p>영유아 동반 승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내에서 성인과 한 좌석에 앉는 2세 미만 유아의 경우에는 항공권이 필요 없음 · 국제선(캐나다, 괌 및 멕시코행 포함)에 탑승하는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유아는 항공권을 구매해야 하며 유아 운임 및 세금이 적용 · 미국~캐나다 간 또는 멕시코~미국/멕시코~캐나다 노선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 항공권에 대한 세금만 지불 · 괌을 포함하여 기타 해외 목적지로 좌석 없이 여행하는 유아의 경우 유아 발권 시 성인 운임의 10%가 부과 · 2세가 되는 유아의 경우 좌석 이용 시 항공권 구매 · 인큐베이터 내의 유아나 7일 미만의 유아는 탑승 불가 · 베이직 이코노미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을 포함해 유아용 좌석을 구매한 경우, 기내 탑승 시 특정 좌석에 FAA 승인 유아 보호 장치(CRS) 또는 유아용 카시트를 사용 가능(항공사는 어린이 보호 장치와 유아용 카시트를 제공하지 않음) · 연방 규정에 따라 15세 미만의 고객을 비상구 열 좌석에 배정하지 않음 · 무료 유아용 침대는 국제선 항공편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나 수량이 제한적임 · 유모차는 위탁 수하물 허용량과 별도로 무료로 최종 목적지까지 위탁 가능 · 공항 또는 기내에서 모유 착유기 사용 가능
<p>임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36주 이전에 여행하는 여성은 의료 서류 없이 유나이티드 항공편으로 여행 가능 · 임신 36주차 또는 36주 이후에 여행하는 여성은 산부인과 의사가 해당 여성의 항공편 출발 날짜 3일(72시간) 이내에 작성한 검사증 원본과 사본 2부를 준비(검사증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해당 고객을 검진한 결과 지정 기간에 항공 여행을 하는 데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p>고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노선에서 65세 이상의 고객에게 할인 혜택 제공 · 예약 시 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시 65세 이상 성인 선택

5) 하와이안 항공		
장애인	시각 및 청각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권 예약 시 또는 예약 후 장애 사실 신고시 기내에서 필요한 서비스 제공 가능 · 시청각 장애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하거나 직원의 안전 지시에 적절히 따를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보호자 동행 요구 · 탑승구 직원에게 시각이나 청각 장애 사실 신고 시 비행기가 출발할 때까지 직원이 계속해서 중요 안내를 전달하고 탑승시 도움 제공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기술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보관하고, 예정된 항공편 출발 전에 요청 서류를 제출 · 주요 보조 장치 운송은 무료이며 수화물 제한량에 포함되지 않고 무게 제한도 또한 없음 · 기내 수화물로 휴대 가능하며, 탑승 수속 시 하와이안 항공 직원이 보조 장치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위탁 수화물로 처리 · 보조 장치가 무료로 운송 가능한지 여부는 공항에서 탑승 수속 시 하와이안 항공 직원이 결정(주요 보조 장치는 무료로 운송 가능하지만, 주요 보조 장치로 사용되지 않는 추가 보조 장치는 기본 수화물 규칙과 요금을 적용) · 탑승 후, 보조 장치를 둘 공간이 없고 비행 중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특별 취급 태그를 부착하여 탑승해 계시는 동안 수화물칸에 보관 · 공항 휠체어가 필요하거나, 본인 소유의 휠체어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기타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공항 포터에게 요청
	안내견 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동반 탑승 가능 · 항상 비워 두어야 하는 공간과 복도를 막지 않는 한 항공기의 어떤 구역에 있어도 무방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용 보조 산소와 이동용 침대 제공은 최소 48시간 전까지 사전 통지 필요(단, 일부 노선에서만 사용 가능) · 젤 전지 또는 습전지를 사용하는 이동 장치 또는 기타 보조 장치 운반은 최소 48시간 사전 통지 필요 · 10인이상 장애인 단체 여행은 최소 48시간 전 사전통지 필요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p><보호자 비동반 어린이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선(하와이 주/북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세 이상 어린이는 혼자 탑승 가능 - 5~11세 어린이는 15세 이상의 동반 탑승객이 같은 비행기 내 같은 좌석칸에서 여행하는 경우 탑승 가능 · 국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탑승 불가 - 12세 미만 어린이는 18세 이상의 동반자와 같은 비행기 내 같은 좌석칸에서 여행해야 함 - 12세 이상 어린이는 혼자 여행 가능

	- 18세 미만 승객은 부모 중 한 명과 여행 시 또는 부모 없이 여행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음 · 하와이안 항공 한국 총 대리점에 연락하여 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			
	연령(세) 마지막 생일 기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서비스 이용	노선	하와이안 항공 필수 요금(편도)
	1 - 4	불가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5 -11	필수	하와이 주 내	비행 구간별료 \$35 USD
북미와 하와이 간(무착륙, 직항)			비행 구간별료 \$100 USD	
국제선			불가	
영유아 동반 승객	· 2세 미만의 영아와 함께 여행하는 승객은 다음 여행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성인의 무릎에 앉아 여행(항공권을 구매한 성인 1명당 영아 1명만 무릎에 앉아 여행 가능) - 뒷면을 향한 카시트를 비행기 좌석에 장착(좌석 별도 구매) · 성인 1명이 영아 2명을 동반하는 경우 - 영아 1명은 무릎에 앉아 여행 - 다른 영아 1명은 좌석을 구매하여 여행			
		북미 항공편	국제선 항공편(파고파 고/파페에테 제외)	파고파고/파 페에테 및 북미 간 항공편
	무릎에 앉아 여행하는 영아	무료	동반하는 성인 요금의 10%(세금과 수수료 별도)	동반하는 성인 요금의 10%(세금과 수수료 별도)
	좌석을 구매하여 여행하는 영아	성인 운임 전액	동반하는 성인 요금의 75%(세금과 수수료 별도)	동반하는 성인 요금의 67%(세금과 수수료 별도)
	2세 이상 유아	성인 운임 전액	게시된 성인 요금의 75%	게시된 성인 요금의 67%
· 좌석 구간(좌석 구간이란 복도로 구분되는 인접한 여러 좌석을 의미함)당 영아 1명 여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어난 지 7일이 되지 않은 영아와 여행하려면 담당 의사의 소견서(여행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작성)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함 · 카시트를 이용할 승객은 탑승 전에 하와이안 항공 직원에게 요청 · 카시트를 이용하는 승객은 비상구가 있는 줄, 또는 바로 앞 줄과 뒷줄에 있는 좌석을 이용할 수 없음 · 국제 여행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대부분의 노선에서 요청 시 영아를 위한 침대 제공(이용이 항상 보장되지는 않음)
<p style="text-align: center;">임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출산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여행할 계획이 아닌 경우 탑승 가능 · 하와이 주 내에서 여행 시 여행일이 출산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이거나 아기가 7일 미만인 경우 의사의 탑승 허가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음 · 하와이와 북미 간 여행 또는 해외 여행 시 여행일이 출산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출발 예정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산부인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탑승을 허가하는 의료 소견이 적힌 서면 허가서 제출 · 하와이와 북미 간 여행 또는 해외 여행 시 아기가 7일 미만인 경우 의사의 소견이 적힌 진단서를 제출

나. 유럽 지역 국적 항공사

- ❖ 다음은 우리나라를 취항하는 유럽 국적의 항공사 중 루프트한자 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 항공, 영국항공, 핀에어, 터키항공, 아에로플로트항공, 오로라항공(사할린스키항공)에서 교통약자 승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정리하였음.

1) 루프트한자항공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 시 또는 예약 후 루프트한자 서비스 센터로 전화를 걸어 필요한 지원의 종류 신청 · 출발 90분 전까지 공항에 도착을 권장 · 필요에 따라 다른 승객보다 먼저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
	시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의 지원이 준비될 수 있도록 예약 직후 또는 출발 48시간 전까지 항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함 · 시각 장애가 있는 승객에게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착 및 기타 주요 안내사항을 개인적으로 전달 - 공항에서의 에스코트 등 기타 지원 서비스 - 별도의 개인 안전 교육 실시 - 기내식 쟁반에 놓인 음식의 위치 설명 · 항공기에서 내릴 때와 목적지 공항에서 이동 시 루프트한자 직원이 지원 서비스를 제공. 공항 출구까지 또는 연계 항공편에 탑승할 때까지 에스코트. 프랑크푸르트 또는 뮌헨 공항에서 장시간 체류할 때를 대비하여 시각 장애가 있는 승객을 위한 대기 라운지 있음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의 지원이 준비될 수 있도록 예약 직후 또는 출발 48시간 전까지 항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함 ·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착 및 기타 주요 안내사항을 개인적으로 전달 - 별도의 개인 안전 교육 실시 - 영어 및 독일어 자막의 영화 제공 · 항공기에서 내릴 때와 목적지 공항에서 이동 시 루프트한자 직원이 지원 서비스를 제공. 공항 출구까지 또는 연계 항공편에 탑승할 때까지 에스코트. 프랑크푸르트 또는 뮌헨 공항에서 장시간 체류할 때를 대비하여 청각 장애가 있는 승객을 위한 대기 라운지 있음
	인지장애	<p>혼란 혹은 방향감각 상실을 유발하는 특정 장애(예: 알츠하이머병)가 있는 경우, 승무원의 안전 수칙에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승객이 보호자 없이 비행기에서 내릴 경우 공항이나 공항 주변에서 길을 잃고 불안이 급증하여 예기치 못한 결</p>

	<p>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 동반인과 함께 여행할 것이 권장됨</p>
안내견 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의 지원이 준비될 수 있도록 예약 직후 또는 출발 48시간 전까지 항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함 · 맹인안내견 및 보청견 등 정식 보조견은 모든 루프트한자 항공편에서 무료로 운송 가능하며 미국 도착 및 출발 노선의 경우 정서적 장애 보조견 또한 무료로 운송 · 안전하고 안정적인 항공편 운항을 위해 보조견은 승객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공공 장소에서 적절히 행동해야 함 · 어떠한 이유로든 보조견이 기내 또는 탑승구에서 혼자 돌아다녀서는 안 되며, 건강상의 위험이나 위생상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풀어놓을 수 있음
휠체어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휠체어와 같은 이동보조장치가 필요한 경우, 적어도 출발 48시간 전까지 루프트한자 서비스 센터에 신청 · 휠체어는 무료로 제공되며 승객 소유의 접이식 휠체어를 반입하시는 경우 운송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승객의 휠체어는 짐칸으로 운송) · 일부 소형 항공기의 경우 이동 보조장치의 크기 및 무게 제한이 적용되므로 예약 시 승객 소유의 휠체어의 크기, 무게, 특징 및 배터리 종류 등을 서비스 센터에 알려주어야 함 · 기내 휠체어 제공 · 장거리 기종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
기타	<p>다음의 경우, 보호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 시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승객 - 승무원과 안전수칙에 대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승객 - 안전수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직접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승객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증 없는 임신부의 경우 임신 36주까지 또는 출산 예정일 4주 전까지는 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 없이도 비행 가능 · 임신 28주가 넘은 임신부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부인과 전문의의 최근 소견서를 소지할 것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증 없이 임신이 진행되고 있다는 확인서 - 출산 예정일 - 부인과 전문의는 환자의 임신 상태가 비행에 무리가 없음을 명시 · 쌍둥이 또는 다태아 임신인 경우, 임신부는 임신 28주까지 비행이 가능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동반 어린이 서비스는 5-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12세-17세의 청소년도 서비스 제공 가능 · 미동반 아동의 항공권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하며 루프트한자 서비스 센터 혹은 여행사를 통해 예약 가능 <table border="1" data-bbox="604 454 1321 599"> <thead> <tr> <th>노선</th> <th>요금(유로)</th> </tr> </thead> <tbody> <tr> <td>독일 또는 유럽 내 비행 구간</td> <td>60유로</td> </tr> <tr> <td>국제선 구간</td> <td>100유로</td> </tr> </tbody> </table>	노선	요금(유로)	독일 또는 유럽 내 비행 구간	60유로	국제선 구간	100유로
노선	요금(유로)						
독일 또는 유럽 내 비행 구간	60유로						
국제선 구간	100유로						
영유아 동반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운임: 별도의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영유아(0-2세)는 독일 국내선의 경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그 밖의 모든 노선에서는 표준 운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용 가능 · 어린이 요금: 2-11세 어린이(12세 생일 전까지)의 경우 별도로 좌석을 예약해야 하며 대부분의 노선 및 거의 모든 운임에서 표준 운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용 · 유모차는 탑승 직전까지 이용하고 착륙 직후에 돌려받을 수 있음 · 기저귀 테이블은 기내 화장실에서 이용할 수 있음 · 기내에는 영유아 젖병에 사용할 충분한 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검색대 통과 후 물을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음 · 비상 시를 대비하여 기내에는 여분의 기저귀가 준비 · 항공기에서 유아식을 제공하나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기에 유아에게 먹일 음식을 미리 준비하기를 권장 · 모든 장거리 항공편에서는 아기 침대 제공(출발 52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 · 기내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7세 이하)의 수동적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아동 보호 장치 또는 아동용 카시트, 영유아용 좌석 사용 가능 						

2) 에어프랑스		
장애 인	거동이 불편한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늦어도 항공편 출발 48시간 전까지 운송할 휠체어의 종류와 수량을 항공사에 알릴 것을 권장(온라인 또는 에어프랑스의 Saphir에 문의) · 수동식 또는 전동식 개인 이동장비나 휠체어를 2개까지 운송 가능하며 크기와 무게에는 제한이 없음 · 휠체어를 최상의 조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늦어도 항공편 출발 2시간 전까지 체크인 권장
	시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인 - 탑승 - 항공기 하차 및 수하물 수취 시 * 환승하는 경우에도 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 · 기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석 - 기내 상황(비상구, 화장실 등), 호출 버튼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위치, 산소 마스크의 위치와 사용법 등 필요한 각종 정보 안내 - 모든 항공기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설명서가 비치되어 있고 요청 시 배부 - 최신형 항공기에는 몇 가지 유용한 정보(좌석 번호, 화장실 이용 방법)가 점자로도 표시 - 장거리 항공편에서는 시력이 좋지 않은 승객을 위해 안전 규칙을 설명하는 영상과 일부 뉴스 및 오락 영상에 선명한 '고대비' 자막(영어와 프랑스어) 서비스를 제공 - 오디오북 프로그램 상시 운영 - 요청 시 승무원이 식단 구성 설명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늦어도 항공편 출발 48시간 전까지 장애 사실 신고 시 서비스 제공 가능 · 에어프랑스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부 공항(특히 체크인 카운터)과 발권 사무소 등지에 자석 루프가 설치 · 에어프랑스 승무원들은 청각 장애로 잘 듣지 못하거나 전혀 듣지 못하는 승객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음 · 국제선/카리브해/인도양 구간에서 오락용 개인 모니터로 영어 자막을 넣은 영화 프로그램을 감상 가능
	지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공편 출발 늦어도 48시간 전까지 예약할 것을 권장 · 공항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 - 체크인 및 수하물 체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승, 착석, 항공기 하차 - 수하물 수취 - 공항 떠나기
안내견 동반	<p>안내견의 무료로 기내 반입되며 운송 조건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지 국가와 도착지 국가 및 환승지 국가의 모든 위생 요건 충족 ·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도 되나 항상 묶여 있어야 함 · 통로를 막아서는 안 됨
휠체어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 휠체어 - 에어프랑스 지원 서비스팀의 직원이 공항의 특정 장소에서 항공기까지, 그리고 항공기에서 공항 출구까지 이동 지원 · 기내 휠체어 - 에어프랑스의 모든 항공기(A318, A319, A320, A321, A330, A340, A380, B 777 및 B747)에는 비행중 기내 통로 이동과 화장실 출입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개발된 휠체어('기내 이동 휠체어') 보유
보호자	<p>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자 동행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각한 지적 장애로 인해 안전조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없는 사람 · 시각 및 청각 장애로 인해 승무원과 최소한의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사람 · 이동 장애로 인해 스스로 탈출할 힘이 없는 사람(하지가 모두 마비된 사람과 상지가 마비되었거나 없는 사람은 대개의 경우 동반자 없이도 여행이 가능하나 사지 마비 환자는 대부분 반드시 동반자 필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내 의료용 산소 서비스는 출발 최소 48시간 전까지 신청(유료)할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항공여행에 맞게 특별히 개발된 휴대용 키트(Wenoll WS120)가 제공 · '휴대용 산소 농축기'를 사용할 승객은 출발 48시간 전까지 기기 사용 계획을 항공사에 알릴 것을 권장하며 기내 콘센트에 연결하여 충전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함 · 장거리 항공편(Airbus A330-A340-A380 및 보잉747, 777)의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및 프리미엄 이코노미의 좌석에는 승인된 호흡기를 연결하기 위한 콘센트가 갖추어져 있으며 필요 시 SAPHIR, 예약 서비스 또는 여행사에 미리 문의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동의서 제출이 필수는 아니나 여행 전 담당 의사와 상담 후 항공 여행을 허가하는 소견서를 소지할 것을 권장 · 임신 37주부터 및 출산 후 7일 동안은 여행을 삼갈 것을 권장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아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p>한해 미동반 아동(UM) 의 자격으로 혼자 여행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탈출할 힘이 있는 경우, - 안전조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경우
영유아 동반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아동은 18세 이상의 독립된 성인과 동행하는 것이 원칙 · 성이 다른 자녀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가족대장 혹은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출생증명서 사본을 지참 · 아동과 함께 여행하는 승객은 단거리 항공편 이용 시 15% 할인, 중·장거리 항공편 이용 시 33% 할인 제공 · 만 2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프랑스 국내선에서는 무료로 무릎에 앉혀 여행할 수 있으며, 국제선에서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아동의 좌석을 따로 예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에 제시된 아동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유모차와 카시트를 화물칸에 무료로 위탁(기내에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 일부 유모차에 대해 반입이 허용)

3) KLM네덜란드항공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하기 최소 48시간 이전에 KLM CARES를 이용하여 특별 지원을 요구 · 본인용 목발, 보행기 혹은 지팡이를 기내로 가져가는 것은 무료이며 예약이 필요하지 않음 · 기내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시설: 휠체어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KLM의 보잉 777, 보잉 787 및 에어버스 A330 항공기에 마련 - 보잉 737, 보잉 747, 및 엠브라에르 190 항공기는 화장실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접이식 커튼이 설치 - 화장실 손잡이: 모든 KLM 항공기의 기내 화장실에는 지지용 손잡이가 장착 - 이동식 팔걸이: 당사 모든 항공기의 복도와 중간 좌석에는 이동식 팔걸이가 설치
	안내견 동반	<p>안내견 신청 양식 작성 후 출발하기 최소 48시간 이전에 KLM CARES를 이용하여 특별 지원 요청 및 또한 공항 체크인 시 신청서 지참</p>
	휠체어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키폴 공항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승객을 위하여 휠체어를 마련 · 본인용 휠체어 소지를 원할 경우 KLM CARES에 연락 · 도움 요청 후, 꼭 출발 전 시간 여유를 두고 공항에 도착(체크인 시간 30분 전 도착 또는 전동 휠체어를 가져오는 경우 체크인 시간 1시간 전에 도착할 것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소유의 휠체어를 가져오는 것은 무료이나 출발 48시간 전에 예약해야 함 · 접이식 수동 휠체어나 분해 가능한 휠체어는 기내 허용 사이즈를 초과하지 않는 한 기내용 수하물로 가져올 수 있음(그 외 휠체어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 · 접이식 기내 휠체어: 모든 KLM 및 KLM Cityhopper 항공기에서 사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여행하는 중에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 시 도와줄 '안전도우미(safety assistant)'가 필요. 스스로 동행하거나 공항의 KLM 직원에게 요청 시 구인을 도와줌(비행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 도우미' 없이는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 · 배터리로 작동하는 POC에 한해 기내 사용 허용(기내에서는 모든 좌석에서 전원 공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적어도 예정 비행 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배터리를 준비)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은 탑승 자제를 권장 · 출산 첫 주, 산모와 신생아의 비행기 탑승을 권장하지 않음 · 임신 중인 태아가 2명 이상일 경우, 담당의사와 상담 필요 · 합병증이 있는 경우 비행 전 반드시 담당의사의 허가가 있어야 함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비동반 소아용 서비스는 혼자 여행하는 5~14세의 어린이의 경우 필수이며 15~17세 미성년자도 선택 가능 · 보호자 비동반 소아용 서비스는 KLM 고객 연락 센터 또는 여행사를 통해 출발 최소 24시간 전에 예약 · 보호자 비동반 소아 서비스는 아이 연령과 상관없이 성인 항공 요금에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함
	영유아 동반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및 도착 항공편에 탑승하는 자녀가 2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무릎에 착석 · 유아 2명과 함께 탑승하는 성인 승객의 경우에는 유아 1명만 무릎에 안고 여행(0세 또는 1세 유아의 좌석을 예약하려면 당사 문의) · 모든 KLM 항공편에서는 어린이 한 명당 무료로 접이식 유모차 1대를 가지고 탑승 가능

4) 영국항공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로의/항공기로부터의 이동 보조 · 필요한 경우 계단 이용 시 지원 · 휠체어 및 이동 보조기구로 이동 · 항공편 예약 시 또는 항공편 예약 후 출발 최소 48시간 전 '나의 예약 관리'에서 지원 요청 가능 · MERU TravelChair는 신체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좌석. 3~11세 사이인 체중 35kg 이하의 어린이에게 적합
	시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로 여행할 것을 계획하는 경우 에스코트 서비스 요청 가능 · 필요에 따라 항공편 출발 전 객실 승무원이 개인안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로 여행할 것을 계획하는 경우 에스코트 서비스 요청 가능 · 출발 게이트 직원 승인 하에 우선 탑승 가능 · 자막을 넣은 안전 수칙이 기내 영상 화면에 표시. 필요에 따라 항공편 출발 전 객실 승무원이 개인안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 T 포지션으로 전환되는 보청기와 규격이 맞는 헤드폰을 제공
	발달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배정에 대하여 별도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에 문의 · 홀로 여행할 것을 계획하는 경우 에스코트 서비스 요청 가능 · 필요에 따라 항공편 출발 전 객실 승무원이 개인안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안내견 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항공편은 공인 도우미견을 객실에 태우고 무료 운송이 원칙이지만 객실에 태울 수 있는 동반견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음 · 이 서비스는 현재 온라인 예약이 불가하며 늦어도 여행 14일 전까지 당사에 문의하여 해당 서비스 예약 요망
	휠체어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탑승이 가능하니 일찍 출발게이트에 도착 요망 · 객실에 접이식 수동 휠체어 한 대를 보관할 수 있고 이 공간은 '선착순'으로 할당 · 기내 휠체어 이용 시 좌석에서 휠체어로 옮겨 탈 때 자력으로 몸을 들어 올릴 수 있어야 하며 여의치 않다면 이를 도울 수 있는 보호자 동행 필요 · 환승 예정 공항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항공편 출발 최소 48시간 전에 당사에 알림 요망

<p>임산부</p>	<p>본인과 아기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기간이 지난 경우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명의 아기를 임신했으며, 임신한 지 36주가 넘을 경우 · 2명 이상의 아이를 임신했으며, 임신한 지 32주가 지났을 경우 <p>→ 태아의 수와 출산 예정일, 합병증 여부를 확인을 위해 의사 확인서 소지</p>
<p>혼자 여행하는 어린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여행할 수 있는 승객의 최소 연령이 만 14세로 상향 조정됨 · 만 16세 미만의 승객은 반드시 여행 전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 필요 · 어린이 승객이 혼자 여행하는 경우 성인으로 예약되므로 공항 출발 및 도착, 항공편 탑승의 전 과정을 보호자 없이 혼자서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영국항공은 어린이 승객에 대해 보호 책임을 수행하지 않음 · 선예어는 항공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에 한해, 만 5~11세 어린이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 여행하는 것을 허용. 보호자 비동반 미성년자 서비스에는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하며, 사전에 예약 및 결제가 필요
<p>영유아 동반 승객</p>	<p>만 1~4세의 어린이를 동반하는 경우 AmSafe 어린이 항공 안전 시스템을 사용 가능</p>

5) 편에어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편 예약 시 또는 비행 최소 48시간 이전에 연락 시 관련 서비스 제공 가능 · 도움이 필요한 경우 출발 최소 2시간 전에 헬싱키 공항 장애인 픽업 지점(P3 및 P5 공항주차장, 2번 터미널 밖 출국장, 탑승수속 201-232)에서 요청 · 우선 탑승하기 원하는 경우 유럽 내 항공편 이용 시 출발 45분 전, 유럽 이외의 국가로 운항하는 항공편 이용 시 50분 전에 도착해야 함 · 창가 좌석에 배정 · A330-300 및 A350-900 항공기의 경우 화장실 사용을 위한 기내 휠체어 제공 · A350-900 항공기는 수동 접이식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제공 · 객실 승무원은 요청 시 휠체어를 접어서 운반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의약품 복용, 식사, 화장실 방문, 기립 또는 의사 전달 등은 도와주지 않음.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를 동반해야 함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항공기 출발 최소 48시간 전까지 연락하여 도움 요청
	휠체어 이용	휠체어와 이동 보조 기구는 항공기 출발 최소 48시간 전 예약하고 항공기 화물칸에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 항상 무료 운송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 최소 72시간 전에 항공사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 시 개인용 산소 농축기(POC), 수면 무호흡 장비(CPAP)와 같은 호흡 장비는 기내 반입이 허용 · 의료 기구는 휴대 수하물로 소지 가능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38주(37주+6일)까지는 핀란드 내 Finnair 국내선과 스칸디나비아행 노선을 이용 가능 · 임신 28주 이상인 승객의 경우, 임신이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의사의 진단서 (PDF 문서 열기)를 제출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여행하는 5-11세의 아동에게 보좌인 서비스를 제공 · 미국 출발 및 도착 여행의 경우 혼자 여행하는 만 15세 미만 아동은 반드시 성인 미동반 미성년자로 예약 · 혼자서 여행하는 12-17세의 청소년도 보좌인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 5세 미만 아동은 16세 이상의 가족과 동행하거나 아동의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18세 이상의 동반자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만 핀란드 내 Finnair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음(국제선의 경우 동반자 연령은 18세 이상) · 미동반 미성년자 서비스 요금은 편도 기준 1인당 40-120유로

영유아 동반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한 신생아는 출생 후 2일이 지나면 모든 Finnair 노선을 이용 가능· 모든 미성년자는 목적지 국가에 따라 여권 또는 기타 여행 서류를 지참· 휴대 수하물 크기 및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접이식 유모차는 휴대 수하물로 반입(초과 시 무료 위탁 수하물로 운송)· 2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유아용 안전좌석의 기내 반입의 경우 사전에 승인받아야 함
-----------	---

6) 터키항공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것이나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을 비행기에서 공항으로, 공항에서 비행기로 운송 가능. 비행 전 최소 48시간 이전에 예약 필요 · 다리가 부러졌거나 휠체어로만 이동 가능한 승객의 경우에도 보호자 동행 없이 여행이 가능 · 체크인, 여권 및 탑승 수속 시 우선권을 부여
	시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보고서 없이 혼자 여행 가능 · 시각장애와 함께 청각장애도 갖고 있는 경우 보호자 동행 필요
	청각장애	의료 보고서 없이 혼자 여행 가능
	안내견 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 최소 48시간 이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유효한 의료 서류, 신분증 및 예방 접종 증명서 필요) · 무료 운송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 튜브 이용 시 비행 최소 24시간 전 요청 · POC, CPAP는 FAA로부터 승인된 제품이어야 함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만 2세~12세 어린이는 비행 48시간 이전 요청 시 보호자 비동반 어린이 서비스 가능
영유아 동반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갓 태어난 아기와 48시간 된 아기는 탑승 불가 · 만 2세 영아의 경우 항공권 할인 제공 · 태어난 지 2~7일 된 영아의 경우 비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 필요 · 18세 이상 보호자 한 명당 한 명의 영아가 무릎에 앉혀 동반이 가능하며 이 경우 특별 벨트 필요

7) 아에로플로트러시아항공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사이트, 항공사 콜 센터 예약 시 특별 서비스 주문 가능하며 다음은 예약 시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성격 - 공항에서 동반 또는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 다른 사람이 동반하는지 여부 - 안내견이 동반하는지 여부 - 사용하는 개인용 이동보조 장치, 개수, 크기, 중량 및 기타 세부 정보(장착되어 있는 경우 배터리 제원 포함, - 산소 호흡기를 휴대하는 것이 필요한 지 여부 또는 승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다른 의료 장비 및 상기 장비의 제원 - 운항 도중 좌석에 지지하기 위해 어깨 벨트가 필요한지 여부 · 출발 2시간 전에 공항 도착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시 추가 좌석 지정 가능(유료) · 체크인 시 우선권을 가짐 · 기내 우선 탑승&나중 하차 · 목발, 휠체 이동 지지대의 기내 반입 후 좌석과 가까운 곳에 보관 · 기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좌석 설치 · 출발 예정 최소 36시간 전에 주문 시 무료로 어깨 벨트 주문 가능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내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은 시, 청각 장애인용 자막 시스템이 제공됨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은 점자체로 제공 · 식사 시 승무원이 모든 메뉴 및 음료에 대해 설명 준비를 도울 것 · 일반 승객 하차 완료 후 하차
안내견 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승객의 좌석 주변에만 위치해야 함
휠체어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운송 요청은 항공편 예약 시 그리고 출발 예정 최소 36시간 전 · 셀프 체크인 시 휠체어는 일반 체크인 데스크에서 위탁 수하물 처리(대형 수하물로 처리) · 일반 수동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체크인 시 Delivery at Aircraft를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내 탑승 직전 휠체어를 반납하고 하차할 때 바로 수령할 수 있음 · 운송 중 파손 발생 시 및 보상 지원 절차 진행 및 대체 휠체어 제공 · 전동 휠체어의 경우 체크인인 시 수하물로 체크인해야 하며 배터리는 분리해야 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경우 운항 도중 승객을 도울 동반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 및 청각 모두 장애가 있는 승객 - 12세 미만의 장애 아동 · 휴대용 산소 호흡기는 비행 최소 48시간 전에 요청 시 무료로 휴대 가능 · 월용 산소 호흡기 운송은 비행 최소 72시간 전에 요청 시 가능 · 환자의 침대 이송은 규정에 따라 의료인 동반이 필수이며 출발 72시간 이전에 요청해야 함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보건기구의 지침에 따라, 다음 승객은 비행 전 비행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문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주 이상 임산부(다태아의 경우 32주이상) - 생후 1주일 미만의 신생아 및 해당 신생아와 비행하는 승객 · 비상구 옆에 있는 좌석 제공 불가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서비스 예약 시 신청자의 신분증 및 어린이와의 관계를

	<p>증명하는 문서 제출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증명서, 입양 문서, 후견을 증명하는 증명서 · 아에로플로트의 사무소나 예약 대행사에서 서비스 요청 · 만 5세~12세 사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나 부모, 양부모, 보호자 또는 후견인 등의 요청으로 16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제공 가능
영유아 동반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기내 반입 수하물 이외에 추가로 유모차 또는 요람을 기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승객은 탑승권 발권 시 항공사 직원에게 요청 · 유모차 무료 운송 서비스는 아이의 좌석을 구매하신 경우에 이용 가능 · 모든 클래스의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구비 · 기내 아기 요람 사용을 위해 비행 최소 36시간 이전에 요청 · 성인승객 한 사람 당 만 2세 이하의 유아 한 명과 추가 좌석 구매없이 함께 탑승 가능 · 성인승객 한 명이 2명 이상의 유아 동반 시 1명 분의 소아항공권을 구매해야 하며, 소아 운임이 적용된 유아에게는 좌석이 제공됨 · 소아 운임은 러시아 연방 내 국내선 이용 시는 무료, 국제선 이용 시는 성인 요금의 10% 적용 · 아동은 수하물 및 기내 수하물 허용량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추가 비용 없이 규정된 허용량 초과 가능

8) 오로라항공(사할린스키항공)		
장애인	<p>거동이 불편한 승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고 휠체어(전동 휠체어, 접이식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은 보호자가 동행한 경우나 케어 요청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운항 가능 · 중증 장애인 또는 들것에 실린 승객은 보호자 동행 필수 · 들것에 실린 환자(스트레처 환자)의 운송은 적용 운임의 3배가 적용되며 보호자 동행이 필수(이코노미 클래스 객실에서만 실행) · 환자와 장애인을 위한 약품, 접이식 의자 (휠체어), 목발은 무료로 운송되고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p>시각장애 및 청각장애</p>	<p>보호자 또는 특수 훈련증이 있는 안내견이 동반하는 경우 또는 승객이 케어 요청서를 항공사에 서면 제출 후 승인받은 경우 실행</p>
	<p>안내견 동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무료 수하물 허용량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코노미 클래스 객실에서 무료로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된 출발 시간 최소 36 시간 이전에 안내건 운송에 대한 승인 필요 ·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고 동반한 승객의 발밑 좌석에 묶어 놓은 경우 케이지 없이 탑승 가능
	휠체어 이용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는 고객을 운송하는 경우에 전동휠체어는 체크인된 위탁 수하물로써 간주되어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기준을 초과하여) 운송
	임산부	임신 36주 이상(출산 예정이 4주 이내), 예상 합병증, 다태 출생 또는 기타 병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의사로부터 비행 가능하다는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5세~16세 어린이 대상 에스코트 서비스 제공이 원칙이지만 보호자 요청 시 만 16세 어린이에게도 서비스 제공 가능 (아에로플로트와 공동운항하는 항공이 러시아 연방 내를 운항하는 경우만 제공) · 에스코트 서비스는 항공권 예약 시 필요 서류 지참 시 요청 가능(출생 증명서, 입양 증명서 등) · 에스코트 서비스 운임은 성인 일반 요금의 100% · 화물 허용은 서비스 클래스와 운임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 항공사 직원이 공항 도착에서부터 비행기 하차 이후까지 동행 ·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단독 탑승이 불가하며 보호자 동행 필수
	영유아 동반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생후 7일 미만 아이를 항공여행에 동반하지 않기를 권장 · 미숙아의 비행은 비행이 아이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료확인서 제출 요망 · 러시아 연방 영역 내 노선인 경우 2세미만의 유아 1명 무료 운송 · 만 2세 미만의 영아와 2~12세 유아와 동반하는 승객이 영유아의 좌석을 따로 요청하는 경우 일반 운임의 50% 할인 또는 특별 운임의 적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 특별 운임의 50% 할인 · 기내에 설치가능할 때에 한하여 1세미만의 유아(10kg미만인 유아)에게 요람 제공. 요람 신청은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시 출발 36시간 이전에 해야 함

다. 일본 국적 항공사

- ❖ 다음은 우리나라를 취항하는 일본 국적의 항공사 중 일본항공, 전일본공수, 피치항공에서 교통약자 승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정리하였음.

1) 일본항공		
장애 인	거동이 불편한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권 예약 시 서비스를 요청하면 보호자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다음은 항공사에 알려줘야 하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가 수동식인지 전동식인지, 전동식의 경우 배터리 정보(건식·액체)까지 - 승객의 상태 -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 자력으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으나 좌석에 도달할 수 있는 승객/ 자력으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고 좌석에 도달할 수 있는 승객 - 선호하는 좌석(팔걸이 이동, 화장실 근처 좌석 등) - 상체고정용 보조벨트가 필요한 지 · 지팡이와 목발은 기내 반입하여 발 밑 또는 선반에 보관
	시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센터나 여행 대리점을 통하여 요청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 · 현재 웹사이트에서 시각 장애인 고객을 위한 음성기술 프로그램 지원 불가 · 안전상의 이유로 비상구 옆 등의 일부 좌석은 지정 불가 · 공항의 스태프가 기내까지 안내하고 객실승무원에게 필요정보를 전달 · 객실승무원이 좌석 주변 시설이나 화장실 설비, 비상용 장비(산소 마스크, 구명 조끼, 비상구)에 관하여 안내 및 점자 안내 가능 · 도착 공항에서 세관, 입국 심사, 수하물 수취 지원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센터나 여행 대리점을 통하여 요청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 · 공항 스태프에게 서비스 요청 시 탑승 예정 편 지연 및 탑승구 관련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가 안내 · 원하는 경우 탑승 게이트까지 안내 · 기내 안전안내가 비디오로 이루어지는 경우 청각 장애인 승객을 위하여 자막이 기본적으로 제공
	안내견 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로 기내 탑승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훈련을 받은 인증서를 제시 필요 - 비행 중에는 주인의 지근거리(1피트)에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견임을 알릴 수 있는 조끼, 망토 등을 입어야 함 - 승객이 입마개를 소지해야 하며 필요 시 사용해야 함 - 물 이외의 다른 음식물은 먹이지 말아야 함
	휠체어 이용	위탁 수하물로 운송
	임산부	출산 예정일이 28 일 이내인 임산부는 탑승 불가
	영유아 동반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후 7 일 이내 신생아는 탑승 불가 · 유아용 장차 시트는 국제선의 경우 출발 96시간 이전에 예약 요망

2) 전일본공수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시 탑승, 객실 내 이동을 지원 · 일부 통로 좌석에는 움직이지 않는 팔걸이가 있지만 모든 통로 좌석에 움직일 수 있는 팔걸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동식 암 레스트가 있는 좌석을 선호하는지 항공사에 알리길 권장 · 사전 탑승 가능 ·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본 국내선의 경우 출발 60분 전, 국제선의 경우 출발 120분 전에 체크인 카운터로 도착 권장 · 요청 시 기내 휠체어 사용 가능 · 일부 항공기에는 기내 휠체어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승무원에게 도움 요청 · 지팡이나 목발의 경우 여유 공간이 있을 시 기내에 보관 가능 · 하차 시 도움을 요청한 경우 승무원이 공항 휠체어로 이동하여 도착 로비에서 보호자를 만날 때까지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 · 탑승구에서 휠체어를 체크인한 경우 항공기에서 내릴 때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음
	시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항공사에 알리길 권장 · 안전을 위해 응급 출구 행 좌석은 도움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일본 국내선의 경우 출발 60분 전, 국제선의 경우 출발 120분 전에 공항에 도착하기를 권장 · 점자로 된 안전 지침 카드는 모든 항공기에서 사용 가능 · 객실 승무원은 좌석 근처의 시설, 비상 탈출구 및 화장실 내부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 점자 및 대형 글꼴의 음료 메뉴는 일본 국내선의 프리미엄 클래스 및 국제선의 모든 클래스에서 제공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내 영화 및 국제선 항공편의 일부 프로그램은 오디오 가이드와 함께 제공 ·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항공사에 알리길 권장 ·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일본 국내선의 경우 출발 60분 전, 국제선의 경우 출발 120분 전에 공항에 도착하기를 권장 · 청각 및 언어 장애가있는 고객의 경우 TV 전화, 이메일, 팩스 및 채팅을 통해 중계 서비스를 제공 · 이러한 의료 기기에는 원격 제어 또는 송신기 기능이 제공되는데 단 전파를 방출하는 장치의 경우 비행 중 안전을 위해 꺼야 함 · 항공기 내에서 원활한 통신을 위해 기내 승무원은 태블릿 장치를 사용 · 일부 항공편에서는 수험반의 4단계 또는 상위 레벨 자격을 갖춘 기내 직원이 수화 बै지를 착용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승객은 언제든지 서비스 요청 가능 · 기내 영화 및 국제선 항공편의 일부 프로그램은 자막과 함께 제공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항공사에 알리길 권장 ·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일본 국내선의 경우 출발 60분 전, 국제선의 경우 출발 120분 전에 공항에 도착하기를 권장 · 개인 간병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고객은 보호자 동행이 필수 · 안전을 위해 응급 출구 행 좌석 배정 불가
안내견 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 시 안내견 동반을 항공사에 알려주어야 하며 안내견은 무료로 탑승 · 체크인 카운터의 직원에게 안내견 동행을 알리면 직원이 안내견의 하네스 (흰색 또는 노란색 안내견 하네스)를 확인하거나 안내견 관련 문서를 요청할 것 ·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일본 국내선의 경우 출발 60분 전, 국제선의 경우 출발 120분 전에 공항에 도착하기를 권장 · 일본 국내선의 체크인 카운터에서 필기구 및 통신 보드 사용 가능
휠체어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휠체어의 경우 공항 카운터에서 위탁 수하물로 체크인 · 수동식 접이식 휠체어를 이용하는 고객은 예약 완료 후 온라인으로 신청 · 비 접이식 (수동 / 전기) 휠체어 체크인의 경우 화물칸 내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미리 휠체어의 종류와 크기 정보를 신고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 휠체어 배터리를 이용할 승객은 미리 배터리 정보를 항공사에 알려주어야 하고 필요 시 배터리 설명서를 지참해야 함 · 일부 공항에서는 대형 휠체어와 안락 의자가 있는 휠체어를 제공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일 이내에 출산 예정인 여성은 의료 정보 양식(MEDIF)을 제출(임신 합병증이 없고 승객의 비행을 방해하는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며 출발 7 일 전까지 의사가 발급한 것이어야 함) · 혼자 여행하는 임산부의 경우 출발 72시간 전까지 예약 시 체크인과 공항에서의 에스코트 서비스 제공 · 요청 시 임산부 명찰 제공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5-11세 어린이 대상 · ANA 항공사 서비스 예약 센터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동의서와 각종 서류 제출 필요 · ANA 주니어 파일럿 배지 착용 후 기내 승무원이 안내하는 대로 이동
	영유아 동반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72 시간 전까지 예약 시 3세 미만 어린이가 1명 이상과 함께 여행하는 성인 승객을 위한 라운지 서비스 제공 · 체크인 시 요청하면 유아용 유모차 제공(수량이 제한적이며 사전 예약은 불가) · 접이식 유모차를 기내 보관의 경우 해당 항공기의 기내 반입 수하물 사이즈 규정 적용 · 승객 당 1개의 기내 반입 수하물만 허용되므로 기내에 유모차를 가져 오는 승객은 개인용품 이외에 다른 기내 휴대품 반입 불가 · 아기 요람은 모든 국제 항공기에 제공되며 전화로 신청 가능 · 아기 분유 및 종이 기저귀는 기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나 수량이 제한적이므로 가능한 한 직접 가져오기를 권장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5-11세 어린이 대상 · ANA 항공사 서비스 예약 센터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동의서와 각종 서류 제출 필요 · ANA 주니어 파일럿 배지 착용 후 기내 승무원이 안내하는 대로 이동

3) 피치항공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예정일로부터 5 영업일 전까지, 콜센터로 연락하여 예약. 이 기간 경과후 신청 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음 · 탑승 수속이나 보안 검사 시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내선은 출발 시각의 60분전(간사이 공항, 나하 공항은 55분전), 국제선은 80분전까지 체크인 카운터 도착 권장 · 보행보조기(지팡이, 목발, 보행기 등)는 기내에서 안전하게 수납 가능한 경우 반입 가능 ·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당사가 지정한 좌석만 이용(비상구 좌석 불가) ·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는 상체 고정용 보조 벨트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예정일로부터 5 영업일 전까지, 콜센터로 연락하여 예약. 이 기간 경과후 신청 시 서비스 제공 불가할 수 있음
	안내견 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내 무료 동반 가능 · 국제선 이용 시 나라/지역에 따라서는 검역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입국 조건 등을 방문국 영사관이나 일본의 가까운 동물검역소에 직접 문의 ·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당사가 지정한 좌석만 이용(비상구 좌석 불가) · 탑승 시 담당자가 사용자증 또는 맹도견이 장착하는 하네스(맹도견 몸에 두르는 백색 또는 황색의 띠), 신체장애인 보조견 인증 증(証) 또는 맹도견 조끼 등에 부착되어 있는 '간호견', '청도견' 등의 표시 확인
	휠체어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예정일로부터 5 영업일 전까지, 콜센터로 연락하여 예약. · 다음은 휠체어 확인 양식에 필요한 정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자 유무 - 보행 정도 - 휠체어 사용 여부 · 탑승 수속 시 휠체어 정보 다시 한번 확인 예정 · 배터리를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없는 타입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은 당일 배터리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취급 설명서 소지 필요 · 공항 터미널의 주·정차장에서 항공사 휠체어를 이용 불가 · 본인 소유 휠체어는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접수하고 탑승구까지는 공항 휠체어를 대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예정일로부터 5 영업일 전까지, 「산소실린더 사양 확인 양식」이나 「휴대용 산소 농축기(POC) 사양 확인 폼」을 FAX로 보내면 당사 확인 후 콜센터에서 회신 · 탑승 수속 시 산소 실린더 정보 다시 한번 확인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승 수속이나 보안 검색 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국내선은 출발 시각의 60분전(간사이 공항, 나하 공항은 55분전), 국제선은 80분전까지 도착 권장 · 안전상의 이유로 비상구 좌석 및 1 열째 좌석은 이용 불가 · 기내에서 인공투석(CAPD) 불가 · 인슐린, 에피펜 등의 자기주사기(바늘) 사용 시 보안 검사 시 관련 사실을 고지 요망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예정일로부터 28일 이내인 임산부의 경우 탑승이 적절한지의 여부 확인을 위해 탑승일 7일 이내에 발행된 진단서(일본어 또는 영어) 및 필요한 준비 내용을 출발 예정일 5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팩스로 보내면 확인 후 콜센터 회신 · 출산예정일로부터 28일 이내인 임산부가 동반할 수 있는 유아는 1명이며 더 많은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만 2세 미만일지라도 항공권을 구입하고 직접 차일드시트를 준비해야 함
	영유아 동반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후 8일 미만 영아는 탑승 불가 · 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무료 탑승이 원칙이며 예약 시 유아의 탑승 정보 입력 · 성인 1명당 유아(8일~만 2세 미만)는 2명까지 동반가능하며 무릎 위에 앉힐 수 있는 유아는 1명 · 비행기 1편당 탑승 가능한 유아 및 어린이의 수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좌석 확보 및 항공권 발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예약 시 알림 · 유모차, 차일드 시트, 아기침대(유아용 요람)는 무료로 수하물 위탁 가능하며 대여는 하고 있지 않음

라. 중국 국적 항공사

- ❖ 다음은 우리나라를 취항하는 중국 국적의 항공사 중 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심천항공에서 교통약자 승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정리하였음.

1) 중국국제항공	
장애 인	<p>거동이 불편한 승객 및 고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 휠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선의 경우 늦어도 항공편 출발 24시간 전에는 신청 시 이용 가능 - 국제선 및 지역 노선의 경우 늦어도 항공편 출발 48시간 전에는 신청 시 이용 가능 · 기내 휠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두, 항저우, 톈진, 충칭, 상하이, 우한, 광저우, 다롄, 후허하오터와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완전히 이동이 불가능한 승객 분들을 위해 기내의 복도에서 기내 휠체어 서비스(WCHC)를 제공 - 아프리카, 중앙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노선(하바나 포함): 항공편 출발 늦어도 72시간 전에 요청(장애인 확인증 제시) - 기타 노선: 항공편 출발 늦어도 48시간 전에 요청(장애인 확인증 제시) · 탑승 리프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예약은 항공편 출발 48시간 전에 에어차이나 및 발권 사무소에서 가능 - 상파울루 노선의 경우 늦어도 항공편 출발 72시간(포함) 전에는 신청 - 상파울루 이외의 노선의 경우 늦어도 항공편 출발 48시간(포함) 전에는 신청
	<p>시각장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을 위해, 16세 미만의 앞을 볼 수 없는 승객은 반드시 성인 보호자가 동행해야 함 · 항공편 출발 전 발권 사무소에서 서비스 요청 가능 · 항공편 출발 전 늦어도 120분 전에 탑승 수속을 위해 공항 탑승 수속 카운터에 도착 권장 · 객실 승무원은 안전 관련 지침 및 기내 소지품 위치를 안내하고, 기내 이동을 지원함
	<p>정신장애 및 지적장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을 위해 정신 및 지적 장애 승객은 다른 승객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음 · 항공권 구입 시 항공권 발권 사무소에 정신 및 지적 장애 승객에 대해 알려주길 권장

	<p>안내견 동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여행하는 16세 이상의 장애 승객은 무료로 안내견 동반 가능 · 안내견 동반 요청은 항공편 출발 늦어도 48시간 전에 항공권 발권 사무소에서 가능(항공권 구입 시와 탑승 수속 시 동물의 ID와 검역 증명서 제출 필요) · 출발 시간 늦어도 120분 전에 도착하여 탑승 수속 권장 · 안내견은 반드시 안내 조끼와 가죽 끈을 매야 함 · 안내견 컨테이너와 먹이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음
	<p>휠체어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 휠체어는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위탁해야 함 · 탑승 수속이 완료되기 전 늦어도 2시간 전 공항의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위탁 수속을 처리 권장 · 전동 휠체어가 1개의 리튬 배터리를 필요로 한다면 파워는 300W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2개의 리튬 배터리인 경우에 파워는 160Wh를 넘지 않아야 함(지정된 한도를 초과한 리튬 배터리는 운송이 허용되지 않음)
	<p>기타</p>	<p>각 항공기 장애 승객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737-700/800/8, A319/320, A321: 시각장애인, 안내견, 정신 및 지적 장애인, 기내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은 총 4명이 넘지 않아야 함 · B747, B777-200, B777-300ER, B787, A330/350: 시각장애인, 안내견, 정신 및 지적 장애인, 기내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은 총 6명이 넘지 않아야 함
	<p>임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32주 미만 임산부는 담당의가 비행기 탑승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승객과 마찬가지로 탑승 가능 · 임신 32주~35주 미만인 임부, 4주 이내에 출산 예정인 임부 및 다태 분만이 아니고 출산 합병증이 없는 임부의 경우 의사가 비행기 탑승 7일 이내에 발급한 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임신 35주 이상인 임부, 출산 예정일이 4주 이내인 임산부, 다태임신, 출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임부 및 출발 7일 이내에 출산한 산부는 탑승 불가
	<p>혼자 여행하는 어린이</p>	<p><보호자 비동반 어린이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5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가 혼자 여행할 경우, 보호자 비동반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 신청 가능 · 5세 미만이거나 청각, 시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 비동반 어린이 서비스 신청 가능 · 만 12세에서 18세 미만인 어린이 및 만 16세에서 18세 미만인 청각, 시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보호자 비동

	<p>반 어린이 서비스 신청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전 지정된 기한 내에 발권 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요청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선: 항공편 출발 하루 전 오후 3시(포함) 이전에 신청 - 국제선: 항공편 출발 최소 48시간 이전에 신청 · 안전상의 이유로 각 항공기 별 최대 5명의 미동반 어린이 승객만 수용 가능 · 미동반 어린이 서비스 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선: 일반 성인 요금의 50%(만 5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 신청 시 수수료가 없고 만 12세에서 18세 미만인 어린이 신청 시 직항 편도에 200위안의 수수료 청구) - 국제선: 서비스 예약센터 또는 에어차이나 직관 사무소에 문의(직항 편도에 260위안의 수수료 청구)
영유아 동반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후 14일에서 2세 사이의 유아는 항공편을 탑승하려면 만 18세 이상의 성인 승객 동반이 의무 · 안전상의 이유로 생후 14일 미만의 유아 또는 생후 90일 미만의 미숙아에게는 탑승 불가 · 성인 승객은 최대 2명의 유아를 동반할 수 있으며, 유아 중 1명은 유아 요금(일반 성인 요금의 10%가 부과)으로 무릎에 앉혀, 다른 1명은 어린이 요금 항공권으로 좌석에 탑승하여 여행할 수 있음 · 유아용 안전 벨트를 제공 · 사전에 요람 서비스 예약 가능(신청기간 내에 에어차이나의 직속 티켓 판매 부문에서 신청) · B747/B777/B787/A330/A350 기종을 사용한 국제선 항공편의 비즈니스석, 프리미엄 이코노미석과 이코노미석은 유아용 요람 서비스를 제공

2) 중국동방항공		
장애인	<p>거동이 불편한 승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동방항공 고객센터 예약 시 휠체어 대여 및 수속부터 탑승까지 도움 · 기내에서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경우, 탑승 48시간 전까지 문의 및 신청
	<p>시각장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승 48시간 전까지 한국 고객센터(1661-2600) 신청 시 맨투맨 서비스 이용 가능(인천출발노선에 한함) · 시각 장애 승객은 지팡이 또는 기타 보조/지원 기구를 기내 반입 가능(기내 반입 수하물 적용 받지 않으며 무료 운송)
	<p>지적장애</p>	<p>탑승 48시간 전까지 한국 고객센터(1661-2600) 신청 시 맨투맨 서비스 이용 가능(인천출발노선에 한함)</p>

	<p>휠체어 이용</p>	<p>전동 휠체어 운송이 필요한 경우, 탑승 48시간 전까지 문의 및 신청</p>										
	<p>보호자</p>	<p>다음과 같은 승객은 보호자와의 동행이 요구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것 또는 인큐베이터로 여행하거나 비행 중 치료가 필요한 승객 - 정신적 장애로 안전지침 이해에 어려움이 있거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승객 - 항공기에서 스스로 대피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편한 승객 - 청각 및 시각 등의 신체적 장애로 인한, 항공사 직원과의 사소통이 불가능한 승객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을 위해 장애가 있는 승객은 보호자 동행이 요구될 수 있음 · 항공편 기종에 따라 장애 승객의 탑승 인원 제한될 수 있음 (당사 고객센터 사전 문의) 										
	<p>임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 출발 전 산부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며, 항공기 탑승시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 소견서 및 서약서 등의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임신 36주 이내의 승객에 한에서만 탑승을 허가 <table border="1" data-bbox="602 1127 1321 1471"> <thead> <tr> <th>구분</th> <th>필요 사항</th> </tr> </thead> <tbody> <tr> <td>3개월 미만</td> <td>전문가들은 임신 초 3개월까지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td> </tr> <tr> <td>32주 미만</td> <td>탑승 서약서(수속시 작성), 의사 진단서 또는 산모 수첩</td> </tr> <tr> <td>32주 이상 36주 미만</td> <td>탑승 서약서(수속시 작성), 각 출발 항공편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 진단서 2부</td> </tr> <tr> <td>36주 이상</td> <td>탑승 불가</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예정일 4주 이내, 조산 증상이 있는 임부, 예정일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임부 및 출산 후 7일 이내의 산부는 비행기 탑승 불가 	구분	필요 사항	3개월 미만	전문가들은 임신 초 3개월까지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	32주 미만	탑승 서약서(수속시 작성), 의사 진단서 또는 산모 수첩	32주 이상 36주 미만	탑승 서약서(수속시 작성), 각 출발 항공편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 진단서 2부	36주 이상	탑승 불가
구분	필요 사항											
3개월 미만	전문가들은 임신 초 3개월까지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											
32주 미만	탑승 서약서(수속시 작성), 의사 진단서 또는 산모 수첩											
32주 이상 36주 미만	탑승 서약서(수속시 작성), 각 출발 항공편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 진단서 2부											
36주 이상	탑승 불가											
	<p>혼자 여행하는 어린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5세 이상 ~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기내 및 공항에서 안전하게 보살펴주는 UM(Unaccompanied Minor) 서비스 제공 · UM서비스를 이용 보호자 비동반 어린이의 항공권 운임은 성인 보호자가 동행하는 어린이의 운임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방항공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 										
	<p>영유아 동반 승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용 아기 바구니 서비스 및 유아용 특별 기내식을 항공편 출발 48시간 전까지 사전 신청 가능 · 기내화장실에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접이식 특수 테이블이 2개 이상 마련 										

· 생후 14일 미만의 유아 탑승 금지

3) 중국남방항공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서비스는 최소 48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 휠체어 수하물 위탁 - 기내 전용 소형 휠체어 - 서비스건 동행 객실 진입(미국 노선 제외) · 다음의 서비스는 최소 24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건을 데리고 비행 시간 8시간 이상(미국 노선)의 노선 객실에 진입 · 탑승 및 하차 시 도움을 요청하는 승객은 일반 승객 탑승 수속 마감 2시간 전에 도착하여 탑승 수속을 해야 함 · 목발, 접이식 휠체어, 의족을 기내 반입 수하물로 휴대 가능하다기능, 간이 시각 보조 장치, 시각 장애인 안경 기내 반입 가능
	시각장애	전자 보청기, 보청기 기내 반입 가능
	청각장애	전자 보청기, 보청기 기내 반입 가능
	안내견 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 국가의 동물 입국, 또는 경유 증명 및 필요한 검역 증명을 제출(수속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명 자료 부족, 또는 관련 국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맹도견이 입국 거부될 경우, 남방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음) · 탑승 전에 입마개 및 줄을 착용하고 승객의 다리 옆에 엎드리고 있어야 함(운송 도중 안내견의 부상, 질병 발생, 사망 시 승객이 책임짐)
	휠체어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 휠체어는 일반 승객이 탑승 수속 마감 2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며, 위험품 운송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함 · 접이식이 아닌 수동, 또는 전동 휠체어는 위탁 수하물로 취급 · 객실 내에 보관 설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선착순으로 보관 · 객실 내 공간이 없을 경우, 장애인 보조 설비를 1개까지 무료로 위탁 · 각 공항에 휠체어가 마련되어 있으며 필요 시 티켓 구매 시 예약 · 좌석 예약 시 휠체어(수동 및 전동), 또는 행동 보조 도구(지팡이, 목발, 보행기, 스쿠터)를 휴대 여부 고지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32주 이하의 임산부 탑승 시 의사의 부적당하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승객으로 간주해 운송 · 임신 32주를 초과한 임산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탑승을 거부하나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 32주 초과 36주 미만의 임산부가 탑승하게 될 경우, 좌석 예약 전에 의사 진단 증명서를 제출 시 항공사가 확인 후 탑승 가능 · 임신 9개월(36주)이 초과되고 예상 출산 시기가 4주 이내일 	

	<p>경우, 혹은 예상 출산일이 불확실하거나 다태분만이 확실한 경우, 합병증이 있는 경우 탑승 불가</p>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p><보호자 비동반 어린이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5세에서 만 12세 사이의 연령 대상 · 중국 국경 내 신청은, 남방항공 직속 티켓 판매 부문(고객 서비스 센터) 접수에 한정하며, 해외에서 신청할 경우 당사의 해외 사무소에서만 처리 · 운임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노선: 성인 보통 티켓 요금의 50% 적용. - 국제 및 지역 노선: 적용되는 성인 보호자 비동반 아동 운송 요금에 따라 수령
혼자 여행하는 청소년	<p><보호자 비동반 청소년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연령 대상 · 중국 국경 내 신청은, 남방항공 직속 티켓 판매 부문(고객 서비스 센터) 접수에 한정하며, 해외에서 신청할 경우, 당사의 해외 사무소에서만 처리 · 운임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노선: 성인 보통 티켓 요금으로 계산. - 국제 및 지역 노선: 티켓 요금 및 서비스 비용을 구분해 수령. 요금 티켓: 성인 티켓 요금 기준. 서비스 요금: 각 노선 (티켓 요금 표시 기준) 서비스 비용 350 RMB, 혹은 동일한 가치의 화폐로 수령.
영유아 동반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14일 이후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탑승할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의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진 성인 승객이 동행 · 출생 후 14일이 되지 않은 영아는 탑승 불가 · 성인 한 명 당 한 명의 영아에 대하여 성인 일반 티켓 요금의 10%의 운임비로 무릎에 앉혀 탑승 가능 · 일부 노선에서 무료 영아 요람 제공하며 출발 시간 24시간 전에 웹사이트나 고객센터센터에 전화하여 예약
노약자	<p>좌석 예약 시 남방항공 직속 티켓 판매소, 혹은 고객센터 센터(4006695539)를 통해 노약자 대상 서비스 신청 가능</p>

4) 심천항공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권 구입 시 휠체어 서비스 예약 가능 · 승객 본인의 휠체어 체크인 시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음 				
		분류	신청 기간		신청 한도	
		비행기 외 휠체어	항공편 출발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		한도 없음	
		탑승 휠체어	항공편 출발 최소 36시간 전에 신청		한도 없음	
	항공기 휠체어	항공편 출발 최소 36시간 전에 신청		항공편에 따라 제한 있음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가 필요한 승객은 항공사 핫라인 또는 항공사 대표소에서 신청 가능 · 안전 상 16세 미만의 시각 장애인 및 농아자는 18세 이상인 승객을 보호자로 동반할 것을 권장 				
	지적장애	반드시 18세 이상의 보호자 동반 필요				
	안내견 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객 연령 16세 이상의 장애인의 경우 무료로 안내견 동반 가능 · 안내견 동반 예정 시 탑승 48시간 전까지 항공사 핫라인 또는 항공권 대표소에서 신청 가능 · 입마개와 가죽끈 지참 요망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주 이내인 임부의 경우 의사가 승객의 비행기 여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기 탑승 가능 · 32주~35주 임부는 탑승 7일 이내 발급한 의사 소견서 제출 필요 · 35주 이상 또는 산후 7일 이내 임산부는 탑승 불가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센터 또는 항공사 발권 사무소에서 보호자 비동반 어린이 서비스 예약 가능 · 항공편 출발 전날 15:00까지 성인 동반 동반자 서비스를 신청 · 출발 당일에 원본 신분증과 여객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항에서 2시간 전까지 체크인 권장 				
		대상	서비스 수수료	운임비	제한 인원수	비고
		만 5세 ~12세 미만	무료	어린이	제한됨	보호자 비동반 어린이 서비스 대상 어린이에
		만 12세 ~18세 미만	200위안	성인	제한 없음	

					시각, 청각장애인 은 포함되지 않음
노약자	65 세 이상인 노인의 경우 항공편 출발 전날 15:00까지 노약자 서비스 신청 가능				

마. 중동 지역 국적 항공사

- ❖ 다음은 우리나라를 취항하는 중동 국적의 항공사 중 에미레이트항공, 에티아드 항공, 카타르 항공에서 교통약자 승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정리하였음.

1) 에미레이트항공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기와 무게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 시 담당자 문의 요망 · 휠체어 보관 장소는 우선 탑승 지원 요청 시 선착순으로 제공 · 비접이식 휠체어,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는 위탁 수하물로 허용(기내 운송 시 최대 2개까지 허용) · 배터리 사용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 이동 장비 이용 시 최소 4시간 전에 장비 관련 안내 요망(체크인 시간 최소 1시간 이전에 도착 요망) · 휠체어 또는 보조장비를 분해/재조립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설명서 지참 요망 · 요청 시 사전 탑승 가능 · 항공기 맞춤 설계된 기내 휠체어 보유 · 이동식 팔걸이가 있는 통로 좌석 제공
	시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승구, 연결편 항공 및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요청 시 휠체어 이용 가능) · 각각 안내 브리핑 제공 · 안전 규정에 따라 비상구 측에 있는 좌석에는 배정 안됨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및 캐나다에 있는 경우 TTY 번호로 서비스 가능 · 탑승 및 항공편 지연 또는 변경 사항에 대해 구두 안내 · 각각 안내 브리핑 제공 · 기내 헤드폰을 'T'위치로 돌리면 보청기로 사용 가능 · 매달 자막이 포함된 신작영화 30편 제공
	안내견 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동물은 화물 반입이 원칙이지만 EU 회원국에서 두바이로 도착 또는 두바이에서 미국/캐나다로 이착륙하는 직항 항공편의 맹인 도우미견은 예외적으로 기내 탑승 가능 · 안내견을 동반할 승객은 48시간 전 항공사에 고지 · 안전 규정에 따라 비상구 측 좌석은 배정되지 않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 최소 48시간 전에 양식 작성하여 제출 시 기내 치료용 산소 제공 · POC, CPAP/PAP: 비행 최소 48시간 전에 처방전 전달 시 기내 반입이 허용되며 반입 수하물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보호자 비동반 어린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승객에 대해 성인 요금을 지불할 때 보호자 비동반 어린이 서비스 제공(5세~15세 사이 어린이 대상) · 전문 요원이 전용 체크인 데스크에서부터 기내 승무원에게 인도할 때까지 동행 · 우선 탑승 서비스 · 미동반 어린이 라운지 이용 · 예약 시 선호 음식, 선호 좌석 제공. 생일 케이크로 축하 및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영유아 동반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체크인 데스크 이용 및 우선탑승 · 온라인 체크인 시 전용 수하물 카운터에서 수하물 위탁 가능(6~24시간 사이) · 객실 내 여유 공간이 있으면 영유아를 위한 추가 위탁 수하물 휴대 가능(가방 1개, 접이식 유모차, 이동식 아기 침대 또는 아기용 시트 1개) · 공항에서 무료로 비치된 유모차 사용 가능 · 객실 내 아기 침대 요청 가능 · 24개월 미만의 영아는 무료로 탑승하여 무릎에 앉혀 여행 가능

2) 에티하드항공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서비스는 항공기 탑승 72시간 전에 요청 · 지팡이, 목발 및 접이식 보행기 등의 이동 보조기구의 기내 반입 허용. 요청 시 객실 승무원이 고객의 보조 기구 보관과 수취를 도움 · 항공기 대부분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보유 · 탑승 항공기 문까지만 휠체어가 필요한 환자는 MEDIF 작성 불필요
	시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 시 장애 사실을 신고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일시적 시각 장애인 및 시각 장애를 가진 여행객 그룹의 일원으로 여행 시 MEDIF에서 출발 48시간 전까지 의료 확인서 제출 · 공항에 도착하여 당사 직원에게 연락 시 게이트 통과 및 비행기 탑승 도움 · 기내 승무원이 식사 메뉴를 읽어주고, 개별 음식의 이름과 위치를 확인해 주며, 요청 시 포장의 개봉 도움 예정
	청각장애	<p>탑승 전에 의료 확인서 제출은 불필요하나 승무원들이 장애를 사전에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약 시 장애 사실 알림 권장. 비행 중 안내 방송이 있을 때 객실 승무원이 개별적으로 안내</p>

	<p>보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도우미는 비상 대피 시 도움을 주거나 안전 안내 시 승무원과 의사소통하는 사람으로 다음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용 침대 - 정신적 장애 - 심각한 이동성 장애 - 심각한 청각 및 시각 장애 · 개인 돌보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승객은 개인 돌보미 동반이 적극 권장됨
	<p>휠체어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조건 해당 시 무료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휠체어 무료 운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높이와 무게가 각각 120cm(47인치)와 60kg을 초과하지 않음 - 휠체어가 상기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연락센터에 승인 요청 - 배터리 탈착 휠체어는 배터리 분리 후 손상 방지용 파우치에 넣어 객실 내에 소지(배터리의 용량은 300WH를 초과할 수 없으며, 리튬 배터리 2개를 사용하는 장치의 경우, 각각의 배터리의 용량이 160WH 미만) - 습식 배터리를 사용하는 장치의 경우 배터리 제거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C는 탑승 최소 72시간 이전에 사전 의료 승인을 위해 MEDIF를 제출 · 산소(간이 안면마스크 또는 비강 캐놀라 - 분당 1L, 2L, 3L 또는 4L 공급)를 제공(단, 분당 4L의 산소 공급은 특정 장거리 노선에만 제공) · 의료용 침대가 필요한 승객은 최소 72시간 이전에 MEDIF를 제출
	<p>임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28주 미만 시 임신부 진단서 제출 불필요 · 태아가 한 명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29주~36주인 임신부는 임신부 진단서 제출 필요 - 임신 37주 이상인 임신부는 항공 여행 불가 · 태아가 두 명 이상인 경우(다태임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29주~32주인 임신부는 임신부 진단서 제출 필요 - 임신 33주 이상인 임신부는 항공 여행 불가 · 임신부 진단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주치의 또는 담당 조산사가 작성 및 서명 - 병원/ 의원의 레터헤드지(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가 있는 편지지)에 작성 혹은 주치의나 담당 조산사의 도장 날인 - 의료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주 동안 유효 - 승객의 상태가 항공 여행에 적합한지 명시 - 승객의 단태 및 다태 임신 여부를 명시 - 임신 주차 및 분만 예정일을 명시 -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랍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의료 진단서 원본은 전체 여정(출국, 귀국 및 스탑오버 항공편)에 유효함 								
<p>혼자 여행하는 어린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혼자 여행 가능한 연령</th> <th style="width: 70%;">여행 요건</th> </tr> </thead> <tbody> <tr> <td>5세 미만</td> <td>혼자 여행 불가</td> </tr> <tr> <td>5세 이상 12세 미만</td> <td>비 동반 소아 서비스(해당 연령 그룹은 무료) 예약 시 혼자 여행 가능 원칙적으로 혼자 여행이 가능하며 선택 시 보호자 비동반 소아 서비스 이용 가능</td> </tr> <tr> <td>12세 이상 18세 미만</td> <td>· 수수료 - 걸프협력회의국 GCC(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아랍에미리트)행/발 여정 - 미화 60달러 - 아랍에미리트 및 기타 국가 왕복 여정 - 미화 100달러</td> </tr> </tbody> </table>	혼자 여행 가능한 연령	여행 요건	5세 미만	혼자 여행 불가	5세 이상 12세 미만	비 동반 소아 서비스(해당 연령 그룹은 무료) 예약 시 혼자 여행 가능 원칙적으로 혼자 여행이 가능하며 선택 시 보호자 비동반 소아 서비스 이용 가능	12세 이상 18세 미만	· 수수료 - 걸프협력회의국 GCC(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아랍에미리트)행/발 여정 - 미화 60달러 - 아랍에미리트 및 기타 국가 왕복 여정 - 미화 100달러
	혼자 여행 가능한 연령	여행 요건							
	5세 미만	혼자 여행 불가							
	5세 이상 12세 미만	비 동반 소아 서비스(해당 연령 그룹은 무료) 예약 시 혼자 여행 가능 원칙적으로 혼자 여행이 가능하며 선택 시 보호자 비동반 소아 서비스 이용 가능							
12세 이상 18세 미만	· 수수료 - 걸프협력회의국 GCC(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아랍에미리트)행/발 여정 - 미화 60달러 - 아랍에미리트 및 기타 국가 왕복 여정 - 미화 100달러								
<p>영유아 동반 승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일 기준 만 2세 미만 기준 - 만 2세 생일에 여행하는 경우 어린이 요금으로 예약 · 아동 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일 기준 만 2세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 승객들은 아동으로 분류. 만 12세 생일에 여행하는 경우 성인 운임으로 예약 - 어린이 승객이 도착 항공편 날짜에 성인이 되는 경우 여정 전체에 아동 요금 적용 								
<p>고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5세 이상의 승객은 출발 72시간 전까지 신청 시 라운지 입장 가능 · 요청 시 공항 내 휠체어 및 기내 휠체어 제공 								

3) 카타르항공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 시 특별 요구 사항 고지. 의료정보양식(MEDIF)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작성하여 항공편 출발 최소 48시간 전까지 당사 제출 · 홈페이지 '예약 관리'에서 휠체어 지원, 지원 장치 운반 또는 좌석 선택, 에스코트 서비스 등의 특정 요청가능. 일부 특별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의료정보양식(MEDIF) 기재 · 이동식 팔걸이가 있는 좌석, 화장실 내 핸드레일 등 시설 완비 · A319, A330, A340, A350, A380, 보잉 777, 787 기종에서는 기내 휠체어를 제공
	시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탑승 및 하차 시 에스코트 요청 시 사전 고지 필수 · 홈페이지 '예약 관리'에서 출발 최소 48시간 전까지 특별 서비스 요청 가능 · 승무원이 비행 중 안전 지침 등 도움 제공 · 기내 안전 비디오에는 영어 및 아랍어 자막이 제공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탑승 및 하차 시 에스코트 요청 시 사전 고지 필수 · 홈페이지 '예약 관리'에서 출발 최소 48시간 전까지 특별 서비스 요청 가능
	휠체어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기 탑승 최소 48시간 전에 특별 서비스 요청 서류 제출 필요 · 휠체어 등의 이동 보조기구는 무료로 운송 · 배터리로 가동되는 전동 휠체어의 경우만 운송되며 파손되거나 배터리가 새는 경우 운송 불가 · 객실 내에 접을 수 있는 휠체어, 지팡이 및 목발 등 이동 보조기구 보관 공간이 있으며 선착순으로 이용 가능(객실 내에 허가된 장소에 보관하지 못할 경우 화물 운송 가능)
	안내견 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기 탑승 최소 48시간 전에 요청해야 함 · 체크인하기 한 시간 전에 체크인해야 함 · 호주, 브라질, 캐나다, EU, 조지아, 인디아,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출발 또는 도착 항공편 이용 시 객실 내 무료 탑승 · 그 외 항공편 이용 시 화물로 분류되어 무료 운송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예정일로부터 5 영업일 전까지, 「산소실린더 사양 확인 양식」이나 「휴대용 산소 농축기(POC) 사양 확인 폼」을 FAX로 보내면 당사 확인 후 콜센터에서 회신 · 탑승 수속 시 산소 실린더 정보 다시 한번 확인 예정 · 탑승 수속이나 보안 검색 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국내선은 출발 시각의 60분전(간사이 공항, 나하 공항은 55분전), 국제선은 80분전까지 도착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상의 이유로 비상구 좌석 및 1 열째 좌석은 이용 불가 · 기내에서 인공투석(CAPD) 불가 · 인슐린, 에피펜 등의 자기주사기(바늘) 사용 시 보안 검사 시 관련 사실을 고지 요망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임산부는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 의사와 상담하여 예정 여행 기간 동안 자신의 건강 상태가 비행에 적합한지 문의 · 임신의 단계와 상태에 따라 비행하기 전에 특정 의료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임신 36주차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 <table border="1" data-bbox="604 725 1338 1735"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임신 단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임신 세부 사항</th> <th style="text-align: center;">의사의 진단서</th> <th style="text-align: center;">MEDIF 양식</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8주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합병증 없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항에서의 대기할 것을 권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불필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9주차~32주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합병증이 없는 단태 임신</td> <td style="text-align: center;">필요</td> <td style="text-align: center;">불필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9주차~32주차 말</td> <td style="text-align: center;">다태 임신 또는 고위험도 임신</td> <td style="text-align: center;">필요</td> <td style="text-align: center;">필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3주차~35주차 말</td> <td style="text-align: center;">합병증이 없는 단태 임신</td> <td style="text-align: center;">필요</td> <td style="text-align: center;">필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3주차~35주차 말</td> <td style="text-align: center;">다태 임신 또는 고위험도 임신</td> <td style="text-align: center;">33주차 이상의 다태 임신 또는 고위험도 임산부는 탑승 불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33주차 이상의 다태임신 또는 고위험도 임산부는 탑승 불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6주차 이상</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임신 33주차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임신 33주차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td> </tr> </tbody> </table>	임신 단계	임신 세부 사항	의사의 진단서	MEDIF 양식	28주차	합병증 없음	공항에서의 대기할 것을 권장	불필요	29주차~32주차	합병증이 없는 단태 임신	필요	불필요	29주차~32주차 말	다태 임신 또는 고위험도 임신	필요	필요	33주차~35주차 말	합병증이 없는 단태 임신	필요	필요	33주차~35주차 말	다태 임신 또는 고위험도 임신	33주차 이상의 다태 임신 또는 고위험도 임산부는 탑승 불가	33주차 이상의 다태임신 또는 고위험도 임산부는 탑승 불가	36주차 이상		임신 33주차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	임신 33주차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
임신 단계	임신 세부 사항	의사의 진단서	MEDIF 양식																											
28주차	합병증 없음	공항에서의 대기할 것을 권장	불필요																											
29주차~32주차	합병증이 없는 단태 임신	필요	불필요																											
29주차~32주차 말	다태 임신 또는 고위험도 임신	필요	필요																											
33주차~35주차 말	합병증이 없는 단태 임신	필요	필요																											
33주차~35주차 말	다태 임신 또는 고위험도 임신	33주차 이상의 다태 임신 또는 고위험도 임산부는 탑승 불가	33주차 이상의 다태임신 또는 고위험도 임산부는 탑승 불가																											
36주차 이상		임신 33주차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	임신 33주차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비동반 소아 서비스를 예약 시 해당 어린이를 출발 공항에서 인계받아 환승과 탑승 시간 내내 보호 후 최종 목적지에서 부모/보호자에 인계 - 보호자 비동반 소아 서비스는 해당 어린이에 대해 성인 운임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 동행 서비스<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 직원이 어린이와 동행. 출발 최소 72시간 전에 당사에 예약 필요- 만 5~15세 어린이에 한해 가능(여행일 기준 만 16세 생일이전)- 동반 여행하는 항공사 직원의 왕복 항공 운임을 고객에게 부담
--	---

바. 아시아 지역 국적 항공사

- ❖ 다음은 우리나라를 취항하는 아시아 국적의 항공사 중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말레이시아항공, 몽골항공, 베트남항공, 비엠히항공, 세부퍼시픽항공, 스쿠트타이저항공, 에바항공, 에어마카오, 중화항공, 태국항공, 필리핀항공, 싱가포르항공, 홍콩익스프레스에서 교통약자 승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정리하였음.

1)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장애 인	거동이 불편한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리 요청한 승객에 한하여 휠체어/이동 보조 기구 지원 서비스 제공 · 전동 및 수동 여부에 관계없이, 승객 1인당 1대에 한하여 요금 지불 없이 수하물 운송 가능 · 1대 이상의 휠체어를 지참할 경우, 무료 위탁 수하물로 간주 ·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승객의 휠체어 또는 이동 보조 기구를 기내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나 전동 휠체어 중 리튬 배터리로 작동하는 제품의 경우 출발 48시간 이전에 항공사에 알려주면 기내 반입 허용 · 각 공항에 휠체어가 마련되어 있으며 필요 시 티켓 구매 시 예약 · 좌석 예약 시 휠체어(수동 및 전동), 또는 행동 보조 도구(지팡이, 목발, 보행기, 스쿠터) 휴대 여부 고지
	청각장애	항공권 예약 시 서비스를 요청하면 비행기 연착 또는 탑승구 변경 시 별도 안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내에서 비행중 전기/전자식 의료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경우 사전에 예약 시 항공사에게 알리고 승인 받아야 함. 단, 심장박동기 사용에 대한 승인은 필요치 않으며 배터리를 사용한 자가전원공급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함 · CPAP의 경우 비행기의 전자기기, 항법장치 또는 통신기기를 교란시키지 않으며 비상구 쪽 좌석이 아닌 경우에만 승인을 받고 이용 가능 · POC은 승객의 의료기록을 제출하여 GSM의 승인 후 승객 좌석 밑에 보관할 수 있으며 비행시간 150% 이상의 시간동안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를 보유한 경우에 이용이 가능함 · 승무원은 항공기 시스템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의료기기의 전원을 꺼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

임산부	분류	임신 주수	탑승 제한	ME DIF 1	ME DIF 2	가루다 의료센터 승인서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임신 합병증이 없는 단태아 임산부	3 2 주 이하	없음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임신 합병증이 없는 다태아 임산부	3 2 주 이하	없음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임신 합병증이 있는 임산부	3 2 주 이하	있음	필요	필요	필요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임신 합병증이 없는 단태아 또는 다태아 임산부	32~36 주	있음	필요	필요	필요
	임신 합병증이 있는 임산부	32~36 주	있음	필요	필요	필요
	모든 임산부	3 6 주 이상	비행기 탑승 불가			

2) 말레이시아항공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요청은 최소 48 시간 전에 글로벌 고객 연락 센터, 매표소 또는 말레이시아 항공이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할 수 있음 · 이동 장애가 있는 승객 중 일부는 비행 전에 의료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안내된 번호로 연락할 것을 권장
	시각장애	티켓 예약시 OKU (Orang Kurang Upaya) 신분증을 제시한 승객은 말레이시아 내의 항공편에 대해 특별 서비스를 제공 (MASwings 및 프로모션 요금 제외)
	기타	말레이시아 국내선 및 국제선에서 들것 서비스 제공(이코노미 객실에서만 들것 서비스로 수용) - MEDIF 작성 후 출발 최소 10일 전까지 MEDA 데스크에 제출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태아 임부: 국내선 및 국제선을 이용하는 모든 36개월 이상 임부는 비행 허가 불가 · 다태아 임부: 국내선 및 국제선을 이용하는 모든 32개월 이상 임부는 비행 허가 불가

	임부 상태	허가 기준	R&I 제출	의사 소견서	MEDA/M EDIF
	국제선 및 국내선을 이용하는 모든 임부	~28주	필요	불필요	불필요
	국제선 및 국내선을 이용하는 단태아 임부	29~36주차	필요	필요	불필요
	국제선 및 국내선을 이용하는 다태아 임부	29~32주차	필요	필요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출발 48시간 전까지 콜센터로 연락하여 특별 서비스(YPTA) 예약(추가 요금 부과)				
영유아 동반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한 명이 24개월 미만 영아 한 명을 무릎에 앉혀 비행하는 경우 무료 탑승 가능 · 아기 침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출발 24시간 전에 예약/티켓 카운터/콜센터로 연락 · 아기 침대를 사용할 때 표준 무료 좌석을 제외한 좌석 이용 시 추가 요금이 부과 · 아기 침대의 수는 탑승 항공편에 따라 다름 · 안전 규정에 따라 본인 소유의 아기 침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 · 영유아 동반 시 5kg 이하의 가방은 무료로 추가 가능 · 요청 시 영유아 및 어린이 동반 가정의 우선 탑승 가능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또는 연장자가 혼자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비행 48시간 전에 서비스 요청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비행 날짜에 다음의 장소 도착 시 서비스 제공 가능 - Kuala Lumpur 국제 공항 : 특별 지원 데스크 B2 또는 B3 - 그 밖의 장소 : 직원에게 요청 				

3) 몽골항공		
장애인	안내견 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견 관련 서류 제출 시 확인 후 무료 기내 수송 가능 · 기내에서 튼튼한 목줄로 묶여 있으며 주인의 발 밑에 있어야 함
	휠체어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륙 및 탑승에 필요한 휠체어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사전 예약 휠체어 요청은 승객의 항공권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으로 제출 휠체어 및 기타 휴대 기기는 수하물 형태로 운송되며 운송 조건 및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무료로 운송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용 산소 가스 및 산소 실린더를 휴대할 수 있으나 각 실린더의 총 중량이 5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산소 실린더를 휴대할 고객은 탑승 전 의사가 작성한 건강 정보 시트를 제출하여야 함 들것으로 여행하는 승객의 경우 출발 3일 전에 건강 카드를 제출해야 함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36주 이상의 임부는 비행기 탑승 불가 비행 7일 전까지 MIAT 제출 후 승인 필요
	영유아 동반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탑승 가능 신생아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예약 시 아기와 함께 여행할 것을 알려야 함(아기의 여권 및 출생 증명서 필요) 아기 침대는 공항에서 주문할 수 있으며 항공기 전면에 설치되어 있음

4) 베트남항공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승객	출발 최소 24시간 전 고지 시 확인 후 좌석 추가 구매 가능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선: 출발 최소 24시간 전 예약 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승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국내선: 출발 최소 8시간 전 예약 시 관련 서비스 제공 										
	안내견 동반	특별 수하물 지침에 따라 기내 무료 탑승 가능										
	휠체어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선: 출발 최소 24시간 전 예약 시 서비스 제공 국내선: 출발 최소 8시간 전 예약 시 서비스 제공 접이식 휠체어의 경우 선착순으로 기내에 실을 수 있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발 및 지팡이와 기내 반입 가능. 이러한 장치는 항공기의 탑승구 또는 조수석 아래에 들어가는 적당한 사이즈여야 하며 다른 승객의 여행을 방해해서는 안 됨 들것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출발 최소 72시간 전에 예약해야 함 										
	임산부	<table border="1"> <thead> <tr> <th>임신 주차</th> <th>운항</th> <th>요건</th> </tr> </thead> <tbody> <tr> <td>32주 미만</td> <td>일반 승객과 마찬가지로 운송 허가</td> <td></td> </tr> <tr> <td>32~36주</td> <td>비행 전 건강</td> <td>MEDIF</td> </tr> </tbody> </table>	임신 주차	운항	요건	32주 미만	일반 승객과 마찬가지로 운송 허가		32~36주	비행 전 건강	MEDIF	
임신 주차	운항	요건										
32주 미만	일반 승객과 마찬가지로 운송 허가											
32~36주	비행 전 건강	MEDIF										

	<table border="1"> <tr> <td></td> <td>확인 필요</td> <td></td> </tr> <tr> <td>36주 이상; 또는 7일 이내 출산 예정 특수한 경우</td> <td>수송 불가</td> <td></td> </tr> <tr> <td>· 출산 시기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 다태 임신 경험자인 경우 · 출산 시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 인공 수정인 경우</td> <td>비행 전 건강 확인 필요</td> <td>MEDIF</td> </tr> </table>		확인 필요		36주 이상; 또는 7일 이내 출산 예정 특수한 경우	수송 불가		· 출산 시기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 다태 임신 경험자인 경우 · 출산 시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 인공 수정인 경우	비행 전 건강 확인 필요	MEDIF
	확인 필요									
36주 이상; 또는 7일 이내 출산 예정 특수한 경우	수송 불가									
· 출산 시기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 다태 임신 경험자인 경우 · 출산 시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 인공 수정인 경우	비행 전 건강 확인 필요	MEDIF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출발 최소 24시간 전에 예약 시 미동반 어린이 서비스 제공 가능									
영유아 동반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세 미만이며 체중이 11kg 미만인 어린이를 위해 무료 요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원하는 승객은 출발 24시간 전에 예약해야 함(성인 운임으로 이용 가능) · 출발 24시간 전까지 예약 시 어린이를 위한 무료 식사 특별 서비스 제공 · 출생 7일 미만의 어린이 수송 불가 · 성인 한 명 당 만 2세 이하의 영아 한 명 동반이 가능하며 만 6세 이상의 어린이의 경우 제한 없음 									

5) 비엣젯항공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약자, 24~32주 사이의 임산부, 2세 미만 영아를 동반한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 발권 사무소 - 예약발권 사무소에 도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 제공 · 체크인 카운터 & 탑승 게이트 - 각각의 체크인 카운터(SGN/HAN/DAD 공항) - 고객이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 시 우선적으로 서비스 제공 · 기내 서비스 - 기내에서 휴대 수하물을 옮길 시 보조 서비스 - 지상 직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조

6) 세부퍼시픽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 시, PWD 또는 PRM은 국가 장애 업무 위원회(NCDA) 또는 지방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국내선 항공 여행에서 통상 운임의 20%를 할인 · 단, 20% 할인은 카운터에서 지급하는 운임에만 적용되며 온라인 예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터리로 작동하지 않는 접이식 수동 휠체어 및 목발의 경

		우 무료 운송
	임산부	임신부는 체크인 시 임신의 진행 정도를 항공사에 알릴 의무가 있음(미국행 또는 미국발 항공편 제외). 임신 기간이 34주 이상인 임신부는 의사가 서명한 "여행 적합"이라고 표시된 진단서(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탑승)를 제시해야 함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7세 미만 소아는 만 18세 이상 성인을 동반하는 경우에만 여행이 허용 · 보호자 비동반 소아 서비스는 다음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국내 여행에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비동반 소아(들)은 체크인 시 부모/후견인이 보증 - 미성년자가 제출해야 하는 관련 여행 서류 사본을 항공사에 제출 - 소정의 보호자 비동반 소아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 - 부모/후견인이 필요한 여객 특별 서식을 작성해서 체크인 시 항공사에 제출 · 원칙적으로 만 12세 이상인 어린이는 동반자 없는 여행이 허용되나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될 수 모든 여행 서류 또는 여행 허가서를 제출해야 함
	영유아 동반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후 8일 미만 영아는 탑승 불가 ·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생후 8일 이상 유아에게 최소 서비스 요금을 부과 · 좌석을 점유하는 유아의 경우 연방 항공국이 승인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고 운임이 부과됨 · 배터리로 작동되지 않은 유모차는 무료 운송 가능
	고령자	<p>만 60세 이상 필리핀 거주민은 국내선 여행 시 통상 운임의 20% 할인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용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됨. 항공권 구매 시 신분 증명을 위해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고령자가 거주하는 시청이나 지역 사무소의 고령자 관련 업무 부서에서 발급한 고령자 신분증 · 해당 고령자의 여권 · 고령자의 이름, 사진, 생년월일과 국적을 보여주는 정부가 발행한 여타 신분증 (예: SSS, GSIS, 운전 면허증, 통합 다목적 ID, PRC ID)

7) 스쿠트타이거항공		
장애	거동이 불편한 승객	· 출발 최소 48시간 전까지 콜 센터 요청 시 체크인부터 탑승, 착석에 이르기까지 휠체어와 하이 리프트(공항에서 이

인		<p>용할 수 있는 경우) 서비스 등 제공. 단 투약, 식사, 화장실 이용은 지원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와 탑승구 간 높이차 조절이 불가할 경우 원격 조종 가능한 계단이 스쿠트 항공으로부터 제공 · 비상구열 좌석을 사용 불가
	시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최소 48시간 전까지 콜 센터 요청 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발 최소 2-3시간 전에 미리 체크인하기를 권장 ·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는 승객은 미트 앤 어시스트(meet and assist)서비스 필수(미트 앤 어시스트 서비스: 체크인부터 탑승 게이트까지, 도착 시 도착 게이트부터 도착 홀까지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지정 지원(필요할 경우) - 개인 안전에 대한 안내 - 식사 포장을 확인 후 개봉 지원 · 칸막이벽 좌석과 비상구열 좌석 배정 불가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최소 48시간 전까지 콜 센터 요청 시 필요한 서비스 제공 · 보호자 없이 혼자 스쿠트 항공을 이용 가능
	안내견 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최소 48시간 전 콜 센터를 통해 예약 가능 ·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는 승객의 경우 미트 앤 어시스트 서비스가 의무적으로 제공 · 안전상의 이유로 안내견 탑승은 항공기 한 대당 최대 2마리(1인 1마리)까지만 허용
	휠체어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상의 이유로 본인 소유의 휠체어는 출국 시 위탁 수하물로 운송되며 출발 최소 2-3시간 전에 미리 항공편 체크인 요망 · 휠체어: 공항과 에어로브리지/원격 베이 계단 사이의 이동 지원을 포함하며 (필요 시) 항공기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하며 좌석으로 이동은 스스로 해야 함 · 하이 리프트: 에어로브리지/원격 베이 계단까지의 휠체어 지원 이외에 항공기 승/하차 또는 좌석까지의 별도 지원 (선택한 목적지에서 사용 가능)을 포함 · 배터리 전동 휠체어 이용객은 배터리 전동 휠체어의 운반에 대한 IATA 규정을 참고 · 이동 및 기타 보조 기구는 객실 반입 수하물의 허용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안전상의 이유로 비접이식 보행 보조 기구는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음 · 필요에 따라 장비를 분해 및 재조립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휠체어와 배터리 사용 설명서를 소지할 것을 권장 · 목발, 지팡이(시각 장애인이 사용하는 지팡이 포함), 접이식 보행 보조 기구와 같은 이동 보조 기구는 기내 반입이 허

		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A로부터 승인된 휴대용 산소 발생기(POC)는 항공기 좌석에 공간이 허용하는 한 이용 가능 · 모든 지속성 양압 호흡(CPAP) 모델은 항공편 탑승 시 사용 가능 → 만약 기기가 좌석 아래에 맞지 않을 경우 비행 중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머리 위 수하물 칸에 넣어서 보관이 가능 → 당사는 해당 장비에 대해 기내에서 전력을 공급하지 않으므로 POC 또는 CPAP 장치는 겔 또는 건전지를 이용하여 자체 동력으로 작동되는 제품이어야 함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성인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18세 미만 청소년이 단독으로 여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임산부	기간	제한
	28주 이내	건강 증명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음
	단일 태아: 29~36주 다태아: 29~32주	다음을 포함한 건강 증명서(여행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된)를 제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 적합성 · 임신 주수 · 출산 예정일 요청 시 체크인할 때 이 증명서 제시
	단일 태아: 36주~ 다태아: 32주~	비행기 여행 불가
영유아 동반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어난 지 8일 이후인 영아의 경우 탑승이 가능하며, 성인(만 18세 이상)과 동반하여 여행해야 함 · 유아용 좌석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비행하는 동안 유아는 성인의 무릎에 앉혀야 하며 이 경우 유아용 좌석 벨트를 이용 · 아동 안전 시트를 허용하지 않으며 기내에서도 제공되지 않음 · 전방을 보는 유아 안전 시트만 기내에 반입 가능 · 모유와 이유식 보관통을 합한 무게는 좌석 클래스에 맞는 기내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 · 기내 수하물 사이즈 규격에 맞는 접이식 유모차는 기내 탑승 가능하며 수하물 허용 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8) 에바항공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승객	· 예약 시 또는 출발 최소 24시간 이전에 서비스 요청 시 공항에서 휠체어 서비스 지원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트로의 이동, 탑승 및 하차 보조 · 타오 위엔 국제 공항 17 번 카운터에서 EVA 에어 오피스 체크인 서비스를 이용 시 체크인 절차 지원 · EVA 항공 비행 노선의 대부분의 공항에는 항공 교량 및 리프팅 장비가 장착되어있어 계획 및 기내 보조를 제공 가능
	안내견 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 수하물 요금없이 기내 탑승 가능 · 비행 최소 48시간 전에 사전 예약 권장
	휠체어 이용	본인 소유의 휠체어 및 이동 보조 장치는 추가 비용없이 체크인 수하물로 허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것을 사용하는 승객은 비행 중에 치료가 필요할 경우 최소 한 명의 의사 또는 간호사 동행 필요 · 항공편 출발 예정일 최소 48 시간 (근무일 기준 2 일) 전에 EVA 에어 사무소에 서비스 예약 · 승객이 정상 비행 중에 산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비행 최소 48 시간 전에 요청 시 관련 보급 서비스 제공. 단 승객의 항공 여행 적합성을 증명하는 EVA 의료 정보 시트 (MEDIF)는 항공편 출발 예정일 최소 48 시간 (근무일 기준 2 일) 전에 EVA 의사의 승인을 받아 예약 사무실에 전달되어야 함 · 비행 중 치료 시 산소가 필요한 승객의 경우 적어도 의사 또는 간호사 1 명을 동반해야 필요. 산소 병 및 좌석 추가 요금이 부과됨 · 비행 최소 48 시간 전에 신청 시 POC와 MPED 사용 가능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예정일 7일 이내 임부는 탑승 불가 · 임신 28주 이내의 임부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보호자가 UM양식 제출 후 예약하여 미동반 어린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각 항공편의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8세에서 12세 사이의 보호자 없는 어린이를 최대 1명까지 허용 · 여정에 4시간을 초과하는 환승/도중 체류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도중 체류 장소에 도착하여 아이를 에스코트 해야 함
	영유아 동반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후 첫 7 일 이내에 아기는 탑승 불가 · 만 2세 이하의 영아는 성인 승객의 무릎에 앉혀 비행할 수 있음 · 베이비 바스켓을 이용할 승객은 미리 아이의 키와 몸무게에 맞는 베이비 바스켓을 예약해야 함

9) 에어마카오		
장	휠체어 이용	사전 요청 필요

애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운송을 위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정상 좌석을 이용 할 수 없거나, 비행 중 산소 공급, 주사 투여 등의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최근 외상 및 수술 경험이 있거나 중대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전염성의 질환이 있는 경우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승일자 기준 29주미만 임신부의 경우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여행 가능 · 단, 29주이상~37주 미만 된(탑승일 기준) 임신부의 경우 영문 의사 소견서 원본(2부)가 필요하며 항공편 예약 시 미리 에어마카오 공항 사무실로 전화 또는 공항 체크인 카운터로 방문하여 임신 일수, 출산 예정일 등을 알려야 함(다태아-탑승일 기준 29주 이상~33주 미만 임신부의 경우 영문 의사 소견서(2부) 필요) ※ 영문 의사 소견서는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출·도착)에 발급받은 진단서만 유효하며, 7일 이후의 영문 의사 소견서 제출 시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 ※ 영문 의사 소견서 내용에 반드시 fit for travelling by air 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임신 37주 이상(다태아-33주 이상) 의 경우 항공 여행 허용 불가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사전 요청 후 보호자 비동반 어린이 서비스 이용 가능
	영유아 동반 승객	아기바구니는 사전 요청 시 이용 가능

10) 중화항공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승객의 좌석 및 화장실 간 이동을 돕기 위한 기내 휠체어가 구비 · 모든 여객기에는 호출 벨, 레일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이 있는 장애인 승객용 화장실이 구비
	시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승무원은 대상 승객에게 도움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두로 지침을 전달 - 승객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려 승객이 승무원의 팔을 잡을 수 있도록 함 - 승객의 손을 팔걸이 또는 의자 뒤에 놓아 해당 승객이 스스로 쉽게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함 - 승객이 안전 벨트를 하고 착석할 수 있도록 도우며 승객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좌석 및 주변 시설과 가장 가까운 화장실을 안내

<p>안내견 동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없이 보조견이 함께 탑승하도록 허용 · 대만에서 출발 및 귀국 여정에서 보조견을 동반하여 환승하는 승객은 Application Form for Animal Transit(반려동물 동반 환승 신청서)을 작성하여 Bureau of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Taiwan(대만 동식물 검역국)에 보내 승인을 받아야 함
<p>휠체어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또는 기내 휠체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출발 48시간 전까지 예약 또는 고객 서비스 직원에게 장애사실을 알릴 것을 권장 · 승객 본인의 휠체어로 탑승 게이트까지 이동 · 전동 휠체어 이용 고객은 공항 체크인 시 전동 휠체어를 위탁 운송하고 탑승 시 사용할 일반 휠체어를 제공 · 수동 또는 전동 휠체어는 위탁 운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음 · 수하물 수취 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가 준비되어 있으며 위탁 운송된 휠체어와 개인 수하물 수취를 지원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것 서비스는 출발 최소 7일 이내에 전문가가 서명하여 작성한 진단서 제출 후 허가 시 이용 가능(보호자 동반 필수) · 건강상의 이유로 기내에서 전자 의료 기기(산소 발생기, 가래 흡입기, 호흡기 등)를 소지해야 하는 승객은 최소한 출발 48시간 전까지 예약부서에 연락하여 승객 본인의 상태를 알리고 사전 공지 절차를 완료해야 함
<p>임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 안전 및 승객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 승객은 예약 부서에 출산 예정일과 다태 임신 여부를 알려야 하며 모든 임산부 승객은 여행 중 필수 정보가 담긴 산전 의료 기록을 소지해야 함 · 임신 기간이 28주를 경과한 임산부 승객은 최소한 출발 2일(근무일 기준으로 주말과 공휴일 제외)전까지 중화항공 예약 부서에 연락하고 다음 문서를 제출해 의료 승인을 받은 후 예약을 확정해야 함 · 의료 허가 양식과 진단서는 자격을 갖춘 산과 전문의가 서명하고 출발 7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의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중화항공 의료 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신 31주 + 6일 미만의 일반 다태 임산부는 탑승 가능 · 의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중화항공 의료 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신 35주 + 6일 미만의 일반 단태 임산부는 탑승 가능 · 36주를 경과한 단태 임산부 승객 또는 32주를 경과한 다태 임산부 승객은 여행이 제한 · 출산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산모는 탑승 불가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비동반 미성년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대상: 18세 이상의 부모 또는 보호자 없이 여행하는 5세~12세의 어린이 승객 · 보호자 비동반 미성년자의 예약은 최소한 출발 72시간 전까지 완료해야 함 	
	연령	적용 클래스
	5세 미만	없음
	5~12세 미만	이코노미 클래스 /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운임	
		없음
		성인 운임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보호자 비동반 미성년자 승객은 수수료 결제 시 서비스 요청 가능 		
신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공권 예약 확인 후 출발 24시간 전까지 신청 2. 인터넷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미성년자 승객은 출발 24시간 전까지 신청 및 서비스 직원의 안내에 따라 결제 완료 	
결제 금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편도 여행당 미화 \$75(입국하지 않은 환승 국가 내 중화항공 여객기로의 환승 포함) 2. 출발 전 중화항공의 항공권 카운터에서 결제 완료 	
취소 및 환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발 전 취소 신청 시 환불 금액에서 20%의 서비스 수수료 차감 2. 출발 후 취소 시 금액이 환불되지 않음 	
영유아 동반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이 동반한 영아가 좌석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영아 운임이 적용 · 두 명의 영아를 동반한 성인은 좌석 이용이 가능한 아동 운임 항공권을 한 장 구매해야 함 	

11) 태국항공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승객	서비스 요청 시 기내 이동 및 수하물 수취 등을 지원 기내에서 스스로 자신을 챙길 수 없는 승객은 보호자 동행을 강력히 권장
	안내견 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객은 안내견/조수견의 출/입국을 위한 검역 및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출발 48시간 내에 제출해야 함 · 안내견은 승객의 발 밑에만 위치할 수 있고 비상구 출구 좌석은 배정 불가 · 입마개 및 목줄 착용 필수

	휠체어 이용	예약 시 또는 출발일로부터 최소 48시간 전까지 휠체어를 요청
	기타	<p>기내 의료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 처치 키트(기내 승무원이 사용) - 의학 키트(흰색/검정색 한개씩)는 기내 탑승 의사가 이용하거나, 또는 제 세동기를 이용 - 자동 제세동기(AED) - 휠체어(장거리 비행용)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주이상의 임산부는 의사 소견서 제출 후 확인받아야 함 · 쌍둥이가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 시간 4시간 미만의 경우 임신 36주까지 가능 - 비행 시간 4시간 이상의 경우: 임신 34주까지 가능 → 출산예정일의 의사 소견서와 일반 임신 확인서 필요 · 쌍둥이 임신 또는 건강 상의 문제가 있는 임부(전치태반, 미숙아 출산 전력 등) 장거리 항공 여행이 허가되지 않으며, 항공사로부터의 의학 소견서 제출 필수 · 임신 36주를 넘는 경우 항공 여행 불가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비동반 소아(UM: Unaccompanied Minor) 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하여 이용 가능 · 자녀의 나이와 생년월일, 출도착 공항 모두에서 연락 가능한 연락처 필요 · 보호자 비동반 소아 서비스 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선: (만 5-17세 사이의 어린이 대상) 성인 운임의 100%, 보호자 비동반 소아에 대한 서비스 요금은 한 구간당 USD60 - 국내선: (만 5-11세 사이의 어린이 대상) 정상 요금(C또는 Y요금)의 75%가 적용되며 국내선 구간에는 서비스 요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음 · 코드 셰어 항공편(TG4자리)에서는 보호자 비동반 소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영유아 동반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예약/티케팅사무소에 유아의 정보를 미리 고지 시 적절한 좌석과 기내 서비스 제공 · 아기요람은 6개월 미만 10kg 미만, 67cm 미만의 유아 전용 · 일반 소아 좌석을 구매한 2세미만의 유아는 FAA 승인을 받은 카시트를 사용 할 수 있음 · 생후 7일 이후의 건강한 영아는 보호자 동행 시 탑승 가능

12) 필리핀항공		
장애	휠체어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출입구 앞까지 휠체어 서비스를 이용 · 탑승기준 48시간 이전까지 가까운 필리핀항공 사무소로 사

인		<p>전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국 당일 공항 수속 카운터에서 휠체어 수령 ·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아예 불가능한 승객의 경우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탑승 불가 · 개인 휠체어는 추가비용 없이 수하물 처리 가능 				
	들것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항공기 당 하나의 들것 서비스 가능 · 최소 7일 전에 요청 · 일반석만 제공 · MEDIF 제출 필요 · 출 / 도착 시 의료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호송인(escort)을 동반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미만의 임산부: EMIS(Expectant Mothers Information Sheet)의 Part 1을 본인이 작성(단, 21세 이하의 임산부인 경우 PART1에 보호자/남편의 사인이 필요) · 6개월에서 8개월 미만의 임산부: EMIS의 Part 1 과 Part 2 모두 작성 · Part 2는 담당의사가 직접 작성 · 8개월 이상의 임산부: 탑승 불가 · 예약 시 임산부의 나이와, 임신 주차 신고 및 · 제출하는 EMIS Form은 국내선일 경우는 발행일 기준 4일 이내, 국제선일 경우는 7일 이내에만 유효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정부 규정상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혼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부모 중 아버지만 동반하는 경우</th> <th style="text-align: center;">부모 중 어머니만 동반하는 경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아버지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성이 동일 할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음</p> <p>아버지와 소아의 영문 성이 다를 경우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가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철자, 영문 주민등록 영문 철자가 각각 동일해야 함 ※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영문 등본에 한함(민원24 온라인 발급 불가)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철자, 영문 주민등록 영문 철자가 각각 동일해야 함 ※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영문 등본에 한함(민원24 온라인 발급 불가) </td> </tr> </tbody> </table>	부모 중 아버지만 동반하는 경우	부모 중 어머니만 동반하는 경우	<p>아버지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성이 동일 할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음</p> <p>아버지와 소아의 영문 성이 다를 경우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가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철자, 영문 주민등록 영문 철자가 각각 동일해야 함 ※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영문 등본에 한함(민원24 온라인 발급 불가) 	<p>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철자, 영문 주민등록 영문 철자가 각각 동일해야 함 ※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영문 등본에 한함(민원24 온라인 발급 불가)
부모 중 아버지만 동반하는 경우	부모 중 어머니만 동반하는 경우					
<p>아버지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성이 동일 할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음</p> <p>아버지와 소아의 영문 성이 다를 경우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가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철자, 영문 주민등록 영문 철자가 각각 동일해야 함 ※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영문 등본에 한함(민원24 온라인 발급 불가) 	<p>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철자, 영문 주민등록 영문 철자가 각각 동일해야 함 ※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영문 등본에 한함(민원24 온라인 발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20세 이상의 성인 인솔자가 동행하는 경우 <p>1. 영문 부모 동의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공증번호사 or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3. 외교부 별관의 영사확인 4. 원본과 사본 1부를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한 후 인증(레드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 탑승일 기준 만 12세 이상의 승객은 홀로 여행이 가능 - 만 8세 ~ 만 12세 미만의 승객은 한국으로 입국 시 현지 필리핀항공 오피스를 통해 UM SERVICE 신청이 가능 - 출발일 최소 1주일 전까지 보호자와 함께 현지 티켓오피스에 내방하여 신청
영유아 동반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이후 16일 미만의 유아는 탑승 불가 · IATA 정규 요금의 10%로 성인 1명에 유아 1명만 동반 가능

13) 싱가포르항공		
장애 인	거동이 불편한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수동식 또는 전기식 휠체어, 또는 지팡이, 목발, 위커 또는 이동용 스쿠터 등과 같은 보행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 휠체어나 기타 보조 기구는 반드시 항공기 화물칸에 위탁 수하물로 운송 · 출발 최소 2-3시간 전에 일찍 체크인하기를 권장 · 탑승 전 시간에는 응대-지원(meet-and-assist) 서비스 팀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행 중에는 기내 승무원이 기내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 지원
	시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내 승무원이 이륙 전 특별 안전 브리핑을 실시하고, 주변 물체들의 방향을 안내 및 식사 준비 지원 · 항공편 출발 최소 48시간 전에 현지 싱가포르항공 사무소에 연락하여 서비스 요청 · 더욱 편안한 여행을 위하여, 출발 최소 2~3시간 전에 일찍 체크인할 것을 권장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내 안전 동영상 수화 버전으로 제공 · 항공편 출발 최소 48시간 전에 현지 싱가포르항공 사무소에 연락하여 서비스 요청 · 더욱 편안한 여행을 위하여, 출발 최소 2~3시간 전에 일찍 체크인할 것을 권장
	안내견 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객은 안내견/조수견의 출/입국을 위한 검역 및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출발 48시간 내에 제출해야 함 · 안내견은 승객의 발 밑에만 위치할 수 있고 비상구 출구

		좌석은 배정 불가 · 입마개 및 목줄 착용 필수	
	휠체어 이용	항공기 내 좌석과 화장실 및 휠체어 사용 가능한 화장실 사이를 오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음	
임신부	임신 주차	제한 규정	
	28주 이하	의사 소견서 제출 불필요	
	· 정상 일반 임신: 29-36주 · 정상 다둥이 임신: 29-32주	· 다음 내용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여행 적합성, 임신 기간(주 단위), 출산 예정일 기재) 제출 · 소견서는 반드시 임신 28주 이후 첫 번째 항공편 이용일 10일 이내 날짜로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요청을 받을 경우 소견서를 체크인 카운터에서 제시	
	정상 일반 임신: 36주 초과 정상 다둥이 임신: 32주 초과	항공편 여행 불가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보호자 비동반 소아 서비스> · 성인 동반자(18세 이상)가 없는 경우 5세부터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의무 사항이며, 12세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선택 사항 · 만 5세부터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해 서비스 예약을 원하는 승객은 홈페이지 제공 양식 작성 후 싱가포르항공사에 연락하여 항공권 예약 후 서비스 요청 · 12세부터 18세 사이인 경우 자녀(들)의 항공편 예약을 마치고 웨이버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체크인 시 양식을 제출		
영유아 동반 승객	· 아기 바구니(bassinet)의 경우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유아 항공권 예약 시 요청 가능 · 부스터 시트, 조끼 및 하네스형 안전 장치는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3세 미만 아동용으로 승인된 자동차형 유아 카시트 및 FAA 승인 고정 장치는 사용 가능(영국 민간항공국(CAA), 미국 연방 항공국(FAA) 또는 UN 유럽 ECE(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에서 승인을 받은 모델이어야 함) · 접이식 경량 유모차의 경우 기내 반입 가능 수하물 규정 한도 내여야 하며 기내 선반에 넣을 수 있어야 함 · 아동용 항공기 침대를 창문 좌석이나 통로 좌석사이 중간		

	<p>좌석에 설치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후 48시간 미만 유아는 탑승이 불가하며 생후 7일 이하 유아는 항공기 여행을 권장하지 않음 · 모든 유아 또는 아동 승객에는 반드시 최소 18세 이상의 부모/보호자가 동반해야 함(그렇지 않을 경우 보호자 비동반 미성년자 도움 서비스가 필요) · 성인 한 사람이 유아(생후 7일부터 2세 사이) 2명과 함께 탑승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 중 한 명은 승인 받은 카시트를 사용하고 다른 한 명은 유아용 좌석 벨트를 사용할 수 있음(유아 두 명을 데리고 혼자 여행하는 경우 가까운 싱가포르항공 사무소에 연락)
--	--

14) 홍콩익스프레스		
장애 인	거동이 불편한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민항처(HKCAD) 규정 준수를 위해 특별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승객의 수를 항공기당 4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층 객실 내 비상구 1개당 해당 승객을 한 명씩만 배정 · 특별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승객은 상기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안전 도우미와 함께 비행 · 48시간 전에 콜센터에 특별 지원 서비스 신청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출발 48시간 전에 콜센터에 연락해 추가 지원 요청
	안내견 동반	<p>장애인 안내견(DAD)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객실 내 동반 탑승이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 농수산환경청(AFCD)의 DAD 정의에 충족하는 경우 - 해당 승객이 견종 수입 /수송 /환적에 대한 AFCD의 특별 허가서를 받은 경우 - 해당 승객이 AFCD에게 객실 내 DAD 수송에 대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 아래 통지 시간 내에 콜센터에 통지하고, AFCD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의 원본을 체크인 시 및 홍콩 도착 시 제시하는 경우
	휠체어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48시간 전에 서비스 지원 요청 · 항공편 탑승 시간 전에 체크인, 보안 및 출국 심사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예정 출발 시간 최소 180분 전에 공항 도착 권장 · 탑승 구역까지는 본인의 휠체어 사용 가능 · 휠체어는 무료로 수송(객실 선반에 안전하게 적재할 수 없는 접이식 수동 휠체어는 위탁 수하물 취급)
	기타	항공편 출발 48시간 전에 콜센터 예약 시 휴대용 산소발생기(poc)를 객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임산부		

		단태 임신인 경우	다태 임신으로 확인된 경우
	진단서 필요 없음	임신 27주차 이내	임신 27주차 이내
	여행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예상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행 출발7일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필요	임신 28주차부터 35주차까지	임신 28주차부터 31주차까지
항공 여행이 허용되지 않는 임산부	임신 36주차 이상	임신 32주차 이상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비동반 소아(UM: Unaccompanied Minor) 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하여 이용 가능 · 자녀의 나이와 생년월일, 출도착 공항 모두에서 연락 가능한 연락처 필요 · 보호자 비동반 소아 서비스 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선: (만 5-17세 사이의 어린이 대상) 성인 운임의 100%, 보호자 비동반 소아에 대한 서비스 요금은 한 구간당 USD60 - 국내선: (만 5-11세 사이의 어린이 대상) 정상 요금(C또는 Y요금)의 75%가 적용되며 국내선 구간에는 서비스 요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음 · 코드 셰어 항공편(TG4자리)에서는 보호자 비동반 소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영유아 동반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상의 이유로 탑승할 수 있는 유아(만2세 미만 승객)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 승객은 반드시 출발 48시간 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 · 요청 시 승객에게 어린이 보호용 장치(CRD) 제공 ·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성인 또는 법적부모 또는 보호자 1인당 1명의 유아만 탑승 가능 · 좌석열 당 1명의 유아만 탑승 허용 · 접이식 유모차는 저희 항공사의 기내 운반 수하물 정책에 부합하고 충분한 보관 장소가 확보되었을 시에만 기내에 소지하여 탑승 가능 · 유모차 및 유아용 의자는 무료로 체크인할 수 있으며 수하물 허용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 기내에서 아기 침대를 제공하지 않음 · 만 2~11세의 승객은 모두 어린이로 분류되며 구매한 좌석에 앉아야 함. 모든 승객들에게 저렴한 운임을 동일하게 제 		

	공하므로 어린이 할인은 따로 제공하지 않음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발 48시간 전에 서비스 신청· 지팡이, 목발, 보행기 등 특정 유형의 보행 보조기구를 객실 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경우 승객이 이를 기내에 반입하는 것을 허용

3. 우리나라 공항의 교통약자 서비스 제공 현황

- ❖ 본 조사에서는 항공사업법 상 “공항운영자”로 등록되어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공항의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해 조사함.
- ❖ 공항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약자 승객에 대한 제공 서비스를 조사와 공항공사에 실태조사 협조 요청하여 정리하였음.

가. 인천국제공항공사

- ❖ 인천공항에서는 영유를 동반한 승객 및 임산부를 위해 유아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 동반 승객의 보육활동을 위한 수유실, 기저귀갈이대, 세면대, 젖병소독기, 정수기, 체중계, 손소독제 등이 비치되어 있음.
- ❖ 터미널 내에는 8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준비되어 있으며, 어린이를 동반한 승객의 이동을 위해 유모차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음.
- ❖ 장애인 승객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정차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터미널 내 안내데스크로 바로 연결되는 헬프폰 서비스 및 휠체어 이용 승객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기주차장에서 여객터미널까지 이동 서비스와 공항 내 전동차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공항 내 안내데스크에서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은 무료로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으며 시각 장애인을 위한 공항정보를 담은 점자 브로셔를 제공함.
 - ▶ 휠체어 서비스 요청시 안내직원이 커브사이드 픽업,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탑승지점을 안내하고 있음.
- ❖ 인천 공항 내 교통약자 전용출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7세 미만 유소아, 7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병약 승객이 동반 여객 3인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함.
 - ▶ 이용 방법은 공항 도착 후 체크인 시 교통약자 우대카드를 수령하고 전용 출국장 및 보안 검색 시 우대카드를 제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 터미널 내 휴게좌석에는 교통약자 배려석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림 2-3> 인천공항 대기공간 내 교통약자 배려석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 ❖ 이 외에도 인천공항에서는 미아방지팔찌와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유도기, 청각장애인용 히어링 루프, 수화통역용 화상전화기, 안내방송 시각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 인천공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약자용 서비스와 이용 가능 시간은 다음 <표 2-3>와 같음.
- ❖ 인천공항에서는 24시간 안내가 가능한 안내데스크를 비롯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일반 승객 및 교통약자 승객에 대해 응대 하고 있으며 운영 시간 및 안내 직원 규모는 다음 <표 2-4>와 같음.

<표 2-3>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별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 및 운영시간

구분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운영시간
전용 출입구	2개소	2개소	게이트마다 다름
휠체어 대여	22대	14대	24시간
유모차 대여	65대	28대	
헬프폰	8대	16대	
미아방지 팔찌	5개소	-	
점자안내 책자	8개소	4개소	
음성안내 유도기	3개소	-	
안내방송 시각지원	-	6개소	
수화통역 영상전화기	2개소	1개소	다산콜센터 운영시간 평일9~22시/주말9 ~18시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표 2-4>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별 안내데스크 위치·운영시간 및 안내직원 규모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운영시간
L/S 1층	2개소	2개소	24시간 ※T1 L/S 3층 2개소 05:30~22:00
L/S 3층	3개소	2개소	
A/S 3층	T1 2개소, 탑승동1개소	2개소	
안내데스크	56명	38명	4조3교대
자원봉사자	65명	62명	오전조(7:30~11:30) 오후조(14:30~18:30)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나. 한국공항공사

- ❖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내 14개 공항에서는 공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음.
- ❖ 영유아를 동반한 승객 및 임산부를 위해 유아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휴게실에는 수유실, 기저귀갈이대, 세면대, 정수기, 유아침대 등이 마련되어 있음

- ❖ 일부 공항에는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준비되어 있으며, 어린이를 동반한 승객의 이동을 위해 유모차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음.
- ❖ 장애인 승객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 교통약자 전용 정차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호출벨을 이용할 수 있는 Help-Point와 전동 휠체어 충전존이 설치되어 있음.
- ❖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은 무료로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으며, 김포공항의 경우 지하철 역사에서 공항까지 이동을 위해 전동카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타 공항에서는 이동 도움 서비스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 이동 도움 서비스 요청시 안내직원이 커브사이드, 주차장 지역에서 픽업하여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까지 안내하고 있음.
- ❖ 김포, 김해, 청주, 광주, 울산, 군산 공항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체크인카운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를 동반한 승객이며 최대 3인까지 동시 수속이 가능함.
- ❖ 이 외 전국 공항에서 23개의 교통약자 우선보안 검색대를 운영하고 있음.
- ❖ 터미널 내 휴게좌석에는 교통약자 전용석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 탑승교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사천, 군산, 원주 공항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에서 휠체어 리프트 3대를 구매하여 항공사/지상조업사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약자용 서비스 종류와 규모는 다음 <표 2-5>, <표 2-6>와 같음.
- ❖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항에서는 일반 승객 및 교통약자 승객의 편의를 위해 공항 운영시간동안에만 현장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상담의 경우 24시간 운영하고 있음.
- ❖ 다음 <표 2-7>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공항의 안내데스크 운영 인원 규모임.

<표 2-5> 한국공항공사 운영 전국 공항의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 현황 1

구 분	유아 휴게실	어린이 놀이터	유모차	유모차 보관대	휠체어	장애인 화장실	우선보안 검색대
김 포	11개소	1개소	12대	1개소	8대	36개소	2대
김 해	4개소	-	6대	-	6대	35개소	2대
제 주	3개소	1개소	4대	-	3대	29개소	3대
대 구	1개소	-	1대	-	1대	4개소	2대
울 산	1개소	-	1대	-	9대	11개소	1대
청 주	1개소	-	1대	-	1대	7개소	2대
무 안	1개소	1개소	1대	-	2대	6개소	2대
광 주	1개소	-	1대	-	1대	4개소	1대
여 수	1개소	-	1대	-	3대	6개소	2대
포 향	1개소	-	1대	-	3대	6개소	1대
양 양	1개소	1개소	1대	-	2대	11개소	2대
사 천	1개소	-	1대	-	1대	5개소	1대
군 산	1개소	-	1대	-	1대	4개소	1대
원 주	1개소	-	1대	-	1대	3개소	1대
계	29개소	4개소	33대	1개소	42대	167	23대

자료: 한국공항공사 제공

<표 2-6> 한국공항공사 운영 전국 공항의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 현황 2

구 분	수화통역 전화기	교통약자 승하차구역	헬 프 포인트	전동휠체어 충전존	항공기 출입문턱 진입판	휠체어 리프트	축지도
김 포	2대	2개소	5개소	1개소	17개	6	2
김 해	3대	2개소	2개소	1개소	12개	-	2
제 주	1대	1개소	1개소	1개소	6개	-	-
대 구	-	1개소	1개소	1개소	3개	-	1
울 산	-	1개소	1개소	1개소	2개	-	1
청 주	-	1개소	8개소	1개소	-	-	1
무 안	-	1개소	1개소	1개소	-	-	1
광 주	-	1개소	1개소	1개소	-	-	1
여 수	-	1개소	1개소	1개소	-	-	1
포 향	-	1개소	1개소	1개소	2개	-	1
양 양	-	1개소	1개소	1개소	3개	-	1
사 천	-	1개소	1개소	1개소	-	1	1
군 산	-	1개소	-	1개소	-	1	1
원 주	-	-	1개소	1개소	-	1	1
계	6대	15개소	25개소	14개소	45개	3	15

자료: 한국공항공사 제공

<표 2-7> 한국공항공사 운영 전국 공항의 안내데스크 운영 인력 현황

구분	김 포	김 해	제 주	대 구	울 산	청 주	무 안	광 주	여 수	포 향	양 양	사 천	군 산	원 주
안내 데스크	12	12	4	4	-	-	-	-	-	-	-	-	-	-
자원 봉사자	54	15	2	8	-	-	-	-	-	-	-	-	-	-
지자체/ 관광협회 운영	1	6	1	1	1	1	1	1	1	1	1	1	1	1

자료: 한국공항공사 제공

제3절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문제점 분석

1. 기존 법률의 검토를 통한 시사점

-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 제1조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으로 정의함.
 - ▶ 제2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함.
- ❖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을 규정함.
 - ▶ 제2조제1호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함.
 - ▶ 제2조제2호는 '교통수단'을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운송수단으로 한정하면서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교통수단에 명시적으로 포함함.
 - ▶ 제2조제3호는 '여객시설'을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 정의하면서, 「공항시설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을 여객시설에 포함함.
 - ▶ 제2조제5호는 '교통사업자'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를 포함함.

- ▶ 제3조에 따르면, 이동권이란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이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 또한 제5조제2항은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가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함.
- ❖ 이와 같은 현행 법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선언하고 있지만, 주로 육상 교통 및 도로보행 또는 시설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항공교통서비스에 특화된 규정 도입이 필요함.

2.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 서비스의 문제점 분석⁶⁾

- ❖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국내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이용에 있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정의된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승객, 어린이 등)는 각 그룹의 필요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특성이 다르며, 일부의 경우 그룹을 대표하기 위한 협회나 단체를 명확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 때문에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교통약자 중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룹이며, 협회나 단체를 통해 의견수렴이 용이한 장애인 단체를 통해 교통약자의 항

6) 출처: 1) 「국제항공 이용에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실태와 개선방안토론회」 자료집(2018.10.25.)
2) 장애인 단체 등 이용자 대상 의견수렴회의
3) 「장애인 항공기 이용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의견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공교통이용 편의를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음.

- ❖ 다음 정리된 내용은 여행의 예약단계에서부터 종료까지 각 단계에서 장애인 승객이 항공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낀 부분을 장애인단체 관련자와의 자문회의 및 2018년 10월 25일에 열린 「국제항공 이용에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통해 수집된 내용임.

가. 항공 여행 정보의 제공 및 예약 시스템

- ❖ 2017년 한국장애인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107명의 응답 장애인 중 55.1%인 59명이 항공교통이용시 예약과 관련한 4개의 문항에서 하나 이상의 문항에서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하였음.
- ❖ 장애인 여행객들은 항공교통서비스 이용편의를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 홈페이지가 여러 유형의 장애인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해야 하며, 장애인 전용 상담 번호를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품질 인증 제도를 두고 있음.
 - ▶ 본 연구를 위한 조사 결과 국적 항공사 중 일부 항공사(대한항공, 제주항공)는 웹접근성 인증을 획득하였으나, 조사 당시 인증유효기간(1년) 이내에 유효한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확인 되었고, 에어부산과 티웨이 항공은 조사 당시 유효한 웹접근성 인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 공공기관인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 산하의 공항 홈페이지는 모두 조사 당시 유효한 웹접근성 인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 또한, 장애인 승객이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센터 등에 연락을 통해 사전에 상담 및 예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상담 창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함.
 - ▶ 국내 공항 및 국적 항공사에서는 교통약자가 항공사 및 공항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유·무료 서비스와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서비스 신청 방법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센터에 별도 연락을 취해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 국내 공항 및 국적 항공사에서는 모두 장애인 전용의 상담 전화번호나 상담 창구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 승객과 동일한 상담 창구를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나. 공항에서의 편의 제공

- ❖ 2017년 한국장애인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107명의 응답 장애인 중 67.2%인 72명이 공항 도착 및 공항 내 이동과 관련한 9개의 문항에서 하나 이상의 문항에서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안검색과 입출국 심사과정과 관련한 5개의 문항에서는 95명인 88.7%가 하나 이상의 문항에서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하였음.
- ❖ 항공사의 경우 승객이 체크인카운터 또는 사전에 약속한 지점에 도착하여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인계받은 이후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그 외의 구역에서 교통약자 승객은 개별적으로 이동하거나 공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
 - ▶ 현 체계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어디에 요청을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승객의 경우 공항 또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휠체어의 안전성과 안전장치에 대해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항 내 시설의 높이와 출입구, 폭 등에서 휠체어 이용에 무리가 없도록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함.
- ❖ 또한, 휠체어 배터리 충전 시설과 배터리 분리, 바퀴 공기주입 등에 필요한 간단한 수리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였음.
 - ▶ 한국공항공사 운영 공항의 경우 휠체어 배터리 충전 시설과 위치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 장애인과 동반하는 비장애인의 경우도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 수속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였음.

- ▶ 현재 국내 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용 패스트트랙에는 동반 3인까지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는 중에도 시각 장애인 등 주변 상황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보안검색, 출입국 심사 등의 과정에서 주변 상황의 설명과 함께 필요 내용에 대해 요구할 것을 요청했으며, 보안검색 등을 이유로 이동보조기기의 분리가 필요할 경우 필요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필요 이상의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요청함.
- ❖ 공항 내에서 버스 등을 통해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 경로와 수단에 대해 사전에 설명해주고, 화장실 이용 시에도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 ❖ 항공기 탑승시에는 가능한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탑승교, 휠체어 리프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장애인 승객을 직접 업거나 안아서 이동시키는 것을 삼가도록 요청함.
 - ▶ 현재 공항 구조상의 문제로 탑승교가 지원되지 않는 사천/군산/원주공항에는 공항공사에서 구입한 휠체어 리프트가 제공되고 있음.
 - ▶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항공사들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승객이 탑승하는 경우 탑승교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하거나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 하나 여의치 경우는 많은 경우 승객 동의하에 휠체어 자체를 인력으로 이동시키거나, 승객을 부축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 휠체어 리프트 사용 실태와 관련해서는 교통약자 승객의 승·하기를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는 경우 휠체어 리프트 작업 자체는 10~15분 정도가 소요되지만, 기타 조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응답하였음.
 - ▶ 때문에 항공기 운항의 정시성 및 항공기 기재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탑승교 사용 불가능 시 무조건 휠체어 리프트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항공사들의 의견이 있었음.
- ❖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속 또는 탑승 장소 변경 시 음성 안내 방송만으로 알림이

이루어져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광판이나 문자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수하물 수속 후 부적격 수하물 관련 호출 시에도 음성 안내 방송뿐만 모니터를 통한 문자 안내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 ❖ 시각장애인의 경우 항공사 직원의 도움이 종료되는 지점인 입국장에서 다음 이동을 위해 공항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직원 또는 안내 데스크 등으로의 인계를 요청함.

다. 기내서비스

- ❖ 기내용 휠체어를 구비하도록 하며 기내용 휠체어의 경우 장애인 승객이 이동 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전벨트와 팔걸이가 있는 휠체어를 구비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동시에도 안전벨트 착용 후 이동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함.
 - ▶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대부분 항공사의 기내용 휠체어에 안전벨트, 발판, 팔걸이, 벨크로 타입의 다리 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음.
- ❖ 장애인 승객의 여행 시 동반인이 있는 경우 동반인과 인접 좌석을 배정해줄 것과, 화장실 이용이 용이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함.
 - ▶ 국적 항공사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 항공사들은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좌석을 제외하고 동반인이 있는 경우 인접 좌석으로 배정하도록 하며, 장애가 있는 승객의 경우 화장실 이용이 용이하거나, 승무원이 육안으로 승객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배정한다고 응답하였음.
- ❖ 시청각 장애인과 같이 통상적인 기내 안전 브리핑을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유형에 맞춰 별도의 기내 안전 브리핑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 또한,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경우 기내 모니터를 통한 자막 또는 이동식 장치를 통한 비디오 안내 및 수어 방송 등을 요청함.
 - ▶ 국적 항공사의 경우 영상으로된 안전브리핑의 경우 자막을 통해 대체하며

별도의 수어 안전브리핑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승객과 의사소통 시에는 승무원의 입모양이나 메모패드 등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음.
- ❖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로 된 안전 브리핑 카드 및 승무원의 개별 안내를 통해 구명장비의 위치 등에 대해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함.
 - ▶ 대부분의 국적항공사들은 점자로 된 기내 안전 브리핑 카드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승객의 요청시 개별 안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그림 2-4> 시각장애이용 점자 안전 브리핑 카드

자료: 1) 아시아나항공 제공
2) <https://www.nocutnews.co.kr/news/4352964>

- ❖ 비행 중 승객에게 제공되는 날씨, 비행지연, 연결편 게이트 등에 대한 정보를 시·청각 장애인도 인지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방송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도 전달하도록 요청하였음.

라. 이동보조기기의 취급 및 운송

- ❖ 전동휠체어와 같이 항공 안전을 이유로 항공사에 사전에 문의가 필요한 이동 보조 기기 배터리에 관하여 항공사 홈페이지에 배터리 규격, 형식 등 명확한 기준을 공지하고, 사전 문의 시 빠른 응대가 가능하도록 담당 직원에게 취급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 대부분의 국적 항공사들은 예약시 전동 휠체어 운송을 위해 전동휠체어의 사이즈, 배터리 타입(건식, 습식, 리튬 등), 배터리 용량, 동반승객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요청하고 있음.

- ▶ 일부 국적 항공사의 경우 이동보조기기의 배터리 운송을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를 요구한다고 응답하였음.
- ❖ 리튬형 전동 휠체어와 같이 배터리의 탈·부착이 필요한 이동보조기기의 경우 항공사 직원이 배터리 탈·부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며, 실제 탈·부착 시 지원 요청함.
 - ▶ 국적항공사들은 승객에게 동반인이 있는 경우 동반인에게 분리를 요청하거나,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배터리 탈·부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직원이 배터리 탈·부착을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 장애인의 개인용 이동 보조 기기가 위탁 수하물로 운반되는 경우 도착지에서 가능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수하물 취급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하며, 운송 지연, 파손, 분실 시에는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 ▶ 대부분의 국적항공사들은 장애인용 이동 보조 기기의 경우에도 일반 수하물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항공수하물 관련 규정은 국내 상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따르고 있음.

제4절 울릉, 흑산 등 주요 도서 지역의 항공교통 서비스 여건 조사

1. 울릉도 교통 서비스 현황

가. 현 해운 교통 서비스 여건

- ❖ 울릉도는 그림과 같이 포항에서 217km 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음.



<그림 2-5> 울릉도와 주요 도시간 거리

자료: 울릉군청 인터넷 누리집, <http://www.ulleung.go.kr>, 울릉군 소개, 일반 현황, (2018. 11. 02)

- ▶ 육지 항은 강릉, 동해(목호), 울진(후포), 포항 항 4곳이며, 울릉도에도 도동, 저동, 사동항 3곳이 있음.
- ▶ 주중에는 주로 하루 1편 출항하며 주중, 주말과 연휴에는 2편 이상 출항하기도 함.
- ▶ 소요 시간은 길게는 3시간 20분에서 짧게는 2시간 30분임.
- ▶ 요금은 일반석 대인 기준으로 편도 54,000~68,500원 사이이며, 주말에는 할증요금을 적용하여 더 비싸게 받음. 주민은 5,000~22,350원 사이임.

<표 2-8> 울릉도 해운 교통 현황

운항사	노선	선박명	승선 정원 (명)	육지 출항	울릉 출항	운행 횟수	소요 시간	요금
대저해운	포항-울릉 (도동)	썬플라워호	920	09:50	15:30	1일 1왕복	3시간	우등/일반 70,700/64,500원 울릉 주민 22,350/7,000원
대저건설	포항-울릉 (저동)	썬라이즈호	442	08:50	14:00	1일 1왕복	3시간	일반 64,500원 울릉 주민 7,000원
시스포빌 시스포빌	강릉-울릉 (저동)	씨스타5호/씨스타11호	438	08:20	17:20	2대로 1일 1왕복, 주말 2왕복	3시간	우등/일반 59,000/54,000원 울릉 주민 14,600/7,000원
			449	08:20	14:50			
시스포빌 시스포빌	동해(목호)-울릉(사동, 도동)	씨스타1호/씨스타3호	442	08:50	13:00	2대로 1일 1왕복, 주말 2왕복	2시간40분 2시간50분	우등/일반 60,500/55,500원 울릉 주민 14,900/5,000원
			587	08:10	17:20			
제이에이치페리	울진(후포)-울릉(사동)	씨플라워호	450	10:00	14:30	1일 1왕복	2시간30분	우등/일반 66,000/60,000원 울릉 주민 11,800/7,000원
태성해운	포항-울릉 (사동) 포항-울릉 (저동, 동절기)	우리누리1호	448	09:10 (14:30)	14:00 (09:00)	1일 1왕복	3시간20분	일반 68,500원 울릉 주민 7,000원

자료 : 1. 울릉군 인터넷 누리집, <http://www.ulleung.go.kr>, 문화관광, 관광가이드, (2018. 11.02.)
 2. 시스포빌 인터넷 누리집, <http://www.seaspovill.co.kr>, (2018. 11.02.)
 3. 제이에이치페리 인터넷 누리집, <http://www.jhferry.com>, (2018. 11.02.)

- ❖ 울릉도 항로 연간 수송 인원은 약 80만 명(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며 이중 주민은 약 13% 정도임.
- ▶ 주요 노선은 포항-울릉이며 그 다음은 강릉-울릉, 목호-울릉 노선임.
- ▶ 결항 비율은 26.8%임. (결항횟수)/(결항횟수+운항횟수)

<표 2-9> 울릉 항로 수송 인원(2017년)

항로명	운항횟수	결항횟수	수송 인원(명)	일반(명)	도주민(명)
목호-울릉	356	62	123,762	121,578(98%)	2,184(2%)
강릉-울릉	526	119	180,966	177,332(98%)	3,634(2%)
포항-울릉	1,366	715	398,484	302,484(76%)	96,000(24%)
후포-울릉	521	118	96,837	93,824(97%)	3,013(3%)
계	2,769	1,014	800,049	695,218(87%)	104,831(13%)

자료 : 한국해운조합, 연안해운통계연보 2018, pp.49-52.

- ▶ 관광객 수는 '13년 415,180명으로 최고조였다가 '14년 267,01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후 점차 회복하여 '17년에 346,796명을 기록함.



<그림 2-6> 울릉도 관광객 수 추이

주 : 위의 연안해운통계연보의 일반인 수('17년 347,609인, 입도)와 관광객 수 다소 차이는 남.
 자료 : 울릉군 인터넷 누리집, <http://www.ulleung.go.kr>, 문화관광, 관광가이드(2018. 11. 02)

나. 향후 항공 교통 서비스 여건

- ❖ 울릉공항 개발은 '15년 기본계획 고시 후 '18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음. 개항 연도는 '22년이나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 ▶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비가 예상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추진할 것임.

❖ 울릉공항에 생길 노선은 수도권(김포공항)-울릉, 영남권(포항공항)-울릉, 호남권(광주공항)-울릉 등 3개 정도로 보고 있음.

- ▶ 김포-울릉 거리는 약 346NM⁷⁾, 운항 시간⁸⁾은 약 50분
- ▶ 포항-울릉 거리는 약 232NM, 운항 시간은 약 35분
- ▶ 광주-울릉 거리는 약 494NM, 운항 시간은 약 70분
- ▶ 호남권에서는 운항 시간이 길고 수도권이나 영남권에서는 1시간 내로 짧은 편임.

❖ 항공 요금 역시 항공사의 운항 비용(특히 기종에 따라 차이가 남)에 따라 다르게 추정됨.

- ▶ 김포-울릉 노선에서는 편도 약 8~13만 원 정도 되어야 수익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음⁹⁾.
-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관계자와의 간담회 결과, 항공 요금을 국내선 요금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 없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음¹⁰⁾.
- ▶ 초기 관광 요금 구조에 따라 항공 시장이 성장하고 축소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고 항공사 수익 구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울릉 항공 시장은 잠재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2. 흑산도 교통 서비스 현황

가. 현 해운 교통 서비스 여건

❖ 흑산도는 목포에서 서쪽으로 뱃길 기준 92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약 2시간 정

7) 1NM(해리, nautical mile)=1.852km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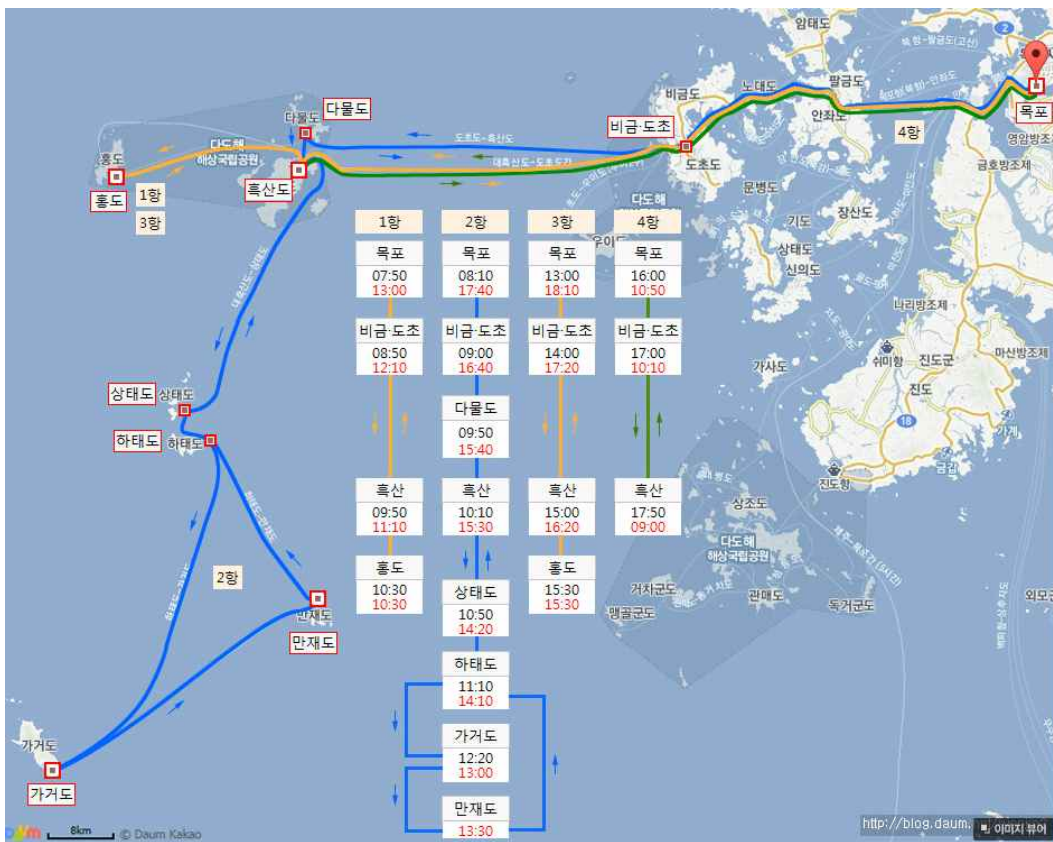
8) 운항시간은 기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며 위의 시간은 터보프롭(Q400) 항공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

9) 2009년 당시 항공사 운영 경험자에게 의견을 받은 것이며, 좌석 수가 작은 항공기(19인승)가 요금이 더 비쌌,

10) 한국개발연구원, 201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울릉도 공항 건설사업, 2013. 3., p.262.

도 결림.

- ▶ 통상 하루에 4편 목포항을 출발하며 운항 선사는 남해고속과 동양고속웨리 임. 이들은 각각 하루 2편을 출발하며 매일 번갈아 가면서 운항함. 오늘 가, 나, 다, 라 4편 중 a사가 가, 다 편, b사가 나, 라 편을 운항하면 내일은 a사가 나, 라 편, b사가 가, 다 편을 운항함.
- ▶ 관광객들은 주로 홍도와 흑산도에 1박 2일 또는 2박 3일 여정으로 방문함.



<그림 2-7> 흑산도, 홍도 지역 선박 운항 정보

주 : 2015년 4월~7월 시점의 상황으로 2018년 10월 현재도 같음.

자료 : 류진창의 똑딱이 여행 블로그,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azTO&article no=2599, (2018. 11. 21.)

- ▶ 2개 선사는 3종류의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요금과 소요 시간은 동일함.
- ▶ 운항 선박은 남해고속이 5대, 동양고속웨리가 3대를 투입하고 있음.

<표 2-10> 흑산도와 홍도 해운 교통 현황

운항사	선박 명	승선정원 (명)	노선	소요 시간	요금
남해고속	남해프린스	359	1. 목포-비금·도초-흑산-홍도, 하루 2편 2. 목포-비금·도초-흑산(정박), 하루 1편 3. 목포-비금·도초-다물도-흑산-상태도-하태도-가거도, 하루 1편	목포->흑산: 2시간 목포->홍도: 2시간 40분	목포->흑산: 일반 34,300원 목포->홍도: 일반 42,000원
	남해퀵	349			
	남해 엔젤	351			
	핑크돌핀	250			
	뉴엔젤	337			
동양고속 훼리	동양골드	375			
	파라다이스	375			
	뉴골드스타	377			

자료 : 1. 남해고속 인터넷 누리집, <http://www.namhaegosok.co.kr>, (2018. 11. 21.)
2. 동양고속훼리 인터넷 누리집, <http://www.ihongdo.co.kr>, (2018. 11. 21.)

- ❖ 목포-홍도(가거도) 항로의 연간 수송 인원은 '17년 약 72만 명이며 이중 주민은 약 23% 정도임.
- ▶ 항로는 목포-비금·도초-흑산-홍도(129km, 2시간 30분), 목포-비금·도초-다물도-흑산-상태도-하태도-가거도(233km, 4시간) 2가지 종류임.
- ▶ 수송 인원은 목포에서 출항하면서 각 기항지별로 승선객 수, 반대 방향으로 홍도 또는 가거도에서 출항하면서 각 기항지별로 승선객 수를 더한 것임.

<표 2-11> 목포-홍도(가거도) 항로 운송객 변화

	2013	2014	2015	2016	2017
일반	652,161	502,845	522,679	525,702	556,067
도서민	182,371	188,622	180,325	178,928	167,408
합계	834,532	691,467	703,004	704,630	723,475

자료 : 한국해운조합, 연안해운통계연보 각 연도.

- ❖ 목포-홍도(가거도) 항로의 결항률을 살펴보면 '17년 운항횟수 3,263회 결항 횟수 662회로서 16.9%임.

나. 향후 항공 교통 서비스 여건

- ❖ 흑산공항 개발은 '15년 기본계획 고시 후 '18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음. 하지만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공원 변경 승인이 나지 않아 중단된 상태임.
 - ▶ 계획상으로는 '18~'20년 간 건설 공사를 하고 '21년에 개항하는 것으로 함.
- ❖ 흑산공항이 개항하면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에 노선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 흑산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1,200미터로서 울릉공항과 동일하며 취항하는 항공기 역시 울릉공항 취항 항공기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함.
- ❖ 흑산공항의 노선별 운임은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우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용한 인당 운항 비용으로서 가늠할 수 있음. 항공사들은 이 보다는 더 높게 요금을 책정할 것임.
 - ▶ 흑산-수도권(김포): 42,823원/인
 - ▶ 흑산-호남권(광주): 25,694원/인
 - ▶ 흑산-영남권(김해): 42,823원/인
 - ▶ 수도권과 영남권은 흑산공항까지의 비행시간이 약 50분으로서 김포~울릉 노선과 비슷함. 김포~울릉 노선에서는 편도 8~13만 원 정도라야 수익이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제3장 해외 교통약자 서비스 기준 및 사례 분석

제1절 해외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기준

제2절 도서 및 오지지역 항공교통서비스 사례

제3장 해외 교통약자 서비스 기준 및 사례 분석

제1절 해외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기준

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 ❖ 1988년에 개최된 제26차 ICAO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항공 서비스와 공항 시설에의 접근에 대한 “국제 표준과 권고사항 및 절차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Procedures)”가 도입됨.
- ❖ 국제민간항공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시카고 조약) 부속서(Annex) 9에서는 여객 및 화물의 출입국 간소화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교통약자(person with disabilities)의 정의 규정과 권고사항(Recommended Practice)을 명문화함.
 - ▶ 부속서 9는 운송 수단을 사용할 때 물리적인 무능력(감각이나 운동 능력의 저하), 지적 결함, 나이, 질병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이동성이 감소한 사람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자를 교통약자로 정의함.
 - ▶ 이에 따라 장애인(persons with disabilities)에게 일반적인 항공 승객이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도움을 제공할 것, 출발지 공항에 도착한 이후부터 도착지 공항을 떠나는 시점까지 모든 항공운송 과정에서 충분히 승객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각 단계별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할 것, 장애를 가진 승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할 것, 항공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측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음.

- ▶ 장애를 가진 승객의 공항시설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휠체어 탑승장비를 비롯한 각종 설비와 장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것, 시각이나 청각 장애를 가진 승객을 위한 비행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할 것, 항공기 출입구와 장애 승객의 좌석을 가능한 가까운 곳에 배치할 것, 공항 외부 주차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장애를 가진 승객을 배려할 것, 공항 내 환승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장애 승객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 그리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용 보조기구는 필요한 공간, 중량제한 및 안전 기준이 허용되는 한 기내에 무료로 휴대할 수 있게 하거나, 우선 수하물(priority baggage)로 운송되도록 권고함.
 - ▶ 항공기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계약국 내의 항공사가 새로운 항공기를 신규도입 하고자 할 때에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시설과 장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예: 항공기 형태, 크기, 접이식 팔걸이 설치여부, 기내용 휠체어 이용 가능 여부, 교통약자용 화장실 설치여부, 각종 조명이나 표시의 편의성 등), 이동보조 기구의 기내 보관, 장애인 보조 동물의 수송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 또한 교통약자인 승객 자신의 안전이나 다른 승객의 쾌적한 여행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항공운송인은 교통약자의 여행을 위한 동행자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동행자는 할인된 운임 적용하도록 권고함.
- ❖ ICAO는 지난 2013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매뉴얼(ICAO Doc 9984, Manual on Access to Air Transport by Person with Disabilities)을 제정하여 보급하였음.¹¹⁾
- ▶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항공운송절차에서 장애를 가진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공항 운영자 및 항공운송인은 교통약자를 위한 업무규정을 마련할 경우 교통약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하고, 항공운송 중에 도움이 필요한 교통약자에게는 전문적이면서도 빈틈없는(seamless) 서비스를 제공할 것, 항공안전이 아닌 다른 이유로 교통약

11) 2006년 UN장애인 인권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ts Optional Protocol, A/RES/61/106)의 실행수단으로 2013년 최초 제정됨.

자의 운송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을 거절할 수 없고,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징구하지 않아야 하고, 국가의 법규범으로서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인의 책임사항을 규정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음.

- ▶ 이 외에 Doc 9984는 항공운송 종사자에 대한 교육, 항공여행 개시 전, 공항이용, 공항시설, 보안검색과 출입국심사, 항공기 탑승과 하기, 항공사의 기내서비스, 항공기, 공항연계 지상교통, 불만사항 접수와 처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음.

2.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 IATA는 교통약자의 항공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항공여행을 증가시키고, 시설 이용과 승객 수용 등의 표준화를 위해 결의안 Resolution 700 Acceptance and Carriage of Incapacitated Passengers를 제정함.

- ▶ 이 결의안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항공교통을 이용한 여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시키고, 항공여행을 위한 시설과 승객 응대에 관한 표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음.
- ▶ 특별한 도움(Special assistance)이 필요한 교통약자를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음. 즉,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으로 장애의 등급을 나누고 각 장애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 함. 또한 영구적인 장애가 아닌 일시적인 장애로 항공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승객도 교통약자의 범위에 포함.

LEGL: 왼발 전체에 깁스를 한 승객

LEGR: 오른발 전체에 깁스를 한 승객

LEGB: 양쪽 발 전체에 깁스를 한 승객

MEDA: 회사의 사전승인 (Medical clearance)이 필요

OXYG: 운항 중에 좌석이나 들것에서 산소공급을 받아야 하는 승객

STCR (Stretcher Passenger): 들것으로 수송되는 승객

WCHR1 (Wheelchair - R for Ramp): 혼자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좌석 간 이동은 할 수는 있으나 항공기에서 먼 곳 (램프, Finger dock, 이동식 라운지 등)까지 이동을 위해서는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

WCHS1 (Wheelchair - S for Steps):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지만 스스로 좌석 간 이동은 가능하고 항공기에서 먼 곳 (램프, 이동식 라운지 등)까지 이동을 위해서는 휠체어가 필요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운반이 필요한 승객

WCHC1 (Wheelchair - C for Cabin Seat): 보행이 완전 불가능한 승객. 항공기/이동식 라운지로 이동시 휠체어가 필요하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운반이 필요한 승객

BLND (Blind Passenger): 시각교통약자 승객

DEAF (Deaf Passenger): 청각교통약자 승객

- ▶ 운송계약 체결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의사 소견서(medical clearance), 좌석예약 절차, 발권, 공항에서의 응대 등 IATA의 회원항공사들이 교통약자를 운송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표준 업무내용들을 규정함.

3. 미국

- ❖ 미국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재인 공항시설과 달리, 사기업체가 운영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도 장애인 차별금지과 같은 공공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음.
- ❖ 이에 관한 미연방 대법원 판례¹²⁾는 항공운송업이 공공재인 항공관제, 공항시설 등을 이용하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수혜하고 있으므로 공공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사기업체 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차별금지과 같은 공익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힘.
 - ▶ 이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차별금지를 위한 개별입법 제정됨.

12) 477 U.S. 597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v. Paralyzed Veterans of America (Decided June 27, 1986).

- ❖ 미국에서 항공 교통약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은 1986년 ACAA (The Air Carrier Access Act of 1986)¹³⁾로 볼 수 있음.
 - ▶ 이 법은 상업적 항공운송인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함.
 - ▶ 어떠한 항공사도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 공항이나 기내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 항공권 구매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별을 금지함.

- ❖ 위와 같은 의회입법에 기초하여 미국 교통부(DOT)는 행정입법의 형태로 1990년 항공운송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ir Travel, 14 CFR Part 382)¹⁴⁾을 제정함.
 - ▶ 이 규정의 제정 당시 항공사들은 재정적인 부담을 이유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으나 점진적으로 교통약자 보호에 관한 인식의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큰 저항 없이 항공업계에서 시행되고 있음. 이후 ACAA의 적용범위를 외국 항공사로 확대하는 개정¹⁵⁾에 따라, CFR도 미국 항공사 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음.
 - ▶ 이러한 CFR규정의 목적은 ACAA의 시행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책임범위를 정의하고, 항공운송에 있어서 신체 및 지체 장애와 같은 이유로 승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데 있음.
 - ▶ 이 규정은 미국 영토에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인에게 적용됨.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항공사와 그 직원, 항공사의 대리인(agent, 여행사 등), 장애를 가진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의 계약업체, 장애를 가진 승객에게 시설, 서비스, 다른 편의를 제공하는 업체와 그 직원 등이 해당.
 - ▶ 이 규정의 보호객체는 하나 이상의 주요한 일상 활동을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상당히 제약(substantially limit)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 그러한 장애의 기록을 가진 자, 그러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

13) Title 49, Section 41705 of the U.S. Code.

14) CFR(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은 의회가 아닌 행정부가 제정한 행정입법에 해당하며 법에서 일일이 규율할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음.

는 자가 해당.

- ▶ 이 규정의 적용대상인 “장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상태 또는 질병이 일상 활동을 상당히 제약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다만 어느 정도의 장애가 일상 활동을 상당히 제약하는 정도인지 여부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신체적 장애는 신경계, 근골격계, 특정 감각기관, 발성기관을 포함한 호흡기계, 심혈관계, 생식기계, 소화기계, 비뇨기계, 혈액 및 림프계, 피부, 그리고 내분비계의 신체조직 중 하나 이상에 영향을 주는 생리학적 이상 혹은 그러한 상태, 비정상적인 외형 또는 해부학적 결함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신체적 장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시각적, 언어적, 청각적 장애, 뇌성마비, 간질, 근이형성증, 다발성 경화증, 암, 심장 질환, 당뇨, HIV, 약물 중독 등을 들 수 있음. 또한 정신적 장애로는 정신지체, 기질성뇌증후군, 감정적 또는 정신질환, 특정 학습장애와 같은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가 포함됨.
 - ▶ 이와 같이 미국의 연방규정은 관련 법규범의 토대위에서 형성되어 협의를 통해 제정 및 개정 되었고,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분류 등 장애를 가진 승객이 항공교통에서 마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 14 CFR Part 382의 총칙규정(General Provisions) : 항공운송에 있어서 장애 등을 이유로 승객의 차별을 금지함.
- ▶ 총칙규정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차별금지 조항을 살펴보면, 규정은 항공운송인이 장애를 이유로 승객을 차별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음. 그리고 항공운송인은 이 규정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장애를 가진 승객을 항공운송 계약체결 혹은 계약이행을 거부할 수 없음. 이러한 원칙은 교통약자 승객에게 항공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운송인은 물론이고, 그러한 운송인의 계약자, 대리인 등의 업체와 그 직원들도 규율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 14 CFR Part 382의 시설운영 규정(Requirement Concerning Facilities) : 항공기 및 공항에서의 시설에 관한 내용을 규정
- ▶ 항공기내 시설에 관한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접이식 팔걸이, 기내용 휠체어의 적재 공간 확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공항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애를 가진 승

객의 접근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실제로 이용편의성이 제고되어야 함.

- ▶ 그 밖에 공항시설과 같은 공공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모범인 ACAA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 예컨대 공항의 항공기 탑승구에서 항공기 탑승까지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함.
- ❖ 14 CFR Part 382의 서비스운영 규정(Requirement Concerning Services) : 장애를 가진 승객이 항공교통 이용 시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하여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규정
 - ▶ 운송 거절: 항공운송인은 개별 항공편에 장애를 가진 승객의 최대 탑승숫자를 제한할 수 없음. 또한 항공사는 장애를 이유로 승객에게 운송을 거절하지 않아야 함. 승객의 장애가 외관상 혹은 비자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지 않아야 함. 다만 항공안전상의 이유, 연방항공규정(FAR)을 위반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러한 운송계약의 이행을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음. 항공운송인은 서면으로 비행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이 미치는 사유 등 해당 승객의 운송을 거절한 특정 이유를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명시하여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함.
 - ▶ 사전 통지 요구: 항공운송인은 장애를 가진 승객에게 항공여행을 위한 계약 체결 당시에 자신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없음. 그러나 교통약자의 원활한 항공여행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정한 요구사항에 관해서는 미리 항공운송인에게 사전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사전통지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48시간 또는 72시간 전까지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1시간 먼저 탑승수속을 마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사전통지가 필요한 서비스로는 의료용 산소발생기 제공, 인큐베이터의 수송, 산소호흡기의 연결, 들것으로 여행해야 하는 승객의 수송, 전동휠체어의 수송, 전동 휠체어 배터리의 포장운송, 좌석조정, 기내휠체어의 제공 등이 해당. 만약 승객이 이 부분에 사전고지나 수속 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공운송인은 운항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제공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서비스, 장비, 좌석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사전고지를 한 승객의 운항편이 취소 등의 이유로 다른 항공사로 바뀌게 된다면, 최초 항공사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운송의무를 승계하는 항공사에게 정보제공 등

의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 보호자: 기본적으로 항공운송인은 장애를 가진 승객에게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할 수 없음. 다만, 다음과 같이 안전에 필수적인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음. 즉, ① 들것이나 인큐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교통약자, ② 연방규정(FAA)나 승무원의 안전 지시를 이해할 수 없는 지적장애를 가진 교통약자, ③ 스스로 배변이 불가능한 이동 장애를 가진 교통약자, ④ 중증의 시청각 장애를 가진 교통약자가 이에 해당. ②, ③, ④의 경우, 장애를 가진 자가 보호자 없이 스스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의사에 반하여 항공운송인이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항공운송인은 보호자의 항공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만약 항공운송인이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좌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혹은 예약이 확정되었으나 초과판매 등의 사유로 좌석을 받지 못한 교통약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탑승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상을 받을 수 있음.
- ▶ 좌석배정: 항공사는 미연방항공청(FAA)의 안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장애를 가진 교통약자가 장애를 이유로 특정한 좌석을 요구하는 것에 관하여 거부할 수 없음.
- ▶ 이동보조 동물: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조하는 서비스 동물과 좌석 배정을 함께 받지 못한 경우, 항공운송인은 해당 교통약자 승객에게 항공여행 과정에서 그 동물과 함께 이동하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 항공기 좌석: 고정된 팔걸이로 인해 교통약자가 쉽게 이동할 수 없을 경우 팔걸이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좌석을 그 승객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를 가진 승객의 옆 좌석에 보호자가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 이는 교통약자의 식사보조 등 항공운송인 측에서 제공하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 ▶ 탑승 및 하기 시의 도움: 항공운송인은 교통약자의 항공기 탑승 및 하기 시에 교통약자가 요청을 하거나, 혹은 항공운송인 직원의 제안에 교통약자가 승낙하였을 경우에 도움을 제공하여야 함. 이때 교통약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직원이 승객의 탑승이나 하기를 돕는 과정에서 교통약자 승객을 직접 안아서 옮길 수는 없음. 다만 항공안전을 위한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일 때에는 교통약자 본인 혹은 그 보호자의 명

시적인 동의를 있을 것을 전제로 그러한 이동은 허용됨.

- ▶ 공항 내 이동에 관한 도움: 교통약자 승객의 공항 내 이동을 보조하는 항공운송인의 직원은 교통약자 승객을 휠체어가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30분 이상 방치할 수 없음.
- ▶ 항공운송인의 도움제공의 범위: 항공운송인이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항공기 탑승 및 하기 시의 도움제공, 항공기 내에서 기내식을 먹기 위해 포장을 열거나 음식을 확인시키는 등의 식사 준비, 화장실 이용을 위한 기내 이동 보조, 이동보조 기기를 비롯한 수하물의 적재, 회수 등에 해당됨. 이때 항공운송인 직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교통약자의 식사행위 자체를 보조하거나, 화장실 내부에서 그 이용에 도움을 주거나,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보조할 필요는 없음.
- ▶ 탑승장비: 항공운송인은 공항과 협조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항공기 탑승 및 하기 시에 승강기, 리프트 혹은 다른 보조장비를 이용하여 도움을 제공하여야 함.
- ▶ 이동보조 기기: 항공운송인은 배터리가 포함된 의료용 장비(산소 호흡기 등)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교통약자의 항공여행을 거부할 수 없음. 그리고 항공운송인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통약자가 본인의 항공기 내 좌석 근처에 이동보조 기기를 적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 이때 항공운송인은 자사의 기내 수하물 정책에 따른 교통약자 승객이 사용하는 이동보조 기기의 탑재 수량을 제한할 수 없음. 또한 항공운송인은 교통약자 승객이 사용하는 휠체어를 수하물로 부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 전동휠체어를 비롯한 이동보조 기기의 운송에 있어서 분해가 필요한 경우 항공운송인 혹은 그와 계약한 업체의 직원은 해당 장비의 분해 및 재조립을 담당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 항공여행 정보의 제공: 항공운송인은 교통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통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여야 함. 그러한 내용으로는 항공기의 기종, 항공 운항정보, 좌석의 위치 및 접이식 팔걸이의 설치 여부, 항공기 이용과 관련한 제한사항, 적재 시설 이용을 위한 안내사항, 기내용 화장실의 이용 등이 해당됨.
- ▶ 기내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 항공운송인은 교통약자 승객을 위하여 기내 안

전 브리핑을 실시하여야 함. 이때 정보제공 방법은 시각 혹은 청각 등 교통약자의 장애유형에 맞게 적절히 선택되어야 함.

- ▶ 보안 검색: 교통약자의 항공여행을 위한 보안 검색 시에 교통약자도 다른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함. 다만 이동보조 기기의 휴대를 이유만으로 특별한 절차의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 의료용 진단서: 항공운송인은 교통약자가 승무원의 안전지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을 이유로 그 교통약자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없음. 또한 교통약자의 전염병 보균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할 수도 없음. 다만 이러한 경우 다른 승객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서는 예외적으로 의료용 진단서 제출 혹은 나아가 탑승을 거부할 수도 있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항공운송인은 교통약자 승객에게 의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즉, 항공여행 중에 들것 혹은 인큐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는 교통약자, 비행 중 의료용 산소 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교통약자, 교통약자의 상태가 항공여행을 통해 악화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 ▶ 행정적 조치: 항공운송인이나 그 계약업체 직원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응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보고서 작성 및 공표 등에 관한 내용은 내부 규정으로 정립되어야 하고, 항공운송인 및 관련 회사는 그러한 규정에 맞게 모든 직원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항공운송인은 자신이 운항하는 공항에 하나 이상의 고객불만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Customer Relation Officer)를 설치하여야 함. 항공운송인은 교통약자로부터 제기된 불만사항을 그 교통약자의 장애유형, 불만의 종류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은 물론, 매년 불만 및 처리내용을 요약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4. EU

- ❖ 유럽연합(EU) 지역에서는 항공여객에 관한 권리보호 법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잘 발달되어 있음. 대표적인 규정으로 Regulation EC 261/2004가 있는데, 이는 예정된 항공편에 초과판매로 인한 예약승객의 비자발적 탑승거부, 항공편 운항 취소나 지연에 따른 항공사의 보호의무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 ❖ 위와 같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체계의 연장선상에서 EU는 항공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2006년 7월에 제정된 Regulation EC No. 1107/2006¹⁵⁾을 두고 있음.
- ▶ 이 규정은 유럽민간항공회의(European Civil Aviation Conference)가 ICAO 부속서 9의 규정에 기초하여 입법하였음. 이 규정은 항공여행을 희망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많은 이동 제약자들에게 일반적인 승객들과 비교할 때 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항공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이동선택의 자유 및 비차별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음.
- ▶ 규정은 일반적인 규정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이 편제되어 있음. 즉, 제1조의 목적과 적용범위, 제2조의 각종 정의규정, 제3조의 운송거절의 방지, 제4조 계약변경, 특별조건, 정보제공, 제5조 도착 및 출발 지점의 지정, 제6조 정보의 전달, 제7조 공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제8조 공항에서 도움을 줄 의무, 제9조 교통약자 보호서비스의 품질 기준, 제10조 항공운송인에 의한 도움, 제11조 교육훈련, 제12조 휠체어를 비롯한 이동 보조장비의 손상에 따른 배상, 제13조 면책금지, 제14조 회원국 내 전담기구의 설치, 제15조 불만사항 처리, 제16조 과징금, 제17조 보고서 발간.
- ▶ 특히 교통약자의 탑승거절 등을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동권에 관해 규율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EU지역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운송인 및 해당 지역의 공항에 적용이 되고 EU소속 국가가 자국의 국내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Regulation의 취지와 상반되는 내용을 입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 교통약자에 대한 정보를 인지한 사업자는 그 사실을 공항과 실제 운송인에게 알리고 관련된 정보를 교환할 의무를 가지는 것을 시작으로, 교통약자의 항공여행 과정에서의 이동을 도울 의무, 직원들에 대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응대와 서비스제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규정함.
- ▶ 이동시 발생한 파손 또는 멸실된 이동장비와 보조 장치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함은 물론이고, 파손된 이동보조 기기를 대체하기 위한 장비의

15) 유럽연합의 Regulation은 가장 상위의 법률에 해당하지만 EU조직의 특성상 실행수단(implementation measures)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은 별도로 보유하지 않고 개별 국가 국내법에서 규율함.

대여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 ▶ 보조건의 탑승, 위험물 정책으로 인한 금지사항, 공간의 제약으로 인한 이동 기구의 수송에 관해 교통약자가 그 사실을 항공운송인에게 미리 공지할 것에 관해서고 규정함.
- ❖ EU의 경우 해당 규정에서 공항운영자의 지원 업무 범위와 항공사의 지원 업무 범위를 규정해 놓았으며, 공항 내에서의 교통약자 이동 지원은 공항운영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함

<표 3-1> EU 체약국 내 공항운영자가 제공해야 하는 교통약자 지원 업무

EC No.1107/2006에서 공항운영자가 제공해야 하는 지원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터미널 내·외부의 지정된 지점에 도착한 승객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조정 및 지원 - 지정된 지점에서 체크인 카운터까지 이동 - 체크인 및 수하물 위탁 -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기로 이동을 위한 세관 및 보안 절차 - 필요한 경우 해당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위해 리프트, 휠체어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 - 항공기 문에서 좌석까지 이동 - 항공기 내 수하물 보관 및 회수 - 항공기 내 좌석에서 항공기 문까지 이동 - 필요한 경우 해당 승객의 항공기 하기를 위해 리프트, 휠체어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 - 항공기에서 수하물 수취대 이동 및 수하물 수취, 이민 및 세관 통과 절차 - 수하물 수취구역에서 지정된 지점으로 이동 - 환승시 연결 비행편까지 (필요시 터미널 간 이동 지원) - 필요시 화장실로 이동 -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과, 항공기 탑재 가능 구역을 고려해 48시간 전에 신고된 전동휠체어를 포함한 모든 이동 보조 장비의 지상 취급 - 손상되거나 분실된 이동성 장비의 임시 대체 - 보조건의 지상 취급 - 항공편 이용을 위한 필요 정보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

- ❖ 공항운영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 3자에 의해 수행되도록 계약 관계를 수립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을 위한 추가 부담금을 공항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 ▶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의 제8조에서 근거를 두어 공항운영자에게 공항

에서의 지원 의무를 부과하였음.

- ❖ 제8조에 근거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는 공항을 이용하는 전체 여객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그 부과 금액의 정도는 아래 표와 같음.

<표 3-2> EU 공항의 여객당 교통약자 승객 지원 서비스 부과 비용

공항명	Passenger with reduced mobility(PRM) Charge (2013년 기준)
Heathrow	- 출발여객당 부여, 공항이용에 대한 출발 30시간 전 사전 통지를 요청하고 사전 통지 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 - 0.7 EUR(65% 이상인 항공사) - 1.56 EUR(50~64.99% 인 항공사) - 3.22 EUR(50% 미만인 항공사)
Gatwick	- 출발여객당 부여하며, 공항이용에 대한 출발 전 사전 통지 시간에 따라 차등 부과 - 0.29 EUR(24시간 이전) - 0.48 EUR(2시간~24시간) - 1 EUR(2시간 이내)
Manchester	- 0.19 EUR(모든 도착 여객) - 0.39 EUR(모든 출발 여객)
Schiphol	0.3 EUR(모든 출발 여객)
Charles de Gaulle	0.71 EUR(모든 출발 여객)
Munich	0.29 EUR(모든 출발 여객)
Spain	0.61 EUR(모든 출발 여객)
Fiumicino	0.9 EUR(모든 출발 여객)
Dublin	0.47 EUR(모든 출발 여객)
Chopin	0.18 EUR(모든 출발 여객)
Lisbon	0.5 EUR(모든 출발 여객)
Copenhagen	0.62 EUR(모든 출발 여객)
Stockholm	0.3 EUR(모든 출발 여객)
Zurich	0.75 EUR(모든 출발 여객)
Brussels	0.43 EUR(모든 출발 여객)

자료: <http://www.reducedmobility.eu/20141122536/The-News/cost-of-assistance-for-the-disabled-at-european-airports-revealed.html>

제2절 도서 및 오지 지역 항공 교통 서비스 사례

1. 유럽

가. 관련 제도

- ❖ 유럽 의회는 규정(EEC Regulation) 2408/92¹⁶⁾의 4항에 정부가 필수 항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 의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를 규정하고 있음.
- ❖ 정부는 지정된 노선에 항공사에 공공 서비스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¹⁷⁾
 - ▶ 지역의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소규모 노선: ‘소규모’의 정량적인 기준은 없음. 그러나 경험상 연간 10만 명 이상이면 보통 소규모 노선으로 보지 않음.
 - ▶ 오지 또는 개발 지역 내의 공항을 포함하는 노선: 오지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수도권나 큰 도시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을 말함.
- ❖ 이 서비스를 제공할 항공사가 없다면 정부는 이 노선을 단일 항공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PSO에 대한 보상으로 항공사에게 재정적인 보상을 할 수 있음.
 - ▶ 여러 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는 개방 노선도 있음.

16) EU 공식 웹사이트, EU Publication 사이트, <https://publications.europa.eu>, 2018. 11. 13. 다운로드 받음.

17) Cranfield University, Quarterly Report Q2 2007 for DG TREN

<표 3-3> 유럽 의회 규정 2408/92의 관련 조항

원문	번역
<p>Article 4</p> <p>1. (a) A Member State,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Member States concerned and after having informed the Commission and air carriers operating on the route, may impose a public service obligation in respect of scheduled air services to an airport serving a peripheral or development region in its territory or on a thin route to any regional airport</p> <p>(b) The adequacy of scheduled air services shall be assessed by the Member States having regard to:</p> <p>(i) the public interest;</p> <p>(ii) the possibility, in particular for island regions, of having recourse to other forms of transport and the ability of such forms to meet the transport needs under consideration;</p> <p>(iii) the air fares and conditions which can be quoted to users;</p> <p>(iv) the combined effect of all air carriers operating or intending to operate on the route.</p> <p>1. (c)~(k), 2~4항 생략</p>	<p>제4조</p> <p>1. (a) 회원국은 관련 다른 회원국들과 협의한 후 그리고 위원회에 통보를 한 후 그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사에게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주변 지역 또는 개발 지역에 서비스하는 공항 또는 지역 공항 소규모 노선에 정기 항공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공 서비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p> <p>(b) 정기 항공 서비스의 적정성은 회원국이 다음의 사항과 관해 평가한다.</p> <p>(i) 공공 이익</p> <p>(ii) 특히 섬 지역, 다른 형태의 운송 수단에 의할 가능성과 그러한 수단이 고려되는 운송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능력</p> <p>(iii) 항공 요금과 이용자에게 제시될 수 있는 조건</p> <p>(iv) 그 노선에 운항 중인 모든 항공사 또는 운항하려는 항공사의 결합 효과</p>

자료 : EU Publication 사이트, <https://publications.europa.eu>, 2018. 11. 13. 다운로드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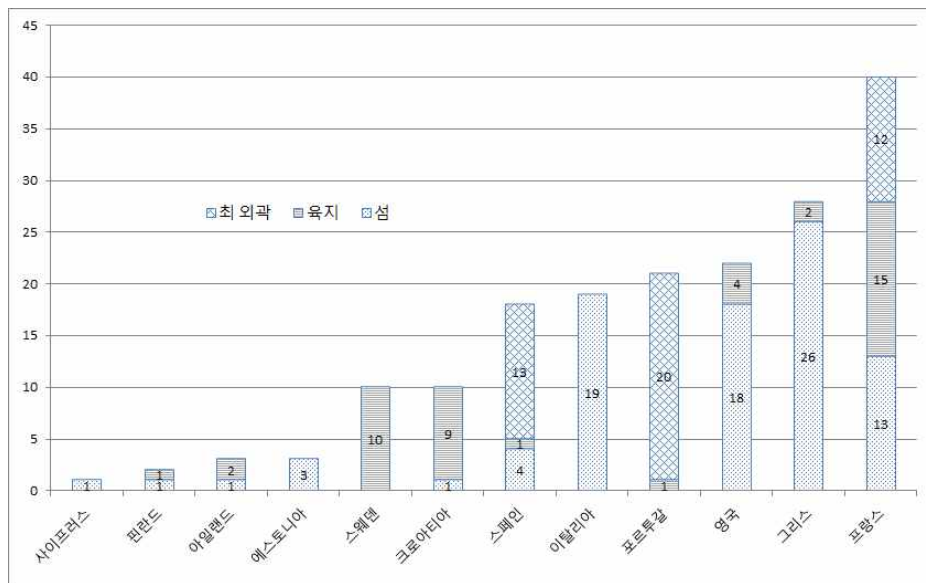
- ❖ 유럽 의회는 기존의 규정을 통합한 Regulation (EC) No 1008/2008, on common rules for the operation of air services in the Community (Recast)을 제정함.
- ▶ 1992년에 제정된 항공사 면허, 노선, 요금과 요율 규정을 대체.
- ▶ (EEC) No 2407/92 of 23 July 1992 on licensing of air carriers, (EEC) No 2408/92 of 23 July 1992 on access of Community air carriers to intra Community air routes, (EEC) No 2409/92 of 23 July 1992 on fares and rates for air services.

❖ PSO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다음의 4가지 항목을 살펴보고 판단함.

- ▶ 경제 및 사회 개발 요구에 비례
- ▶ 대안 수단의 부 적합성
- ▶ 현재의 항공 요금과 조건
- ▶ 현 항공 운송 공급의 결합 효과

나. PSO 현황¹⁸⁾

- ❖ Regulation (EC) No 1008/2008에 의해 만들어진 PSO 노선은 179개이며 13개의 회원국에 분포되어 있음.
- ❖ 프랑스는 가장 많이 PSO노선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570만 명을 운송하고 있음.
- ❖ 아일랜드는 국내선에서 PSO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이름.
- ❖ 136개의 PSO노선이 공공 기관에 의해 보조를 받음. 연간 최소 3억 유로.



<그림 3-1> 유럽 국가별 PSO 노선 수

주 : 아래내용을 그래프 재구성. 총 177개 노선이며 위에 언급한 179개 노선과 차이 존재
 출처 : European Commission, Mobility and Transport, PSO Inventory table,
https://ec.europa.eu/transport/modes/air/internal-market/ps0_en, (2018. 11. 13.)

18) 출처: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Notice of 8.6.2017 Interpretative guidelines on Regulation (EC) No 1008/2008 - Public Service Obligations (PSO), p.4

- ❖ 예로 영국의 Logan air에서 운항하는 PSO 노선은 <표 3-4>와 같음. 큰 섬인 Kirkwall을 기반으로 Westray, Papa Westray, North Ronaldsay, Sanday, Stronsay을 연결하고 있음. 모두 단독으로 운항하고 있는 제한된 노선임.
 - ▶ Kirkwall이란 섬에서 주변 작은 섬들을 몇 개 들렀다 오는데 운항 시간은 한 시간 내임.
 - ▶ 항공기는 BN Islander aircraft 기종으로서 승객 좌석 수는 8개임.
- ❖ Kirkwall 섬과 주변 여러 섬 간에는 선박도 운항하고 있음¹⁹⁾.
 - ▶ Orkney Ferry사는 Kirkwall과 Eday, Sanday, Stronsay, Eday, Westray, P. Westray를 운항함.
 - ▶ 하루에 1~2편, 며칠마다 1편 정도 운항하고 있음. Kirwall을 출발하여 3군데 들리면 약 4시간, 한 군데 들리면 약 3시간 만에 돌아오는 여정임.
 - ▶ 요금은 Kirkwall에서 Eday, Sanday 등 모두 동일함. 성인 12,314원(£8.35), 왕복 24,629원(£16.70)임²⁰⁾.

19) 출처: Orkney Ferry 인터넷 누리집, <http://www.orkneyferries.co.uk>, (2018. 11. 13.)

20) 2018년 10월 평균 환율: 1파운드=1,474.79원, 매매기준율, KEB하나은행, <https://www.kebhana.com>

<표 3-4> 영국 Loganair의 PSO 운영

항목	내용																																																																																																																																																																																				
노선도	 <p>주: 영국의 북부 지역이며 PSO 노선은 왼쪽 상단 네모 안에 있는 노선임.</p>																																																																																																																																																																																				
스케줄	<table border="1" data-bbox="630 799 1143 1271"> <thead> <tr> <th colspan="2"></th> <th colspan="7">Monday</th> </tr> <tr> <th>Flight Number</th> <th>LM</th> <th>700</th> <th>702</th> <th>703</th> <th>704</th> <th>705</th> <th>706</th> <th>707</th> </tr> </thead> <tbody> <tr> <td>KIRKWALL</td> <td>dep</td> <td>08:00</td> <td>08:25</td> <td>09:10</td> <td>10:30</td> <td>15:00</td> <td>15:10</td> <td>16:05</td> </tr> <tr> <td>Stronsay</td> <td>arr</td> <td></td> <td></td> <td>09:19</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dep</td> <td></td> <td></td> <td>09:26</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Sanday</td> <td>arr</td> <td></td> <td></td> <td>09:31</td> <td></td> <td>15:22</td> <td></td> <td></td> </tr> <tr> <td></td> <td>dep</td> <td></td> <td></td> <td>09:38</td> <td></td> <td>15:29</td> <td></td> <td></td> </tr> <tr> <td>North Ronaldsay</td> <td>arr</td> <td>08:17</td> <td></td> <td></td> <td>10:47</td> <td></td> <td></td> <td>16:22</td> </tr> <tr> <td></td> <td>dep</td> <td>08:24</td> <td></td> <td></td> <td>10:54</td> <td></td> <td></td> <td>16:29</td> </tr> <tr> <td>Westray</td> <td>arr</td> <td></td> <td>08:4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dep</td> <td></td> <td>08:4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Papa Westray</td> <td>arr</td> <td></td> <td>08:49</td> <td></td> <td>11:04</td> <td>15:15</td> <td></td> <td></td> </tr> <tr> <td></td> <td>dep</td> <td></td> <td>08:56</td> <td></td> <td>11:11</td> <td>15:22</td> <td></td> <td></td> </tr> <tr> <td>Westray</td> <td>arr</td> <td></td> <td></td> <td></td> <td></td> <td>15:24</td> <td></td> <td></td> </tr> <tr> <td></td> <td>dep</td> <td></td> <td></td> <td></td> <td></td> <td>15:31</td> <td></td> <td></td> </tr> <tr> <td>Eday</td> <td>arr</td> <td>08:3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dep</td> <td>08:4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Stronsay</td> <td>ar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5:34</td> <td></td> </tr> <tr> <td></td> <td>dep</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5:41</td> <td></td> </tr> <tr> <td>KIRKWALL</td> <td>arr</td> <td>08:51</td> <td>09:11</td> <td>09:51</td> <td>11:26</td> <td>15:46</td> <td>15:51</td> <td>16:46</td> </tr> </tbody> </table> <p>주: LM 700편은 월요일 Kirkwall→North Ronaldsay→Eday→Kirkwall, 08:00에 떠나 2군데 돌리고 08:51에 돌아오는 여정임.</p>			Monday							Flight Number	LM	700	702	703	704	705	706	707	KIRKWALL	dep	08:00	08:25	09:10	10:30	15:00	15:10	16:05	Stronsay	arr			09:19						dep			09:26					Sanday	arr			09:31		15:22				dep			09:38		15:29			North Ronaldsay	arr	08:17			10:47			16:22		dep	08:24			10:54			16:29	Westray	arr		08:40							dep		08:47						Papa Westray	arr		08:49		11:04	15:15				dep		08:56		11:11	15:22			Westray	arr					15:24				dep					15:31			Eday	arr	08:34								dep	08:41							Stronsay	arr						15:34			dep						15:41		KIRKWALL	arr	08:51	09:11	09:51	11:26	15:46	15:51	16:46
		Monday																																																																																																																																																																																			
Flight Number	LM	700	702	703	704	705	706	707																																																																																																																																																																													
KIRKWALL	dep	08:00	08:25	09:10	10:30	15:00	15:10	16:05																																																																																																																																																																													
Stronsay	arr			09:19																																																																																																																																																																																	
	dep			09:26																																																																																																																																																																																	
Sanday	arr			09:31		15:22																																																																																																																																																																															
	dep			09:38		15:29																																																																																																																																																																															
North Ronaldsay	arr	08:17			10:47			16:22																																																																																																																																																																													
	dep	08:24			10:54			16:29																																																																																																																																																																													
Westray	arr		08:40																																																																																																																																																																																		
	dep		08:47																																																																																																																																																																																		
Papa Westray	arr		08:49		11:04	15:15																																																																																																																																																																															
	dep		08:56		11:11	15:22																																																																																																																																																																															
Westray	arr					15:24																																																																																																																																																																															
	dep					15:31																																																																																																																																																																															
Eday	arr	08:34																																																																																																																																																																																			
	dep	08:41																																																																																																																																																																																			
Stronsay	arr						15:34																																																																																																																																																																														
	dep						15:41																																																																																																																																																																														
KIRKWALL	arr	08:51	09:11	09:51	11:26	15:46	15:51	16:46																																																																																																																																																																													
항공기	 <p>주: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음.</p>																																																																																																																																																																																				
요금	<p>Kirkwall → North Ronaldsay, Kirkwall → Westray 일반: 편도 £18 왕복 £36</p> <p>Kirkwall → Eday, Stronsay, Sanday & Westray 일반: 편도 £37 왕복 £74</p>																																																																																																																																																																																				

주 : 아래 출처에서 발췌하여 정리
 자료 : Loganair 인터넷 누리집, <https://www.loganair.co.uk>, (2018. 11. 13.)

2. 남미(에콰도르)

가. 관련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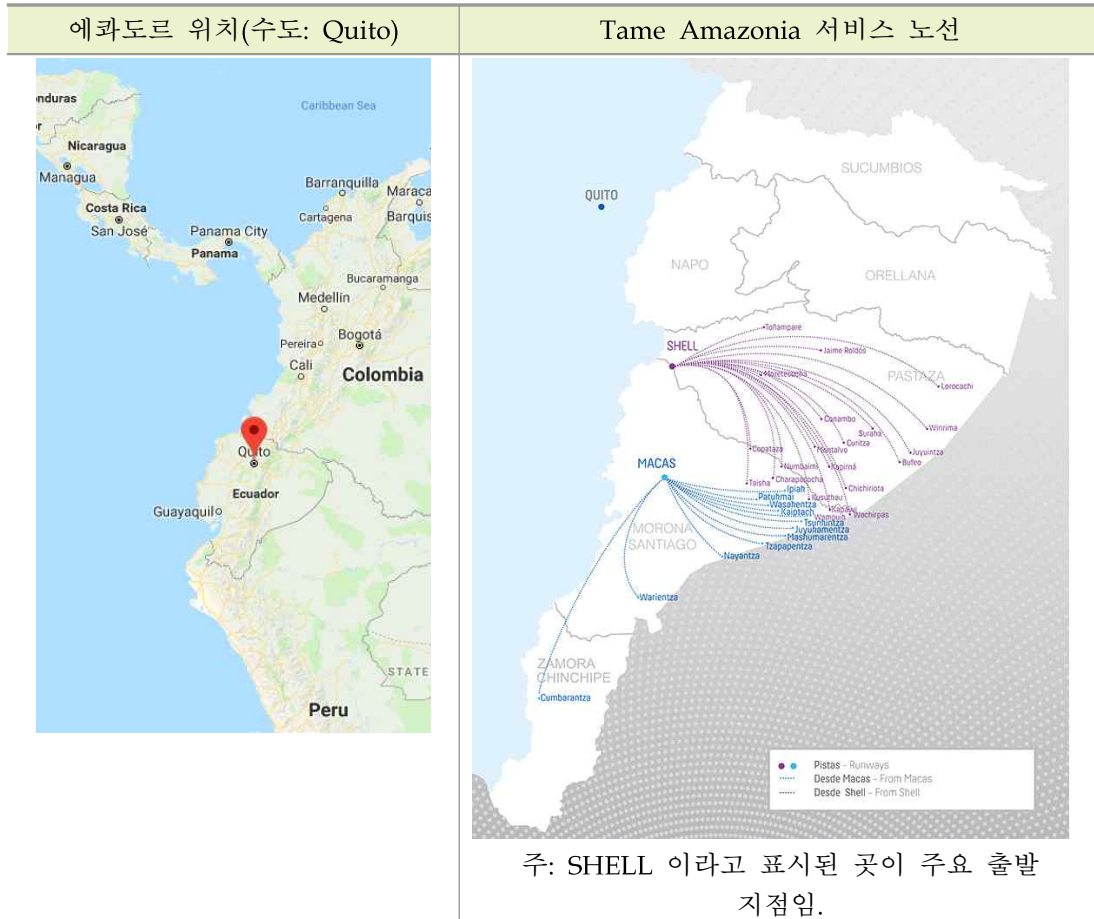
- ❖ 남미의 에콰도르는 아마존 정글이나 안데스 산맥 산골에 촌락이 있으며 여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필수 항공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에콰도르 정부는 공정한 사회와 아마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항공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항공사를 설립함(2014. 7. 4.).
 - ▶ 안전하고 빠른 저렴한 소형 항공기 운항 서비스를 제공
 - ▶ Shell Mera(수도 Quito에서 동쪽으로 151km 떨어진 도시)라는 도시에서 아마존 정글 촌까지 육로를 이용하면 약 4~9일 정도 걸렸음.

나. Tame Amazonia 현황²¹⁾

- ❖ Tame Amazonia는 아마존 정글 지역에 항공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항공사업. 모 항공사인 Tame는 에콰도르 정부 소유의 국영 항공사업.
- ❖ Kodiak-100 6대의 비행기로 Pastaza, morona santiago, zamora chinchipe, sucumbios, orellana, napo 지역을 분담하여 운항함.
 - ▶ 승객 9명이 짐을 가지고 탈 수 있음.
 - ▶ 정글 내 200여 곳의 활주로(진흙)가 있으며 항공기는 곳곳에 매일 운항함.
 - ▶ 생선, 수공예품 등 일상생활과 경제에 기여하는 품목을 운송함.
 - ▶ 의사와 간호사들을 동원하여 건강에 취약한 집단을 살피게 함.

21) 출처: Tame Amazonia, 누리집, <https://www.tame.com.ec>, (2018. 11. 16.)

<표 3-5> 에콰도르의 PSO 서비스



항공기



주 : 아래 출처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자료 : 1. 에콰도르 위치 지도: Google Map, <https://www.google.co.kr/maps>, (2018. 11. 16.)

2. Tame Amazonia, 누리집, <https://www.tame.com.ec>, (2018. 11. 16.)

3. 아래 항공기와 사람들 사진: Nicolás Larenas, <https://www.nlarenas.com/en/2018/05/tame-air-amazonia-social-project/>(2018. 11. 16.)

- ❖ 이 서비스로 100 개 이상의 아마존 지역 주민들의 삶과 죽음에 차이를 나게 할 수 있음.
 - ▶ Shuar, Achuar, zaparos, Kichwa, Cofan, Secoya, Siona, Huaorani, Taromenane, Shiwiar와 같은 촌락에 서비스를 제공함.
 - ▶ 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물품과 교육 품목을 운송함.
 - ▶ 긴급 구조 대원, 의료 부대 운송
- ❖ 실제 비용은 81.67달러이지만 지역 사회 서비스 차원에서 정부가 항공사를 통해 비용을 보조하고 여객들은 13.39달러+세금만 지불함.
 -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은 50% 할인

3. 일본

가. 관련 제도

- ❖ 일본 정부는 1953년에 이도(離島)²²⁾ 진흥법을 제정하여 이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고 있음.
 - ▶ 험난한 자연 조건 때문에 생긴 본토와의 격차를 줄여 주민 생활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
- ❖ 국가는 '이도 진흥 기본 방침'을 정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는 시읍면의 의견을 토대로 '이도진흥계획'을 수립함.
- ❖ 이도 진흥법은 <표>와 같이 재정, 복지, 보건, 교육, 농수산, 교통 등 행정 전 분야를 다루고 있음.
 - ▶ 관련 부처가 종합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무 부처는 국토를 관장하는 국토교통성임.

22)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도(離島)=낙도 로 설명하고 있음. 우리 한글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도'라는 단어를 쓰고자 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터넷 누리집, <http://stdweb2.korean.go.kr>, 2018. 11. 20. 검색.

- ▶ 제12조 ‘교통의 확보 등’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이도 진흥 대책 실시 지역의 인적 왕래와 물자의 유통에 관한 조건이 다른 지역과 격차가 나는 것을 시정, 섬 주민의 생활 편리성 향상, 산업 진흥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이도 진흥 대책 실시 지역에 해상, 항공 및 육상 교통에 대한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확보와 충실, 인적 왕래와 물자의 유통에 필요한 비용의 저렴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책을 충실히 하는데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 ▶ 교통 수단에 해상, 육상과 함께 항공 수단을 포함하고 있어 항공 수단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함.

<표 3-6> 일본 이도 진흥법 조항

조항	조항
제1 조 (목적)	제11조 (노인 복지의 증진)
제1조의 2 (기본 이념 및 국가의 책무)	제11조의 2 (보건 의료 서비스 등을 받기위한 주민 부담의 경감)
제2 조 (지정)	제12조 (교통의 확보 등)
제3 조 (이도 진흥 기본 방침)	제13조 (정보의 유통의 원활화 및 통신 체계의 충실)
제4 조 (이도 진흥 계획)	제14조 (농림 수산업 기타 산업의 진흥)
제5 조 (사업의 실시)	제14조의 2 (취업의 촉진)
제6 조 (재정상의 조치 등)	제14조의 3 (생활 환경의 정비)
제7 조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비율의 특례 등)	제15조 (교육의 충실)
제7조의 2 (이도 활성화 교부금 등 사업 계획의 작성)	제16조 (지역 문화의 진흥)
제7조의 3 (교부금 등의 교부 등)	제17조 (관광 진흥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
제7조의 4 (이도 진흥 대책 실시 지역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 등의 공표)	제17조의 2 (자연 환경의 보전 및 재생)
제8조 (지방체에 대한 배려)	제17조의 3 (에너지 대책의 추진)
제9조 (자금의 확보 등)	제17조의 4 (방재 대책의 추진)
제10조 (의료의 확보 등)	제18조 (농지법 등의 배려)
제10조의 2 (개호 서비스의 확보 등)	제18조의 2 (이도 특구 제도의 정비)
	제19조 (세제상의 조치 등)
	제20조 (지방세의 과세 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
	제21조 (국토 심의회)
	제21조의 2 (국토 심의회에 보고)
	제21조의 3 (주무 대신 등)
	제22조 (정령에의 위임)

주 : 아래 출처에서 발췌하여 번역, 정리함.

자료 : 일본 전자 정부 종합 창구, <http://elaws.e-gov.go.jp>, (2018. 11.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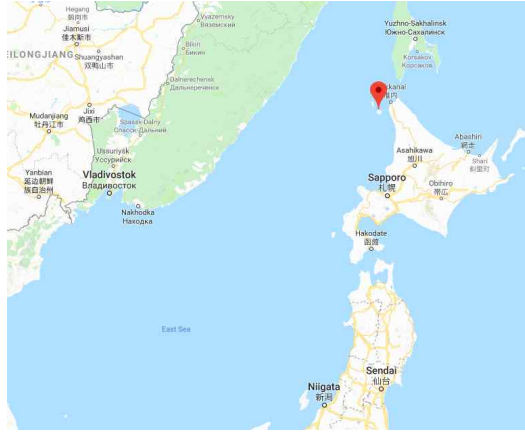
나. 리시리 섬 사례

- ❖ 일본의 홋카이도 섬 인근에 리시리(利尻)라는 작은 섬의 사례²³⁾를 들고자함.
 - ▶ 리시리섬의 위치는 <표 3-7>과 같으며, 와카나이항에서 남서쪽으로 선박으로 약 1시간 40분 거리임.

23) 흑산, 울릉 등 도서공항 개발과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고자 출장('18. 5. 29.~6. 1.)을 갔으며 이때 수집한 자료를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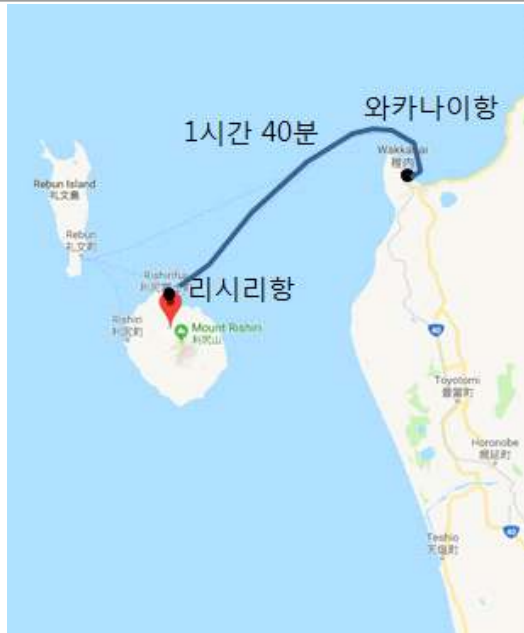
<표 3-7> 일본 리시리 섬 교통 체계

리시리섬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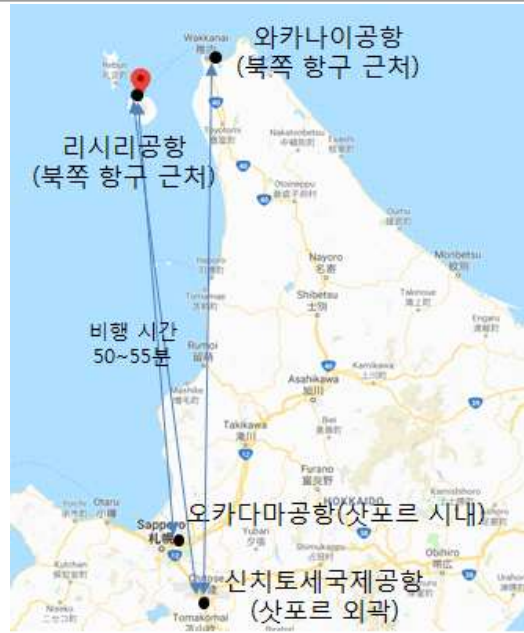


주: 홋카이도 북쪽에 있으며 사할린 섬 가까이 있음.

선박 수단



- 항로: 와카나이항-리시리항
- 운항 및 요금: 하루에 3~4편
와카나이항에서 출발, 1시간 40분 정도 소요, 4만 2천 원(1등석, 1엔=10원 가정)



- 항로: 리시리와 직항은 오카다마공항과 신치토세공항에 있음. 와카나이공항(신치토세, 하네다)으로 와서 선박으로 리시리에 갈 수 있음.
- 운항 및 요금:
 - 오카다마→리시리, 1편/일, JAL(Saab SF340B), 95,000원
 - 신치토세→리시리 1편/일, ANA(B737-500), 110,000원

❖ 리시리 섬에는 리시리공항이 있음. 이 공항은 홋카이도에서 관리하며 이도진흥법에 따라 공항 개발 사업비에서 80%는 국가가 부담함.

- ❖ 도서 지역에 항공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항공 사업자의 운항 관련 손실액에 대해 보조함. 또한 주민에게는 운임 할인 보조를 하고 있음.
- ❖ 와카나이-리시리 항공 서비스 대해서는 중앙 정부나 홋카이도의 지원책은 없음. 흑자가 나고 있어 경영난이 없음.
- ❖ 일반적인 낙도 항공 노선에 대한 지원책은 <표 3-8>과 같음.

<표 3-8> 낙도 항공 교통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정책

조항	내용																
보조금 명	<input type="checkbox"/> 지역 대중 교통 확보 유지 개선 사업비 보조금 - 낙도 항로(航路)운영비 등 보조금																
목적	낙도 항로는 낙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일상 생활의 이동이나 생활 필수품 등의 수송을 위하여 불가결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확보 및 유지와 관련된 지역의 대응을 지원한다.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 대상은 유일한 항로이자 적자 항로일 것 • 사전 산정 방식에 따른 내정 제도 • 보조 대상 경비의 산출은 효율적 운영 시 표준 수지 전망에 따라 구함 • 결손(적자) 전망 액 전체에 대한 보조 충족률은 2분의 1 • 보조 대상 기간은 10월 1일~이듬해 9월 30일까지 1년간 																
보조 구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① 운항 비용</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결손액 →</td> </tr> <tr> <td style="width: 25%;">② 운항(여객, 화물 등) 수입</td> <td style="width: 25%;">③ 국가 보조액</td> <td style="width: 25%;">④ 홋카이도 보조액</td> <td style="width: 25%;">⑤ 시정촌 보조액</td> </tr> <tr> <td></td> <td style="font-size: small;">표준 운임률이나 경비 단가에 근거한 국고 보조액 산정</td> <td colspan="2" style="font-size: small;">[결손액-국가 보조액] 중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td> </tr> </table>	① 운항 비용				← 결손액 →				② 운항(여객, 화물 등) 수입	③ 국가 보조액	④ 홋카이도 보조액	⑤ 시정촌 보조액		표준 운임률이나 경비 단가에 근거한 국고 보조액 산정	[결손액-국가 보조액] 중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	
① 운항 비용																	
← 결손액 →																	
② 운항(여객, 화물 등) 수입	③ 국가 보조액	④ 홋카이도 보조액	⑤ 시정촌 보조액														
	표준 운임률이나 경비 단가에 근거한 국고 보조액 산정	[결손액-국가 보조액] 중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															

자료 : 홋카이도청, 일본 출장 시 수집, 2018. 5. 29.~6.1.

4. 시사점

- ❖ 유럽, 남미,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에 대해서는 항공 교통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여 열악한 이동 여건을 극복하고 있음.
 - ▶ 유럽은 섬이나 육지 내 오지에 소형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남미의 에콰도르는 안데스 산맥 지역에 그야말로 필수적인 항공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일본도 낙도 항공 노선 운항사에게 결손액을 보조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법적인 근거인 이도진흥법은 행정, 보건, 교육, 교통 등 삶의 전 분야에 대해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임.
- ❖ 우리나라의 경우 울릉, 흑산 노선이 시장성이 있어 운항사가 적자가 나지 않는다면 공공 서비스 의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없을 것임.
 - ▶ 하지만 적자가 나서 운항이 중지될 경우에는 공공 서비스 의무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임.
- ❖ 유럽의 경우 비교적 구체적으로 다른 수단과의 경쟁 관계, 시장성을 보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조건들을 설정하고 있음.